제 66 호

세계농업뉴스 WORLD AGRICULTURAL NEWS

2006. 2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목 차

농업·농정 동향

	중국, 신농촌건설을 2006년도 1호문건으로 채택·······3
	중국, 2006년도 중앙1호문건에 대한 기자회견9
	중국, 2005년산 쌀 수급 및 가격 동향
	일본, 2005년도 농산물수출 12% 증가
	일본, 농산물생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발표
	EU, 바이오 연료전략 채택47
	캐나다, 바이오에탄올로 농업진흥 도모
	캐나다, 정권교체와 DDA 협상동향60
	캐나다, 수출 확대하는 돈육산업(하) ····································
_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2006년 2월 농업협상 동향 81
	DDA 홍콩 각료선언에 대한 각국 평가85
	미국, EU의 시장접근분야 제안에 대한 평가 ·····94
人	ll계 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6. 2)105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6. 2)
툳	통계자료
	국별 돼지고기 통계123

농업 농청 동향

중국, 신농촌건설을 2006년도 1호문건으로 채택 중국, 2006년도 중앙1호문건에 대한 기자회견 중국, 2005년산 쌀 수급 및 가격 동향 일본, 2005년도 농산물수출 12% 증가 일본, 농산물생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발표 EU, 바이오 연료전략 채택 캐나다, 바이오에탄올로 농업진흥 도모 캐나다, 정권교체와 DDA 협상동향 캐나다, 수출 확대하는 돈육산업(하)

중국, 신농촌건설을 2006년도 1호문건으로 채택

김 태 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2006년도 '중앙1호문건'을 지난 2월 21일 발표하였 다. 1호문건의 명칭은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추진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이 다. 그 동안 고도성장과정에서 확대되는 도시농촌간 소득 및 생활격차를 완 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이번 1호문건의 핵심이다.

2004년이후 3년 연속 농업ㆍ농촌ㆍ농민문제(3농문제)가 1호문건으로 채택 되었다. 당과 국무원은 2004년도 1호문건으로 '농민소득을 증가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에 관한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의견'을 채택하여, 농민소득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또 2005년에는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정책적 의견'을 결정, 농업생산력을 향상하여 농업문 제 해결에 국력을 집중한 바 있다. 2006년도 1호문건의 주요 내용과 중국 정 부의 의도 등에 대하여 정리한다.

1. 경과

2006년은 중국의 제11차 5개년 계획(11.5)이 시작되는 해이다. 신농촌건설 은 11.5 기간중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서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이란 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aegon@krei.re.kr 02-3299-4241

4 세계농업뉴스 제66호 (2006, 2)

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것으로서 일종의 마을단위 종합개발방식이다. 마을단위로 주민참여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공업도시 등 사회 각층을 총동원하여 누적된 도농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다는 전략이다.

신농촌건설이 2006년도 최중요 국정과제로 논의되기 시작된 것은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중국 공산당 제16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5중전)이다. 이때 2006년부터 5년간의 국가운영 중기지침인 11.5를 결정하였으며, 여기에 신 농촌건설의 본격적인 추진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신농촌건설은 11.5 기간중가장 긴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 3월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각급 지자체단계에서 실행계획이 확정되면 중국 전역에서 실시될 것이다. 소요 재정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 지금까지 농업·농촌부문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고 보고, 이제 공업·도시부문이 농업·농촌 발전에 공헌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이다.

2. 3농문제

중국에서 농업문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농업·농촌·농민문제 등 소위 '3 농문제'로 요약된다. 신농촌건설의 추진을 중시하게 된 배경에는 3농문제에 있다. 중국은 2001년말 WTO 가입과 최근의 고도경제성장 등에 의해 3농문제 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2004년도 경제성장률은 9.5%인데 대해 농업부문 성장률은 6.3%에 불과하다. GDP에 차지하는 농업비중은 15.2%이지만 농촌취업인구비율은 46.9%에 달한다. 즉 약 47%의 노동력으로 GDP의 15%를 생산하는 낮은 생상성 문제가 문제의 핵심에 남아있다.

또, 식량생산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 5억 1,200만톤을 기록하였던 식량생산이 2003년 4억 3,100만톤으로 최저를 기록하였고, 2005년 은 4억 8,400만톤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최 근 수요가 증가하는 대두의 자급률은 45%로 떨어지고 있고, 또한 그동안 유 망 수출품목이었던 옥수수는 2002년 1,500만톤 수출에서 2005년 600만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도농간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호적제도에 의하여 인구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도농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소득격차를 보면, 1993~2004년 간 도시주민 1인당 연평균 소득증가율은 8.6%에 달하고 있었지만 농촌은 4.3%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도시농촌간 주민 1인당 소득격차는 2000년 2.8배 에서, 2005년은 농민 1인당 소득이 3,255 위안인데 대하여 도시주민은 10,493 위안을 가록, 격차는 3.2배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중국 지도부가 심각하게 대응한 것이 '조화로운 사 회'의 구축이다. 그래서 도시농촌의 격차 축소를 비롯하여, 농촌 인프라 구축, 사회보장, 취업기회 확대, 교육, 의료위생, 문화 등 방대한 분야에 걸쳐 문제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제안하는 취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이러한 서 장 격차를 점차 축소하여 농민과 도시주민 모두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성과 를 공평하게 수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만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국 지도층은 도농격차를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수요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농촌지역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수요창출에 한계가 있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구매력을 갖추어 야만 국내수요가 확대되고, 이것이 중국의 유구한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 다는 것을 강조한다.

3. 신농촌건설의 개요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목적은 명확하다. 첫째, 농업생산력 발전, 둘째 농민 생활수준 제고, 셋째 농촌기초시설 개선, 넷째 농촌사회사업 발전, 다섯째 농촌기초단계 민주화 등이다. 9억 농민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 도농간 격차를 축소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업이 농업을 살리고, 도시가 농촌을 지지' 하는 노선에 따라 당과 각급 정부가 농업·농촌에 대해 투자를 대폭 확충하 는 체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관련하여 신농촌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은 5 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신농촌건설을 추진하려면 경제적 기반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을 유지하여야 한다. 경제적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실행 과정에 농민들의 부담 증가나 지자체의 부채문제 등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농민소득 성장을 기초로 실행하여야만 현재의 농촌모습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는 농촌의 기본적인 경영체제인 가족농업경영을 유지한다는 원칙이다. 가족경영체제를 기초로 하고 있는 농촌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신농촌건설을 실행한다고 하여 이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도시와 비교할 때 낙후된 면들이 많은 현재의 농촌에 대해 어떤 것부터 착수해야 할지에 대해 1호문건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농민들 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 실현한다는 원칙이다.

네 번째는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원칙이다. 즉 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하되, 사업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등 반드시 현장 중심의 추

진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지방의 경험을 맹목적으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섯째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 각층의 역량을 동원하는 것이다.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농민 동원이다. 농민들의 적극성을 유도하고, 그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촌건설을 추진하고, 또 재정 능력이 증대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며, 그리고 도시공업부문의 기업, 주민 들을 동원, 최대한 농촌 발전을 위해 공헌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은 반드시 '5要 5不要'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첫째는 실질적인 효과는 추구하되, 형식주의는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자체의 부담능력에 근거하여 실행하되, 맹목적으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실정에 맞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야 하되, 신도시건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농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되, 강제적이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유도와 지원은 하되, 대신해서는 안 된다. 신농촌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농민을 육성하고, 농민들의 자질을 높여나가되, 대신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4. 향후 과제

이번 1호문건에서 제시한 신농촌건설은 종합적이면서 시스템적인 내용이다. 농촌의 일부분의 정비 또는 건설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말하면 경제 건설, 농촌 민주화, 문화 건설, 사회 건설, 기초지자체 단계의 민주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한다.

그 동안 농업세나 농민 부과금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지만, 3농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도시와 공업이 충분히 지원능력을 갖추었다는 합의에 서 공업으로 농업을 지원하는 노선을 당 지도부가 결정하였다. 그리고 정책

8 세계농업뉴스 제66호 (2006. 2)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의 노력을 비롯하여, 정부의 재정지 원, 도시공업부문의 역할 등 사회 각계각층의 동원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몇 가지 과제가 예상된다. 먼저, 기초지차체단계에서는 현재 농업세 폐지에 따른 재원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를 대체하는 재원을 어떻게 항구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또, 중국은 WTO 가입에 의한 영향으로 중국의 농촌지역에서 고용기회가 축소되고 있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농산물 수입증대에 의해 향후 수년간 연간 960만명 고용이 타산업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촌 과잉취업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과제이다. 그리고 농촌호적문제의 해결도 중요하다. 인구이동 제한과 사회보장의 차별의 근거가 되는 호적제도 개선이 조화로운 사회구축의 열쇠가 될 것이다.

자료: 중국농업정보망(http://www.agri.gov.cn)

중국, 2006년도 중앙1호문건에 대한 기자회견

김 태 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21일 2006년도 중앙1호문건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2 일 국무원 공보실에서 중앙재정경제영도소조(中央財政經濟領導小組) 천시원 (陳錫文) 부주임이 1호문건 채택과 관련된 배경설명과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등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궈워이민(郭衛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공중앙(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과 국무원의 '사회 주의 신농촌건설의 추진에 대한 약간의 의견'이 어제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 다. 오늘 중앙재정경제영도소조 부주임이며, 농업ㆍ농촌문제 전문가인 천시 원 부주임을 모시고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 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자 분들은 천시원 부주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천시원 부주임이 여러분에게 중공중앙 1호문건을 소개한 세 번째 해 입니다. 천시원 부주임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시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신화사(新華社)는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추진에 대한 약간의 의견' 전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이 중공중앙 2006년 1호문건입니다. 2004년부터 중공중앙은 농 업 ·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년 연속 1호문건을 채택하였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aegon@krei.re.kr 02-3299-4241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농촌개혁과 연관을 지어 볼 때 1980년대에 중공중앙은 농업·농촌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5년 연속 1호문건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1호문건은 모두 농촌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호문건도 농업·농촌문제 해결이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 당과 정부는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특별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오늘 주요 언론에서도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보았겠지만 이 문건은 8개 부문 32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건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가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배포되었기때문에 그대로 읽지 않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지 50여년이 되는 역사로부터 당과 정부가 발표한 문건을 보면 50년대 중반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제안하였습니다. 개혁개방 실시이후 20여년간 당과 국가의 많은 문건에도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6년도 1호문건에서 다시 제안하였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10월 중공중앙은 제16기 5중 전체회의(5중전)를 소집하였는데 5중전에서는 주로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1차 5개년 계획('11.5')에 대한 건의'를 심의하였습니다. 이 건의에서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5중전의 제안에 따라 중공중앙은 농촌사업회의를 소집하였고, 2006년 1호 문건을 제정할 때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제안한 것은 예전 에 제안했던 것과 연관이 있으면서, 또한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관이 라는 면에서 말한다면 이는 하나의 목표로서 중국 농민들에 대한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면 50년대 중반 사회주의 신 농촌건설을 제안하였는데 이때 강조한 것은 농촌생산관계에 대한 일부 변화 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적 토지를 집단소유로 전환하였는데 개별경영을 농촌 합작사와 인민공사의 통일적인 경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둘째는 당시 국력 특히 정부의 재정능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건설은 농민자체의 힘에 의 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것은 그 배경에는 종전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의 생 산관계는 현재 명확하고, 또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도 유지할 것입니다. 이러 한 생산관계는 토지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중국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데 농촌은 장기적으로 가족경영을 기초로 통합과 분리가 보장되는 경영체제를 유지합니다. 이번에 제안한 신농촌건설은 생산관계 측면의 영향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몇 년간 개혁개방에 힘입어 중국 경 제는 뚜렷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각급 정부는 농촌건설과 발전에 더욱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신농촌건설을 단지 노력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거나, 농민들에게 하나의 아름다운 비전을 제 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농촌건설을 각급 당과 정부가 사회 각계각층을 인도하 여 공동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유도하는 하나의 현실감이 있고 긴박감도 있는 임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종전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중국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 국이 건국된 이후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공업화, 도시화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도시인구가 총인구의 10% 정도였습니다. 현 대화 과정에서 농업국을 점차 공업국으로 개조하여야 하며, 공업화와 도시화 를 위하여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큰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50년대 이 후 80년대까지 중국에서 공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은 자본 을 제공하는 중요한 부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현재 온전한 공업체계가 되었고, 아름답고 현대화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광범한 농민들이 제공한 커다란 공헌에 의한 것입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공업도 발전하고 국력도 끊임없이 증대되고 있는데 향후 발전전략은 농민들이 계속 도시와 공업 발전을 위해 공헌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업과 도시 경제가 농촌을 더욱 많이 인도하고 농민을 도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당의 지도계층은 경제현상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중국은 공업이 농업을 살리고 도시가 농촌을 이끄는 발전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2004년말 중공중앙 후진타우(胡錦濤) 총서기가 당시 소집된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제기하였고, 따라서 신농촌건설에하나의 중요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5중전에서 '11.5' 기간부터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역량을 확대할 것을 명확하게제안하였습니다.

신농촌건설을 제안하게 된 것에는 물론 다른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분에게 드린 자료를 보시면 원인에 대해 5개 측면에서 요약했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중국 농업의 기초조건이 아직 빈약하여 고도 경제발전과 풍요로운 생활수준의 요구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식량은 현재 생산량이 최근 몇년간 뚜렷한 회복세로 나타나고 있어 작년 생산량은 4억 8,400만 톤으로서 2003년 대비 5,000여만 톤 증가한 수준으로 증가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최고 기록과 비교하면 1998년 보다 2,800만톤 적은 수준이고, 동시에 4억 8,400만 톤이라는 생산량은 국내 수요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을 증가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중국 농업이 국민경제의 요구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여전히 농업지원 강화, 농촌의 기초시설 건설, 농업과학기술 진보 등 농업성장방식을 전환하여 현대적 농업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2) 우리는 반드시 현실적이면서 객관적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확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격차는 민족의 현대화된 사회를 건설 하고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도시와 농촌의 격차문제를 신중하게 대응하여 격차 축소에 노력해야 합니다. 며칠 전 리더수이(李德水) 국장이 공표한 통계치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입니다. 작년 전국 농민들의 1인당 수입은 3,255위안이고, 도시 주민들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0,493위안으로서 절대격 차가 7,283위안, 상대격차가 3.22 : 1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격차를 개혁초기와 비교했을 때 확대된 것이지 축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혁초기 중국 도시와 농촌 1인당 수입수준은 모 두 낮은 수준이었으나 1978년에 농민 1인당 소득은 134위안, 도시 1인당 가처 분소득은 343원으로서 절대격차는 209위안 상대격차는 1:2.57 이었습니다. 현재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격차는 7,000위안에 달하며, 상대수입격차도 3.2 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는 사회 각층의 높은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중공중앙 과 국무원에서도 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한 측면은 이러한 도시 와 농촌간 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상당히 긴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문제의 심각성에서 여러 방면의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 다. 다른 한 측면으로는 경제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교육, 위생, 문화 등과 같 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면에서도 도시와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러하 격차는 심지어 소득측면 격차를 초과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 는데 아주 중요한 측면에는, 교육, 위생 등의 개선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3) 중국은 농업 · 농촌발전을 지지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초보적으로 갖추 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일부 통계수치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읽지는 않 겠습니다. 이 통계수치로부터 알 수 있듯이 과거 10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중국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GDP, 정부재정수입, 사회투자규모 모

두가 5년 내에 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이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빠른 발전을 실현한 것은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빠른 성장 속에서 농촌이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 지가 중공중앙, 국무원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4) 중국 경제성장에서 기본방침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방침입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외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국제 시장을 확대하여야 하지만 중국은 13억 인구의 방대한 국가로서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최근 경제성장으로부터볼 때 경제학자들은 보통 성장에서 3대 차량을 이야기 합니다. 다시 말해서투자, 소비, 국제무역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투자와 국제무역이 중국 GDP 성장에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였고, 반면 국내수요 성장이 가지는 역할은 앞 두개보다 적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국면이 형성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농촌지역의 시장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농민들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농촌에서 내수를 개척하려면 중국 인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이 하루속히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충분한 구매력을 갖추어야만 중국 시장은 진정으로 개척되고 국내수요를 확대하는 방침도 실현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유구한 발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지금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제안하는 취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이러한 발전격차를 점차 축소하여 농민과 도시주민들이 모두가 국민으로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성과를 공평하게 수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공평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신농촌건설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에 어떤 목표, 내용, 임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에 대해서는 배포한 자료에 이미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 리에서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5개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 신농촌건설은 완전하고 시스템적인 내용이며, 농촌의 일부분의 건설만 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5중전에서부터 제안되었던 신농촌건설의 전반적 인 요구는 다섯 가지 키워드입니다. 농촌보도 기자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입니다. 그것은 '생산 발전, 풍요로운 생활, 농촌 문명, 청결한 농촌, 민주적인 관리'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경제 발전, 농민소득 제고, 삶의 질 향상, 농촌의 전반적인 모습과 환경 변화, 농민 자질 제고뿐만 아니라 농촌 관리, 민주화 추진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 (2) 구체적인 사업추진으로 말하면 금년 '1호문건'에서도 명확하게 제안 하였겠지만 5개 측면에 대한 건설(정비)을 조화롭게 추진하는데 물론 첫째 가 경제건설입니다. 둘째는 농촌의 정치적 민주화, 셋째 문화 건설, 넷째 사회 건설, 다섯째가 기초 지자체 단계의 당조직 정비입니다. 기초단계 당 조직은 농민들을 선도하여 신농촌건설을 추진하는 진정한 지도력이 되어 야 합니다.
- (3) 신농촌건설 추진에 당 중앙에서는 5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신농촌건설을 추진하려면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을 유지하여야 합 니다. 경제실력이 없으면 실행 과정에 농민들의 부담을 증가할 수 있고 심지 어 부채를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추진하였다고 해도 장기간 지속하지 못할 것 입니다.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농민소득 성장을 기초로 실행하여야 만 농촌모습을 바꿀 수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가족경 영체제를 기초로 합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것으로서 신농촌건설을 실행한 다고 하여 가족경영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농촌을 도시와 비교했을 때 낙후한 면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것부터 착수해야 할지에 대해 1호문건에서 명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사람을 기본으로 합니다. 농민들이 가장 희망하고 절박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생산·생활 가운데 존재하는 현실적인 문제부터 착수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방에서는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도로공사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어떤 지방에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기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바랄 것이며, 기타 TV 시청, 교통문제, 청결한 식수 등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서 보편적으로 관심이 있는 교육과 위생문제도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과학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통일적으로 수립하고, 임무는 한 조항, 한 조항씩 집행하며, 사업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등 반드시 현장 중심으로 출발하는 원칙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른 지방의 경험을 맹목적으로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는 사회 각층의 역량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주로 3개 계층의 역량입니다. 하나는 농민들이 자신의 정원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우선 농민 동원입니다. 농민들의 적극성을 유도하여 그들이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촌건설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 능력이 증대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도시지역의 기업, 도시주민들을 동원하여 최대한 농촌 발전을 위해 공헌하여야 합니다.

(4)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은 반드시 '5要 5不要'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질적인 효과를 추구하고 형식주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은 과거에 기초단계와 사회 각층에 일부 좋지 않은 기법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보통 한 가지 큰 안건이 제안되면 일부 지방에서는 표면적인 변화만 추구하고 실제적인 효과를 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신농촌건설에서 중앙은 반드시 실질적인 효과를 추구하고 형식주의를 추구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체의 실질적인 부담능력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명확하게 강조 하고 맹목적으로 높은 수준과 비교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 분들도 TV 방송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신농촌건설에 대해 보도하면서 많 은 전형적인 아름다운 농촌을 소개하였는데 그들이 건축한 집들은 도시 건축 물보다 아름답고 농민들이 살고 있는 집들도 장관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는 확실하게 그들이 장기간 노력한 결과이 며, 특수한 배경과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농촌에서 이와 같은 전형적인 사례 를 그대로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맹목적인 추구는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농민들의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실정에 맞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각 지방의 농 촌발전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어떻게 자신의 실제상황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는지는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 신농촌건설에서 더욱 중요합 니다. 왜 신도시건설이 아닌 신농촌건설인가. 신농촌건설이라고 하면 건설이 완공되어도 여전히 농촌이고, 농민들의 생산생활에 편리한 점이 있어야 하며, 농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농촌의 그러한 양호한 전통을 유지하 여야 합니다.

넷째, 반드시 농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먼저 진행 하고, 어떤 부분을 나중에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하며 강제적인 명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인도와 지지를 하도록 하고 대신하여 도맡아 하지 말아야 합니 다. 일부 지방에서는 현지 정부실력이 좋거나 혹은 현지에 몇 개 기업의 사장 들이 출자하여 농민들을 도와 집을 짓는 것도 좋지만 중앙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신농촌건설 과정에 또 다른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새 로운 유형의 농민을 양성하고 농촌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자질 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신하여 도맡아 하지 말고 인도하고 지원 하여야 합니다.

- (5) 5대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농촌생산력 발전, 둘째, 농민의 생활수준 제고, 셋째, 농촌 기초시설 개선, 넷째, 농촌사회사업 발전, 다섯째, 기초단계 민주화 전진 등입니다. 수억의 농민들에 관련되는 대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중앙에서 수차례 반복하였듯이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요구에 따라 추진하여야만 가능하고 농민 스스로만 진행하도록 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됩니다. 이러한 큰배경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5개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1) 정부투자로 말할 때 '공업이 농업을 살리고, 도시가 농촌을 지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농업·농촌에 대해 투자를 증가하는 구조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재정지출이든지 아니면 국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든지, 또한 각종 금융기구의 융자든지 모두 점차적으로 증가하여야 하며, 동시에 하나의 농촌을 지지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구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 (2) 당과 정부의 모든 부문에서는 자신이 신농촌건설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여야 하며, 상호간 협조와 협력 하에서 신농촌건설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에는 상당히 많은 부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문도 도시만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문에 신농촌건설에서 자신의 책임과 임무가 있는 것으로 이를 반드시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 (3)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들 자신의 아름다운 정원을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는 격려구조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 (4) 전체 사회가 신농촌건설에 광범하게 참여토록 유도하는 구조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 (5) 신농촌건설의 최종목표는 도시와 농촌의 2중구조를 변화시키는 경제와 사회의 관리체제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물론 상당한 기간 동안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1호문건이 채택되기까지의 결정과정, 목표, 추진방향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 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궈웨이민

방금 천시원 부주임이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였습 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도 모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기관을 밝히신 후 질문을 부탁합니다.

합중(合衆)국제사 기자

세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업이 농업을 이끌고 도시가 농촌을 이끌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6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지 요? 두 번째, 부주임이 소개한 '5要 5不要', '5대 목표'에 민주적으로 추진하고 강제 명령은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제 명령이 농촌 에서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는지요? 세 번째, 농촌에서 기초 지자체 단계의 민주화는 어떻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처시워

1호문건에서 여러분들도 모두 보았듯이 투자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는 세 가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농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높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고정자산투자 중 농촌에 사용되는 비 중은 전년도보다 높아야 하며, 세 번째는 국가의 기본건설투자 중 농업의 생 산생활조건을 개선하게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전년도보다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증가하여야 하는가는 다음달 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가 끝나면 예산보고서가 발표되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강제 명 령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조세공과금개혁 이후 종전에 비해 경감되었지만 아 직도 일부 지방에 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1호문건에서 민주적으로 추진하고

강제적으로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 등 기층 민주화에 대해서는 80년대 중반 전인대에서 '촌민위원회조직법'을 제정, 촌민자치제도를 확립하고 있는데, 우리는 농촌에서 정치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여년의 발전을 통해이젠 일정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농촌에서 촌 행정업무를 공개하는 민주관리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촌에서 추진하는 행정업무 특히 재무상황을 촌민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농민들이 촌 업무에 더 많이 참여하고 감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한 신농촌건설에서의 민주적 관리를 포함하였고, 중앙정부가기층 민주화에 대해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중앙TV기자

현재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에는 이러한 행위가 존재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촌민들을 원래 거주하던 자택에서 촌에서 새로 건축한 아파트로 강제 이주시켜 거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이러한 방법이 사회주의 신농촌건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천시원

저도 이와 같은 현상을 주의하여 보았습니다. 일부 지방에서 최근 농촌에서 소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전제에서 일부 촌을 합병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건축합니다. 지역별 사정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우선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첫째, 그 지역에서 실행하는데 경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와 같은 실행으로 농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부담을 가 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농촌의 부채를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입니 둘째,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법률이 부여하는 농민의 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농민의 주택지는 법에 따라 규정되었고, 장기간 사용하도록 인정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주택지 근처에 그들이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지가 있습니다. 만약 합병을 한다면 일부 지방에서 그 토지를 수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련의 법률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규정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합니다.

셋째, 농민의 거주조건은 농민들의 생산과 생활에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일부지방에서 십여층 혹은 이십여층 되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농민들이 낫이나 호미를 들고 불편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짚과 같은 쌓아둘 물건들이 있고, 또 일부 농민들은 가금, 가축 등을 길러야 합니다. 때문에 신농촌건설은 농민들이 반드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름답게 건축하여도 사용하기 불편하면 제가 보기에 농민들도 만족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콩 봉황위성(鳳凰衛視)방송 기자

한 통계수치를 보았는데 현재 토지수용 문제로 발생하는 농촌의 집단시위 사건이 농촌지역 시위중 65% 이상을 차지하며, 적지 않은 사건들이 경찰과 촌민들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하고 있어 토지수용 분쟁이 현재 농촌지역에서 가장 불안정한 요소, 핵심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신농촌건설을 제안하면서 어떠한 조치를 실시하여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토지를 잃은 농 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천시원

공업화 과정에서 농민의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부 모순들은 확실히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농촌지역에서 사

회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업발전 기초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매년 농민들로부터 수용하는 토지는 20만 ha 정도입니다. 공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수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모순을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경지 감소와 농업발전 확보, 국가식량안전보장 문제입니다. 둘째,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의 경제적 보상문제입니다. 셋째는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취업과 사회보장문제입니다.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경지를 적게 점유하여야하며, 정부는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토지를 잃은 농민에 대한 보상문제는 2004년말 국무원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농민들에 대한 보상표준을 마련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잃은 농민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토지를 잃은 농민들을 사회보장제도에 전부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수용제도 자체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건설용지는 전부 국가에서 독점하는 것인지, 국가에서 징수한 후 개발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지자체가 사용하는 토지가 건설시장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잘 다루지 못하면 중국의 귀중한 토지자원을 대량 상실하게 됩니다. 때문에 합리적인 제어장치가 없으면 개혁은점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수많은 법률문제가 관련됩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 토지를 잃은 농민들에 대한 보상표준 확립, 둘째 토지를 잃은 농민들에 대한 취업배치와훈련, 셋째는 토지를 잃은 농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입니다.

금융시보(金融時報)기자

첫째, 신농촌 건설과정에 농민들이 양적으로 감소될지? 둘째, 토지매매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민들은 도시주민들이 주택을 팔고 사는 하는 것처럼 자신의 농지를 매매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된다면 도시와 농촌간 토지가격 격차가 크지 않을 것이고, 또한 지방 공무원들도 농지를 비농업용 토지로 전용

하는 과정에서 부패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시원

국가가 발표한 수치와 통계국의 수치를 종합하면 농민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향후 신농촌건설 이후 계속 감소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통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호적에 대한 통계입니다. 호적으로 파악하면 중국의 농촌인구는 현재 9억 4,000만 명입니다. 둘째, 현실적인 거주지 통계입니다만, 현재 실제적으로 농촌에 장기 거주하는 농민은 7억 5,000만 명 정도입니다.

이 통계로부터 2억 정도의 농민들이 노동취업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행정구역의 변화로 실제 농촌에 있지 않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제가보기에 향후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두 가지 현상을 설명해야합니다.

하나는 농촌을 떠난 농민들이 모두 기회가 있거나, 혹은 정부가 이들 모두 가 대도시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도시의 기초시설과 취업조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도시에 진입하여 사업하는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농민들이 인근지역에서 타산업에 이전하여 취업할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도시화과정에서 농민들의 비중이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은 인구대국이기 때문에 20년 내지 30년을 지나 도시화가 60% 수준으로 높아져도 농촌에는 많은 인구가 있을 것입니다. 40% 인구가 농촌에 거주한다고 했을 경우 2030년 전후 중국 총인구가 15억이면 농촌에 6억 인구가 거주하게 됩니다. 때문에 6억 인구의 향상된 생산생활조건을 위해 우리는 신농촌 건설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방금 말했습니다. 중국의 헌법규정에

따르면 토지소유권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저는 신농촌 건설과 농민들의 자유로운 토지매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향후 토지수 용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는 더욱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신경신문(新京報)기자

금년은 '11.5'의 첫해입니다. 농업세가 전면 면제됩니다. 천 주임이 기자회 견에서도 제안하였듯이 농업세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는 이해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아직 모순은 많이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의 예산부족문제가 있 으며, 또 다른 형태의 농민부담 증가문제 등입니다. 중앙에서는 이에 대해 어 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천시원

주로 세 가지 조치인데 현재 모두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중앙과성시 정부의 재정에서 기초 지자체로의 이전을 증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2006년 중앙정부에서 농업세 개혁을 위해 기초 지자체에 지불한 이전지불은 780억 위안입니다. 성과 시급 정부가 기초 지자체에 대한 이전지불은 250억 위안 정도로 예측합니다. 이 두개를 합산하면 1,000억 위안을 초과합니다. 이를 과거 농민들의 부담과 비교해 보면, 세금개혁 전 농민들의 부담은 1998년 농민의 전체 부담은 1,200억 위안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상급 정부가 기초 지자체에 지급하는 이전지불 가운데 100여억 위안 정도 부족합니다. 둘째, 이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 지자체의 기능 전환과 향진정부에 대한 개혁과 인원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진정부의 기능전환, 기구와 인원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한 농민부담 증가의 가능성에 대해 중앙정부는 농민부담을 감소하는 방침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다음 4개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업과 관련되는 비용징수에 대한 공시(公示)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농민들의 재배활동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타 방면에 아직 일부 비용징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관개용수, 트랙터운송 도로비 등입니다. 일부비용을 얼마 징수하여야 하며, 어떤 비용은 징수 가능한지를 반드시 농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농민의 경제부담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비 입니다. 농촌학교에서 1 회성 비용징수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중앙에서 규정한 금액만을 징수하도록 하고, 그 금액만 지불하면 해결되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검 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중서부지역의 성급에서는 농촌의무교육 학생들 의 학비를 전부 면제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기초 지자체의 부담에서 큰 부분은 죄송하지만 언론과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신문잡지들을 정기 구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잡지 구독료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 원하지 않는 신문잡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만약 농민부담을 가중시킨 안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책임추궁제도를 실행합니다. 농촌민주화 추진, 업무공개제도 등을 통해 농민들의 부담증가를 억제할 자신이 있습니다.

신경신문사(新京報)기자

천 주임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부 소식에 따르면 전인대는 농촌금융합작법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확실하다면 현재 추진 진도와 이 법률이 언제 시행될지 알고 싶습니다.

천시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인대에서 입법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농촌합작 경제조직법'이며, 아직 초안 작성 과정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농촌합 작금융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공포한 1호문건에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부문에 관한 감독규칙을 제정한 후 농촌지역에 다양한 농촌금융조직을 허용하게 됩니다.

로이터(Reuter) 통신사 기자

1호문건에서 현재 많은 자금이 농촌 특히 농업발전에 사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농촌정부의 금융상황, 재정상황에 대해 주임님은 금방 일부 농촌의 기초 지자체에 많은 부채가 있다고했었는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천시원

금융이 농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부터 보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농촌금융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는 신농촌건설에서 연구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금년 1호문건에서 지적한 농촌금융을 개혁하고 발전하는 내용과 비중은 최근 3개 1호문건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여러 측면과 관련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인정할 수 있는 하나는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추진하면서 농촌금융제도를 끊임없이 개혁하고 완성하여 농촌에 더 많은 금융 지원을 얻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농촌의 부채문제에 대해지적하셨는데 이는 확실히 현재 농촌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제약하는 중요한요소입니다.

이러한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복잡한 원인이 있는데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전에 농촌에서 기초시설, 사회사업을 포함한 많은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투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학교, 도로를 재건축하는 등은 주로 농민에 의존하였습니다. 일부 부채는 이런 형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향진 정부와 촌급 조직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신이 투자주체라고 잘못 생각하고 은행에 대부금을 받아 기업을 창업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기업을 투자담보로 한 결과 기업경영이 온전하지 못해 파산하 게 되면서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제도가 엄격하지 못한 원인으로 조성되 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사람들이 대부금을 받아 시찰을 떠났지만 실제로 는 여행을 다니고 심지어 먹고 마시는데 소비하였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측 면의 원인입니다. 때문에 1호문건에서는 금년에 우선 이러한 부채를 청산하 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안하였습니다. 총량이 얼마이며, 어떤 원인으로 조성 되었는지, 채권채무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실태가 파악되어야 중앙에 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방에서 도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연합조간신문(聯合早報)기자

앞서 천 주임이 중국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실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또한 국제적으로 가장 엄 격한 이 표준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천시원

그 엄격한 수준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을 보시면 쉽게 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납 니다. 첫 번째는 농지를 도시공업 건설용지로 전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의 5단계 정부 중 3단계 정부가 아무런 심사권한이 없습니다. 향 정부 현 정 부와 시 정부는 모두 없고, 다만 중앙정부와 성급정부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는 성급 정부는 토지심사권한은 있지만 그것은 농지가 건설용지로 전용될 경 우인데 부여한 권력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첫째, 기본 경지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성급 정부는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 다. 둘째, 비기본 경지를 심사비준 할 경우 성급 정부의 최대 권한은 35ha입 니다. 셋째, 황무지를 심사비준 할 경우 성급 정부는 75ha까지 권한이 있습니다. 기본 경지는 반드시 중앙 정부가 심사비준하며, 방금 제가 말했던 보통 농지가 35ha, 황무지가 75ha인 이 수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모두 중앙 정부가 직접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토지범죄에 대한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조항은 다른 국가들에서 쉽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지범 죄에 대해 3개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작지 파손죄, 두 번째 위법토지 매매죄, 세 번째, 사리사욕, 위법토지 심사비준죄인데, 이는 정부 공무원과 관 련됩니다. 이 두개 법률에서 토지문제 관련 규정을 볼 때 제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실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콩 대공보(大公報) 기자

금년도 중앙1호문건은 농업문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수억 농민들이 아주 기뻐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농촌도시화건설에서 중요한 문제는 농촌호적개혁 문제입니다. 향후 농촌호적을 도시호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증가 폭은 매년 어느 정도입니까?

천시원

우선 호적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소도시와 진의 호적은 실제적으로 일찍부터 해결되었습니다. 공안부에서는 2002년에 소도시, 진과 현급 시의 시내지역에 진입하는 농민들에 대해 그들이 안정된 '주거지'가 있고 안정된 '취업' 혹은 안정된 '수입원'이 있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전입 혹은 개인전입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地級) 시와 성소재지 도시에서도 호적제도를 이미 기본적으로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저우(鄭州) 성소재지, 저쟝(浙江)의 지급시인 후저우(湖州) 등에서도 이미 거주지, 수입과 취업 면에서 아까 말했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적제도 개혁

이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 지방에서 당해지역의 실제상 황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적문제는 상당하게 복잡한 이해관계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호적제도를 이처럼 신중하게 간주하는 것은 호적제도가 중국 고유의 것이라서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국가들에서 호적제도 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과거 계획경제체제하에서 호적제도에 많 은 수혜 사항을 부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호적이 있어야만 도 시의 기업이나 기관에 직원공모 신청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호적이 있어야만 도시에서 주택이나 사회보장을 포함한 각종 기회 를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체제하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과정에서 이러한 이익은 차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일 부 농민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들은 도시호적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원인은 도시호적을 가진다고 해도 도시의 주택을 분배하지 도 취업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또한 도시 사회보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아무리 싸도 돈 내고 필요 없 는 종이를 사라고 한다면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적제도 개혁은 각 지역의 특수성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궈웨이민

지금까지 중국 농촌이 안고있는 다양한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향과 수 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2006년도 1호문건에 대해서 살 펴보았습니다. 기자회견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중국농업정보망(http://www.agri.gov.cn)

중국, 2005년산 쌀 수급 및 가격 동향

박 은 철*

중국의 국가통계국장(李德水)은 2005년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2004년에 비해 1,455만 톤(3.1%) 증가한 4.84억 톤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2004년에는 2003년에 비해 3,875만 톤 증가 하였었다. 또한 2005년 육류 생산량은 6.3% 증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유료작물과 설탕생산량은 2004년도와 같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비록 과거 2년 동안 식량생산량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생산량은 수요량에 비해 부족하다. 그 이유는 중국 인구의 증가, 수자원의 부족 및 농경지감소 등으로 인해 식량생산을 늘리는 것이 갈수록 어렵기때문이다. 2005년 12월말에 중국 농업부장관(杜青林)은 중국은 2006년도에 생산량이 수요량에 비해 1,500만 톤 정도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2006년 식량수요량은 4.95억 톤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006년 1월 25일 중국곡물홈페이지(中國穀物網)에서 중국의 식량작물 중 2005년도 쌀의 생산, 품질, 수급 및 가격상황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2005년 중국 쌀 생산은 기상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다. 남방의 쌀 주산지 인 복건성, 안휘성, 절강성과 강소성 등지는 계속해서 흐린 날씨와 비, 홍수로

^{*} 농림부 parkec@maf.go.kr, 010-3077-8706

인한 침수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입었으며, 특히 낟알이 여물 때 일조량이 부족하여 병충해가 심하였다. 또한 2005년 8월과 9월에 2차례에 걸친 태풍이 중국 연해지역에 밀어닥쳐서 연해지역의 쌀 생산이 비교적 많이 감소하였다.

아울러 인디카계와 자포니카계 쌀의 수급상황 차는 비교적 커 두 품종간의 가격추세가 서로 상이하게 형성되었다. 인디카계 쌀의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 여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중국정부는 이러한 쌀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최 저수매가격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자포니카계 쌀은 계속 작년의 가격상 승 추세가 이어져 신곡이 시장에 출하 후에도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1. 생산현황

2005년 중국 정부가 각종 농업지지 정책 및 최저수매가격 정책을 실시하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해 중국의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모두 증가 하였다. 2005년 중국의 벼 식부면적은 3,000만ha에 근접하게 되었는데, 2004년에는 벼 재배면적이 837.8만ha가 증가한 데 반해 2005년에는 162만ha 밖에 증가하지 않아 5.7% 증가하는데 그쳤다. 벼 총생산량은 1억 8,200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1.6%(292만 톤) 증가하였다. 그 중 조생종벼 생산량은 3,179만 톤으로 전년의 3,222만 톤에 비해 1.3%(43만 톤) 감소하였고 중・만생종벼 생산량은 1억 5,021만 톤으로 전년의 1억 4.695만 톤보다 약 2.2%(326만톤) 증가하였다.

2. 품질현황

2005년 중국 벼 생산은 기상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다. 남방 벼 산지인 복건성, 안휘성, 절강성과 강소성 등지는 계속하여 흐린 날씨와 비, 홍수로 인 한 침수, 태풍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특히 벼가 익는 시기에 일 조량이 부족하여 병충해 발생이 심하였다. 또한 8 · 9월에 MANDSA 등 2차 례에 걸쳐 태풍이 중국 연해지역에 밀어닥쳐 연해지역 벼가 비교적 심하게 도복(倒伏) 되었으며, 10월 전후 벼멸구가 강소성, 절강성 등지에서 심하게 발생하여 벼 품질과 단위당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쳤다.

동북삼성의 자포니카계 쌀의 생육상황은 인디카계 쌀보다는 비교적 양호하여 2005년 기후는 전체적으로 동북삼성의 자포니카계 쌀에 유리하게 영향을 끼쳤다. 단 벼꽃이 필 때 계속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기후로 인해 꽃가루 수정이 불충분하고 도열병이 발생하여 생산량과 품질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단위당 생산량 감소가 심하였는데, 일례로 흑룡강성의 2005년도 1무(200평)당 벼 생산량은 402.23kg으로 2004년 445.6kg에 비해 9.6%(43.43kg)나 감소되었다. 또한도열병과 저온냉열의 영향을 받아 2005년 동북삼성의 자포니카계 쌀은 미성숙립과 쭉정이 발생이 비교적 심하였다. 그 외에 성장후기에 햇빛이 지나치게 강하여 동북삼성 자포니카계 벼의 전체적인 정미상태는 좋지 않았다.

3. 수급상황

2005/06년도 중국 벼 생산량은 1억 8,200만 톤으로 쌀로 환산하면 1억 2,740만 톤이며, 전년 동기 1억 2,536만 톤보다 204만 톤이 증가였다. 그러나 중국쌀 소비량은 1억 3,520만 톤으로 생산량과 비교할 때 약 780만 톤 정도가 부족하나 지난해 974만 톤이 부족한 것에 비해서는 194만 톤이 감소되었다.

4. 가격추세

4.1. 조생종 인디카계 벼

2005년 중국의 조생종 인디카계 벼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가격은 계속해

서 하락하였다. 특히 신곡이 출하된 후 조생종 인디카계 벼 가격은 1.5위엔/kg 이하로 떨어졌다. 2005년 전국 조생종 인디카계 벼 평균가격은 1,479위엔/톤으로 전년에 비해 7.63% 하락하였으며, 조생종 쌀 평균 가격은 2,158위엔/톤으로 전년에 비해 5.7% 하락하였다. 시장관측에 의하면 2005년 7월 강서성의조생종 인디카계 벼 시장가격은 1.24~1.3위엔/kg, 호북성은 1.28~1.3위엔/kg, 안휘성은 1.26~1.28위엔/kg, 호남성은 1.24~1.26위엔/kg으로 매우 낮았다.

4.2. 만생종 인디카계 벼

2005년 전국 만생종 인디카계 벼의 연평균가격은 1,510위엔/톤으로 전년에 비해 8.82% 하락하였으며, 쌀의 연평균가격은 2,283위엔/톤으로 5.62% 하락하였다. 시장관측에 의하면 2005년의 만생종 인디카계 벼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편이었다. 9월 중·하순 안휘성의 벼 시장가격은 1.34~1.36위엔/kg, 호북성은 1.28~1.3위엔/kg, 강서성은 1.3~1.32위엔/kg, 호남성은 1.34~1.36위엔/kg으로 조생종과 같이 매우 낮았다.

이에 따라 2005년 9월 15일 호북성은 중·만생종 인디카계 벼 최저수매가 격안을 제시하고 안휘성, 강소성, 사천성 및 호남성의 최저수매가격안을 조기에 발표하여 중·만생종 인디카계 벼의 시장가격을 1.44위엔/kg으로 안정시켰다. 이로 인해 10월 이후 중·만생종 인디카계 벼 가격은 상승하여 일부지역에서는 최고 1.56~1.58위엔/kg에 달하여 전년 수준에 근접하였다.

4.3. 자포니카계 벼

2005년 중국의 자포니카계 벼 수요는 왕성하여 시장가격은 시종 최저수매 가격 이상으로 유지되어 가격추세는 인디카계와는 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전 국 자포니카계 벼 연평균 가격은 1,880위엔/톤으로 전년에 비해 12.5% 상승하 였으며, 쌀 가격은 2,760위엔/톤으로 전년에 비해 9.3% 상승하였다.

2005년 11월초 흑룡강성 자포니카계 벼는 1.64~1.66위엔/kg으로 가격이 형성되었고 길림성은 1.72~1.76위엔/kg으로 형성되어 보편적으로 전년에 비해

0.08~0.12위엔/kg 높았으며 지속적으로 높은 현상을 보였다. 12월 중·하순에 이르러 '307'과 '秋田小町' 같은 우량품종의 벼 가격은 2.0~2.6위엔/kg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동북삼성에서 자포니카계 벼 가격의 최고점에 다다랐다. 이와 같이 동북삼성의 자포니카계 벼 가격형성은 높게 시작하여 높게 유지되었으며 남방의 자포니카계 벼 역시 높은 가격을 유지하여 2005년 인디카계 벼는 전반적으로 낮은 가격을 형성한데 비해 자포니카계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다.

자료:中國穀物網

일본, 2005년도 농산물수출 12% 증가

김 태 곤*

일본은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고소득층 증가와 세계적인 일본식품 붐을 계기로 농산물이나 식품의 수출확대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고 있다. 2004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2,954억엔 이었으나 이를 2009년까지 6,000억엔으로 확대하는 소위 수출배가 5개년계획을 수립, 목표달성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첫해인 2005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3,311억엔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1. 공세적 농정추진

농림수산성은 수출촉진실을 설치하여 관민일체 수출활동에 적극 자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국내 소비자의 고급화와 다양화하는 수요에 대 응하여 팔리는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면서 세계 각지의 수요동향를 파악한 수 출전략을 수립하여, 고부가 가치화와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확대는 농림수산성의 공세적 농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이즈미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식료·농업·농촌정책추진본부는 2005년 3월 향후 농림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을 2004년 2,954억엔에서 2009년 6,000억엔으로 배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aegon@krei.re.kr 02-3299-4241

2. 2005년도 수출실적

이러한 일본의 공세적 농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산물 수출촉진대책의 결과로 2005년도 수출실적은 크게 향상되었다. 2005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액(알코올, 담배, 진주 등은 제외)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3,311억에 달한다. 5년후인 2009년 수출목표치 6,000억엔으로 향한 초년도 실적으로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향후 농림수산성은 생산자와 관련단체, 지자체 등에 정부지원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증가율은 최근 5년간 5.9% 정도였다. 이것이 2005년도 12.1%로서 8년만에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하였다. 수출 내역을 보면 농산물이 1,772억엔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고, 임산물이 92억엔(3.7% 증가), 수산물이 1,448억엔(19.9% 증가)이다. 농산물 품목으로는 사과, 쌀, 녹차 등의 증가가 현저하다. 특히 사과는 53억 5,000만엔으로 전년대비 82.4% 증가하였고, 쌀은 원조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3억 1,600만엔으로 35.5% 증가하였다.



그림 1 농림수산물 수출배가 5개년 계획, 2004~09년

자료: 농림수산성

이렇게 증가한 요인으로는 일본 국내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판촉활동과 고급품 지향 등을 들 수 있으며, 대만에서의 증가율이 높다. 녹차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녹차 붐을 타고 21억 1,100만엔으로 25.0%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농림수산물의 수출이 늘어나고 배경에는 세계적인 일본 식품의 붐과 아시아에서의 고소득층 증가, 그리고 DDA와 FTA에 의한 무역제도 변화 등이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와 일본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노력으로 인해고품질의 일본산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수출 유망품목은 사과, 배, 밀감, 복숭아, 감, 참마, 녹차, 쇠고기, 쌀 등을 들고있다.

품목	수출액(100만엔)	증가율(%)	증가 요인
사과	5,350	82.4	○산지 등의 판촉활동에 의해 대만
쌀	316	35.8	등에서 수출 증가
녹차	2,111	25.0	○녹차 붐에 의해미국과 유럽에서 증가
과자	8,977	18.6	○미국, 대만, 홍콩에서 증가 ○전시회 등을 통해 일본과자의 품질평가가 확대

표 1 수출 증가 품목, 2005년

자료 : 농림수산성

3.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대책

일본의 수출지원대책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수출국에 대한 시장개척대표단 파견을 비롯하여 수출에 장해가 되는 외국 제도나 그 운용상 황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지원체제로는 농림수산성에 '수출촉진실'을 설치하는 동시에, 장관을 본부 장으로 하는 '국산농산물·식품수출촉진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관민 연대를 위하여 2005년 4월 다양한 수출관련자들로 구성되는 '농림수산물등 수출촉진 전국협의회'를 설치하고, 또 같은 해 5월에는 '농립수산물등 수출배 가 행동계획'을 수립,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으로는 아시아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고품질 농산물과 식품의 연중 판로 창출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 (1) 상대국의 무역제도, 시장동향, 무역정보 등의 수집과 제공, 생산자 등에게 수출하기 쉬운 무역환경 정비 등에 지원하는 '농산물무역원활화촉진사업'
- (2) 수출에 관심이 있는 생산자가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개척 대표단 파견, 목표로 하는 시장에 일본 농산물 홍보, 수출 노하우를 가진 수 출업체와의 프로젝트 형성과 수출개척 사례 구축 등에 지원하는 '국산농산물 해외보급사업'
- (3) 현지 고급백화점 등에서의 연중 판매활동, 현지 요리점을 활용한 홍보활동, 품목별 생산자와 무역업자의 연계에 의한 다양한 수출사례 정착, 수송비절감을 위한 수송루트 공동화 등에 지원하는 '농산물해외판로확립대책사업'
- (4) 지역단위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자가 행하는 전시회·상담회, 시험수출 등 수출촉진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산품수출촉진대책' 등이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은 관련 예산을 2005년 6억 5,600 만엔에서 2006년도에는 12억 5,300만엔으로 증액하여 생산자와 관련단체, 도도부현, 관련 부처와 연대하면서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료: http://www.maff.go.jp/sogo_shokuryo/yusyutu.html 등에서

박 기 환*

'농산물 생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의향·의식 조사'는 농업환경시책의 검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인, 유통가공업자 및 소비자가 농산물 생산에 있 어 환경보전에 대해 어떠한 의식·의향을 지니고 있는가를 파악한 것이다.

이 조사는 2005년 9월 중순부터 10월 상순에 걸쳐 '농림수산정보교류 네트워크사업'의 농업인 모니터 3,224명, 유통가공업자 모니터 및 소비정보제공협력자 각각 1,038명, 1,480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모니터 2,445명(회수율 75.8%), 유통가공업자 모니터 743명(회수율 71.6%), 소비정보제공협력자 1,357명(회수율 91.7%)으로부터 회답을 얻은 결과이다.

1. 농업의 환경영향에 관한 의식

농업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농업인은 '수자원 함양, 대기 정화 등 환경보존에 공헌하고 있다'가 72.9%로 가장 높다. 유통가공업자 및 소비자는 '논밭이나 저수지가 다양한 생물의 생식지가되는 등 자연보전에 공헌하고 있다'가 59.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자원함양, 대기 정화 등 환경보존에 공헌하고 있다'가 각각 58.4%, 57.0% 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ihwan@krei.re.kr 02-3299-4331

표 1 농업의 환경영향에 관한 의식(복수응답)

	_						
	환경보전 공헌	양호한 경관 형성	자연보전 공헌		경관회손 등 양호한 환경 방해		무응답
농업인	72.9	41.8	51.4	24.5	4.4	1.2	0.2
유통가공업자	58.4	34.7	59.9	33.2	6.5	1.1	0.0
소비자	57.0	35.1	59.9	36.8	4.0	1.6	0.1

2. 환경농산물에 관한 의향

(1) 농업인이 환경농산물 생산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어느 정도 추진하고 싶다' 47.6%, '추진하고 싶다' 46.3%로 93.9%가 환경농산물 생산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환경농산물 생산에 관한 농업인 의향

단위: %

	추진하고 싶다	어느 정도 추진하고 싶다	별로 추진하고 싶지 않다	추진하고 싶지 않다
구성비	46.3	47.6	5.2	0.8

(2) 환경농산물 생산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싶은가에 대해 '화학비료, 농약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농업분야에서 환경문제를 배려하고 싶기 때문에'가 61.6%로 가장 높다.

표 3 구체적 추진에 관한 농업인 의향(복수응답)

단위: %

	아름다운 경관	자원순환	화학비료· 농약 사용자제	폐기물 적정처리	지구온난화 방지공헌	기타	무응답
구성비	46.3	47.6	5.2	0.8	0.8	0.8	0.8

표 4 구체적 추진에 관한 농업인 의향 이유(복수응답)

	농약사용 등 건강불안 고려	연작장해 등 재배기술 효과	농업분야에서 환경문제 배려	소비자 등의 움직임	행정기관, 농협의 움직임	고가 판매 가능 등 농업경영에 매력	기타	무응답
구성비	52.9	40.5	61.6	4.8	6.9	13.6	2.7	0.2

(3) 유통가공업자 및 소비자가 농업인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 '화학비료나 농약을 줄이는 농업을 했으면 좋겠다'가 각각 70.1%,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농업인 추진에 대한 유통가공업자 및 소비자 의향(복수응답)

단위: %

	아름다운 정원풍경 유지	화학비료, 농약 저감	유기질비료 사용 농산물 생산(물질순환)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는 농업	관광 농원 조성	기타	무응답
유통가공업자	24.4	70.1	57.1	31.8	9.3	0.8	-
소비자	23.4	78.1	53.6	29.3	9.0	1.5	0.1

3. 화경농산물 취급에 관한 유통가공업자 의향

유통가공업자가 환경농산물을 취급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어느 정도 취급할 의향이 있다'가 59.1%,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싶다'가 27.9%로 유 통가공업자의 87.0%가 환경농산물을 취급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보전형농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으며, 취급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다.

표 6 환경농산물 취급에 관한 유통가공업자 의향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싶음	어느 정도 취급할 의향 있음	별로 취급하고 싶지 않음	전혀 취급할 의향 없음	무응답
구성비	27.9	59.1	10.0	2.4	0.7

표 7 취급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국가나 현의 인정이 있어 안심할 수 있기 때문	소비자 니즈가 있기 때문	환경보전형농업을 추진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기타	무응답
구성비	38.7	63.5	72.8	4.2	0.2

표 8 취급하고 싶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단위: %

		인정농산물(에코팜 마크, 유기JAS 등)과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			기타	무응답
구성비	45.7	35.9	52.2	23.9	10.9	1.1

4. 환경농산물 구입에 관한 소비자 의향

소비자가 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 '구입하고 싶다'가 63.2%. '어느 정도 구입하고 싶다' 35.4%로 98.6%가 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환경농산물 구입에 관한 소비자 의향

단위: %

	구입하고 싶음	어느 정도 구입하고 싶음	별로 구입하고 싶지 않음	구입하고 싶지 않음	무응답
구성비	63.2	35.4	1.0	0.4	0.1

구입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전하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 9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으며, 구입하고 싶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격이 높기 때문'이 61.1%로 가장 높다.

표 10 구입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

단위: %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		환경농업 생산자를 응원하고 싶기 때문		무응답
구성비	93.9	18.6	77.7	2.2	0.1

표 11 구입하고 싶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단위: %

	가격이 비싸기 때문	벌레나 형태 등 미관이 나쁘기 때문	구입할 곳이 적기 때문	표시 등 신뢰할 수 없기 때문	기타	무응답
구성비	61.1	5.6	44.4	50.0	5.6	5.6

5. 환경농산물 생산·취급에 관한 농업인, 유통가공업자 의식

(1) 농업인이 환경농산물 생산을 할 때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노력이 드는 것'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다.

표 12 환경농산물 생산의 문제점에 관한 농업인 의식(복수응답)

단위: %

	기술적 안정단계까지 수확량 감소, 품질저하	노력이 많이 소요	자재비 소요	고가격 판매를 위한 판로확보에 시간소요	추진을 위한 기술 미확립	기타	특별히 없음	무응답
구성비	49.0	59.1	34.4	18.2	29.5	1.3	0.8	0.9

44 세계농업뉴스 제66호 (2006, 2)

(2) 유통가공업자가 환경농산물 등의 취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소비자가 구입하기 쉬운 가격에서의 공급'이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3 환경농산물 취급에 관한 유통가공업자 의식(복수응답)

단위: %

•		환경 농산물*의 소비자에 PR		상품에 자재사용상황을 표시하는 등 마크보다 추진내용을 중시한 표시		기타	무응답
	구성비	51.7	50.7	20.2	63.0	2.0	0.5

주: 환경농산물 생산을 행하고 있는 에코 팜 마크를 부착한 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유기 JAS 규격), 특별 재배농산물 등

6. 환경농산물 가격에 관한 유통가공업자 및 소비자 의향

유통가공업자가 환경농산물을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관행재배에 의한 농산물과 같은 가격이라면 구 입해 줄 것이다'가 67.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다.

표 14 환경농산물 가격에 관한 유통가공업자 의식

단위: %

	관행재배 농산물 가격보다 높아도 구입해 줄 것임	관행재배 농산물과 동일한 가격이라면 구입해줄 것임	관행재배 농산물 가격보다 싸다면 구입해 줄 것임	무응답
구성비	28.0	67.8	3.8	0.4

한편,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가격이라면 구입하고 싶은가에 대해 '관행재배에 의한 농산물과 같은 가격이라면 구입하고 싶다'가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다.

표 15 환경농산물 가격에 관한 소비자 의향

	관행재배 농산물 가격보다 높아도 구입함	관행재배 농산물과 동일한 가격이라면 구입함	관행재배 농산물 가격보다 싸다면 구입함	무응답
_ 구성비	40.2	57.4	2.2	0.1

7. '환경보전형농업'에 관한 의식

'환경보전형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농업인 및 유통가공업자의 경우 '중 요하다'가 각각 66.6%, 71.7%이며, '어느 정도 중요하다'가 31.4%, 25.8%로 나 타나고 있다. 또한 소비자도 '중요하다'가 86.5%, '어느 정도 중요하다'가 13.1%로 나타나 있어 농업인, 유통가공업자 및 소비자 어느 쪽도 '환경보전형 농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회답이 거의 100%로 나타나고 있다.

표 16 환경보전형농업에 관한 농업인, 유통가공업자 및 소비자 의식

단위: %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무응답
농업인	66.9	31.4	1.3	0.2	0.2
유통가공업자	71.7	25.8	1.6	0.3	0.5
소비자	86.5	13.1	0.1	0.1	0.1

8. '농업환경규범'에 관한 농업인 의향

'점검시트'1)를 활용한 농업생산 추진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 '어느 정도 추

¹⁾ 농림수산성에서는 2005년 3월 환경과 조화된 농산물 생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요 하고, 또한 기본적 추진을 정리하고, 농업인이 자기점검을 하기 위해 이용하는 '환 경과 조화된 농업생산활동 규범(농업환경규범)'을 책정하여 실행상황을 점검하도

진하고 싶다'가 52.4%, '추진하고 싶다(혹은 이미 추진하고 있다)'가 28.1%로 나타나 '점검시트'를 활용한 농업생산 추진 의향이 80.5%로 나타나 있다.

표 17 농업환경규범에 관한 농업인 의향

단위: %

	실시하고 있거나 하고자함	어느 정도 실시하고자함	그다지 실시하고 싶지 않음	흥미 없음	무응답
구성비	28.1	52.4	11.2	2.9	0.9

9. 정부에 기대할 시책에 관한 의향

환경농산물 생산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에 어떠한 시책을 기대하는가에 대해 농업인은 '기술이나 자재 개발'이 51.5%, '농업인, 소비자, 유통가공업자의 계발'이 51.1%, '관행재배보다 증가하는 생산비(노동비 등)에 대한 경비의조성'이 50.5%로 나타나 있다. 유통가공업자 및 소비자는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의 계발'이 각각 56.8%,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8 정부에 기대할 시책에 관한 의향(복수응답)

단위: %

	각 주체 계발	기술 자재 개발	선진 사례 조사 소개	농업인 연수 기회 충실	환경 농산물 산지정보 제공	생산비 경비 조성	기계 시설 정비 조성	기타	특별히 없음	무응답
농업인	51.1	51.5	22.4	24.3	38.5	50.5	43.6	2.1	0.8	0.3
유통가공업자	56.8	34.9	18.3	37.1	47.6	50.2	35.1	1.7	0.5	0.5
소비자	61.1	33.0	13.4	34.6	54.5	51.6	41.3	2.9	0.2	0.1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農産物の生産における環境保全に關する意識・意向調査結果』, 2006.2.

록 '점검시트'를 작성하였다.

EU, 바이오 연료전략 채택

김 정 섭*

EU 집행위원회는 2월 8일 '바이오 연료전략(EU Strategy for Biofuels)'을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는 농업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원자재에서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지원, 법규 정비 등과 관련된 야심찬 계획이 담겨 있다. 2005년 12월에 채택된 '바이오매스 행동계획(Biomass Action Plan)'에 근거한이 전략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EU와 개발도상국에서의 바이오 연료 생산을 촉진한다. 둘째, 비용 측면에서 바이오 연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연료 개발을 위한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바이오 연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준비한다. 셋째, 바이오 연료 생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한다.

EU는 바이오 연료 사용을 증대함으로써 여러 측면에서의 편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첫째, 수입되는 화석 연료에 대한 EU의 의존도를 낮춘다. 둘째,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셋째, 농업인들에게 새로운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여러 개발도상국들에는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날 EU 집행위원회 농업 및 농촌개발 총국 위원 마리안 피셔 보엘은 "급 격히 오른 유가는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교토 의정서에 따라 이행해야 할 엄정한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의 천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skkjs@krei.re.kr 010-7339-2546

가스 수입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럽의 에너지 자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유럽의 농업인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논평하면서 이 계획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시사했다. 'EU의 바이오연료 생산전략'을 담고 있는 EU 집행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1. 서론

EU에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 가스 배출 총량의 21%가 교통수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특히 교토 의정서에서 합의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려면, 교통수단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쉬운 과제가 아니다. EU의 교통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거의 전부가 석유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석유의 부존량은 제한되어 있고 그것도 세계 몇몇 지역에서만 생산된다. 새로운 석유 매장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에너지 안보는 수입 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다양화와 기술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EU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교통수단 제조업체들은 더욱 청정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을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더욱 진행되어야 한다.

2005년 10월 햄프톤 코트(Hampton Court)에서 개최되었던 비공식 EU 회원 국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 재활성화 방안을 제 안하도록 요청 받았다. 그것은 수입 석유 및 천연 가스에 대한 유럽의 과도한 의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확고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영향 평가에 기초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개발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었다.

바이오매스를 가공하여 생산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바이오 연료는 교통수단에 있어서 화석연료의 직접적인 대체물이다. 그리고 기존의 화석연료 공급체계 안에 쉽게 통합될 수 있다. 바이오 연료가 대부분 화석 연료에비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정책에 힘입어 생산되는 전 세계 바이오 연료 생산량은 현재 350억 리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맥락에서 바이오 연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2005년 12월에 수립된 '바이오매스 행동계획'을 보완한 것이며, 여러 가지 정책적 선택에 대한 영향평가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 연료의 문제는 복잡하고 여러 부문들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진행상황이 역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EU의 접근방법은 전략적이어야 하며,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활용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바이오 연료 시장의 진화과정에 맞추어, 전략은 적절하게 수정될 것이다.

2. 바이오 연료의 가능성 현실화

'바이오매스 행동계획'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모든 종류의 바이오매스 사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전략 보고서는 그러한 활동들의 목표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EU와 개발도상국에서의 바이오 연료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한다. 그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2) 바이오 연료 생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작물을 최적화된 수준에서 재배함으로써 바이오 연료 사용의 비용-경쟁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바이오 연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시범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비기술적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바이오 연료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 (3) 바이오 연료 생산 원재료나 바이오 연료 자체를 생산하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함에 있어, EU의 역할을 모색한다.

2.1. 일세대 바이오 연료

현재 대부분의 교통수단들에서 일세대 바이오 연료를 기존의 연료에 낮은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세대 바이오 연료를 기존 인프라구조를 통해 유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떤 디젤 교통수단은 100% 바이오디젤(B100) 연료로 운행할 수 있다. 디젤이나 휘발류를 바이오 연료로 좀 더 많이 대체하는 것이 교통 부문이 교토 의정서의 목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비용 측면에서 EU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연료가 화석 연료에 비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EU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디젤은 원유가격이 배럴당 60 유로 이상이 되어야 겨우 경쟁이 가능하다. 바이오 에탄올은 원유가격이 배럴당 90 유로 정도일때 경쟁력을 갖게 된다.

바이오 연료전략이 성공하려면 원료작물 공급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현재 공동농업정책의 일부 조항은 필요한 경우 재검토하고 변경될 것이다. 세계 무역에 있어서 바이오 연료의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 또한 EU나 다른 국가들에서의 바이오 연료 수급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안적 연료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새로운 유형의 엔진을 도입하고, 연료 유통체계를 조정하는 일은 장기적인 투자를 수반한다. 그러한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시장 수요가 안정적이라는 전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시장 의 논리에 기초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통해 기존의 공급 중심의 정책 수단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2.2. 차세대 바이오 연료와 그 이후

가장 유망한 차세대 바이오 연료 기술 중 하나인 ligno-cellulosic 처리 기술 은 이미 상당히 진보해 있다. 유럽에서는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에 각 1개소 씩 시범공장이 설립되어 있다. 바이오 매스를 액화 바이오 연료(BtL)로 전환하는 다른 기술들로는 Fischer-Tropsch 바이오디젤과 bio-DME(디메틸 에테르)가 있다. 독일과 스웨덴에서 그 시범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합성천연가스 (Synthetic natural gas, SNG)는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재생 자원으로부터도 생산될 수 있다. 재생 SNG는 이산화탄소 감소 측면에서 큰 이점을 갖고 있으며, 여타의 기체 연료 개발에 있어 결정적인 도약의 단계가 될 것이다.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바이오 연료의 대규모 사용을 준비하려면, 성공적인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유럽 바이오 연료 기술 플랫폼(European Biofuels Technology Platform)'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바이오 연료 전용 원료작물 개발에 그리고 바이오 연료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원자재의 범위를 넓이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민간 부문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려면 모든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동반자 관계가 필요하다.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이 경제적으로 가능성 있는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다.

진일보한 바이오 연료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는 수소 연료 기술 전의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현재, 수소 연료 기술의 적용에는 새로운 엔진 기술과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드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소 연료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소 연료를 채택하는 교통수단의 도입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며, 대규모의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2.3. 개발도상국과 바이오 연료

열대 환경에서 바이오매스 생산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바이오 연료, 특히 에탄올의 생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바이오에 탄올의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에서는 현재 사탕수수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에 탄올이 화석 연료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바이오디젤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EU가 주요 생산지이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내수용으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는데, 수출잠재력을 신장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은 농업활동의 다양성을 증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화석 연료(주로 석유)에의 의존성을 낮추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개발도상국들마다 처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바이오 연료 생산과 이용에 대한 전망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생산되는 원료작물과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 도 국제 원유 가격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그밖에도 잠재적 생산 규모, 국내 시장 규모, 필요한 인프라구조 투자 규모, 정책 지원, (EU,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한) 수출 가능성, 원료작물의 시장 가격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료작물 생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나라에서는, 환경민감지역(예: 열대우림지역)에 대한 압력 등과 같은 환경적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토양비옥도나 수자원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과 농약 사용에 관하여 환경적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바이오 연료 생산과 식량 생산 사이의 경합을 두고 사회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심사들은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을 필요로하는 것들이다.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강력한 규제 틀을 만들어 대처해야 할 거이다. EU의 개발 정책은 개발도상국들이 바이오 연료 개발을 통해 편익을 얻으면서도 그러한 우려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3. 바이오 연료 전략: 정책의 7대 축

3.1.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 촉진

- (1) EU 집행위원회는 '바이오 연료지침(Biofuels Directive)' 개정을 위해 2006 년 안에 보고서를 작성·제출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바이오 연료의 국가별 시장 점유율 목표 설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 (2) EU 회원국들이 바이오 연료 관련 법제를 통해 차세대 바이오 연료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할 것이다.
- (3) 청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공공 부문에서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최근에 채택한 입법 제안을 'EU 이사회(EU Council)'와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3.2. 환경적 편익 확보

- (1) 바이오 연료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검토한다.
- (2) 바이오 연료를 이용함으로써 최적의 온실 가스 감축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탐색하고 제안한다.
- (3) EU와 제3국들에서 바이오 연료 원료작물 재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기 위해 노력한다.
 - (4) 정유에 포함될 수 있는 에탄올, 에테르, 증기 함량과 경유 안의 바이오

디젤 함량에 대한 제한 문제를 검토한다.

3.3. 바이오 연료 생산 및 유통

- (1) EU 회원국들이 각 국가별로 기준을 준비하면서 바이오 연료와 기타 바이오 에너지의 편익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권장한다. 그리고 유럽 통합 정책과 농촌개발 정책 하에서 실행 계획을 검토하도록 권장한다.
- (2) 국가 농촌개발 정책 프로그램 안에서 바이오 연료와 관련된 농촌개발 기회의 문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바이오매스 관련 문제들을 검토하도록, 특 별 작업반을 구성한다.
- (3) 바이오 연료 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기능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관련 산업체들이 그 기술적 정당성을 소명하도록 요구하며, 그 산업체들의 행태가 바이오 연료에 대해 차별적이지 않도록 감시한다.

3.4. 원료작물 공급 확대

- (1) 휴경지에서의 비식용 작물 재배 시에 지급되는 보조금 기준과 에너지 작물 재배 시 지급되는 보조금 기준에 바이오에탄을 생산을 위한 사탕 작물 도 해당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2) 공공부문이 비축하고 있는 기존의 곡물 재고분을 가공하여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는 또한 수출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곡물 재고량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 (3) 2006년 말까지 에너지 작물 정책을 시행한다.
- (4) 바이오 연료 수요가 상품 및 부산물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니터 링한다. EU와 개발도상국들에서 바이오 연료 수요의 변화가 식품 수급 및 가 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 (5) 농업인과 산림 소유자들에게 에너지 작물의 특성과 에너지 작물 재배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기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재정 지원한다.
- (6) 임산물을 에너지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삼림행동계획(Forestry Action Plan)'을 준비한다.
- (7)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대안적 가공기술로서 동물 부산물 처리를 촉진하도록 관련 법규를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8) 폐기물의 2차 사용을 위한 기준을 명백하게 하려는 목표로 제안되어 있는 현재의 정책 메커니즘을 실행한다.

3.5. 교역 기회 증진

- (1) 바이오 연료에 적용되는 별도의 무역상품 분류 틀을 제안하기에 앞서 그 장점, 단점, 법률적 함의 등에 대해 평가한다.
- (2) 현재 발효 중인 무역협정보다 더 우호적인 수준으로 바이오에탄올의 시장접근 기회를 유지한다.
- (3) 에탄올 생산국과의 향후 무역협상에 있어 균형잡힌 접근방법을 추구한다. EU는 역내 바이오에탄올 생산자와 무역 상대국의 이해를 모두 존중할 것이다.
- (4)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종류의 유지류 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이오디젤 기준 개정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바이오디젤 생산에 있어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한다.

3.6. 개발도상국 지원

(1) EU의 설탕 부문 개혁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적용될 예정인 '설탕 프로토콜(Sugar Protocol)'이 바이오 연료 생산을 돕도록 한다.

56 세계농업뉴스 제66호 (2006. 2)

(2) 바이오 연료 생산 잠재력을 갖춘 개발도상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바이

오 연료지원 팩키지(Biofuels Assistance Package)'를 마련한다.

(3) 국가 수준에서의 바이오 연료 플랫폼 발전과 지역(region) 수준에서의 친

환경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행동계획을 EU가 가

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3.7. 연구개발 지원

(1) '제7차 기본 틀 프로그램(the 7th Framework Programme)'에 따라 이루어

지는 바이오 연료 개발 및 바이오 연료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한다.

(2) 식물 원료에서 바이오 연료를 정제 추출하는 기술과 차세대 바이오 연

료 개발에 관한 연구에 우선순위를 둔다.

(3) 산업체들이 주도하는 바이오 연료 기술 플랫폼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

하고, 여타의 유관 기술 플랫폼을 동원한다.

(4) 그러한 기술 플랫폼들이 준비하는 '전략적 연구 의제(Strategic Research

Agendas)' 실행을 지원한다.

자료: EU Commission

캐나다, 바이오에탄올로 농업진흥 도모

신 용 광*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는 2005년 6월 총액 5억 2,000만 캐나다 달러(이하 C달러, 약 4,400억원)의 에탄올증산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 주에서는 2007년 1월부터 가솔린에 5% 에탄올의 혼합을 의무화 한 '재생가능 연료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연간 자동차 20만대분에 상당하는 80만 톤의 온실효과 가스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동 기준 시행을 앞두고 에탄올의 공급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12년간에 걸쳐서 에탄올 공장건설 등을 지원하며, 이와 더불어 원료가 되는 곡물 재배농가의 진흥에도 목적이 있다. 캐나다의 농업인구는 감소 일로를 걷고 있어 식품 이외의 새로운 시장 창출에 농업 관계자의기대가 크다.

1. 에탄올 생산 2007년까지 4배 증가

캐나다는 온실 효과 가스 삭감을 정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8년부터 2012 년까지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6% 삭감하여야 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솔린에 대한 에탄 올의 혼합은 온실효과가스의 대규모 발생원인 자동차에 대한 대책으로서 중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ykshin22@krei.re.kr 02-3299-4333

시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2003년에 농업·농산식품부 소관의 전국 바이오매스(biomass)·에탄올·프로그램(NEEP, 총액 1억 4,000만 C달러(약 1,190억원))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3년간에 걸친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금까지 온타리오주, 퀘벡주, 서스캐처원주,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등에서 플랜트 건설에 대한 보조가 결정되었다.

온타리오주의 프로그램은 이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으로 '에탄올 성장기금 (EGF)'을 통해서 주내의 플랜트 건설을 촉진하고 2007년의 에탄올 생산량을 현재의 4배 이상인 75만 kl까지 확대시킬 방침이다.

에탄올은 밀, 보리, 옥수수, 밀짚 등을 효소로 분해하고 증류해서 만들어진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옥수수 농가의 관심이 특히 높으며, 주 옥수수생산자협회(OCPA)는 지난 9월에 열린 곡물거래시장 개발위원회(GT&MDC)의 반대집회에서 에탄올 생산에는 국내산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 협회에 의하면 온타리오주의 옥수수 농가는 지금까지 미국산의 대량 유입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게다가 에탄을 생산에서도 저가의 미국산이 사용되면 고액의 세금을 쏟는 동 프로그램의 목적의 퇴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협회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미 정부가 자국의 옥수수 농가에 부당한 보조금을 주어 캐나다에 덤핑 수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 프로그램을 기회로 매니토바주와 퀘벡주의 생산농가에서 만드는 캐나다·옥수수 생산자 협회 (CCP)와 공동해 국내산 보호를 호소해 나갈 예정이다.

2. 식량과 에탄올 생산으로 농가경제의 안정도모

온타리오주의 서쪽에 위치한 매니토바주에서는 밀농가의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에탄올 생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주 농업식품지방개발부에 의하면 근

년 밀의 수송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잉여 밀을 주내의 에탄올 공장에서 사용한다면 생산 농가에 있어 1톤 당 35 C달러가 절약되어 직접 수입원으로 연결된다고 한다. 게다가 에탄올 생산의 부산물은 가축 사료로 이용하면 플러스효과는 크기 때문에 공장 유치에 의욕적이다.

2001년의 국세조사에 의하면 캐나다의 농가 호수는 96년에 비해 10.7%감소한 25만호미만으로 하락하였으며 농업인구는 13만 명이 감소한 72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자원대국이지만 전인구에서 차지하는 농업인구의 비율은 2%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농가의 평균 연수입은 6만 4,160 C달러(약 5,400만원)로 기타세대의 평균 연수입보다 2,000 C달러 적었다. 전회 조사에서는 농가의 연수입이 100 C달러 정도 많았던 것이 역전되어 이농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곡물류는 가격변동이 크고 농가 경영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에탄올 생산의 매력은 크다.

캐나다는 지금까지 에탄올 생산에 주력하지는 않았다. 농업·농산식품부에 의하면 2004년의 국별 생산량은 브라질이 1,500만 kl로 최고이며 미국이 1,400만 kl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3위인 중국은 365만 kl이며 캐나다는 25만 kl로 14위에 머물고 있다. 곡물을 원료로 한 에탄올 생산에는 사료가격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연방 농업식량부의 시산에 의하면 밀·보리·옥수수 등 캐나다 대표적인 작물의 연간 생산량은 5,000만 톤으로 이 가운데 약 절반을 수출하고 있다.

만일 국내의 모든 가솔린에 '에탄올 10%함유'를 가정하더라고 이를 위해 필요한 곡물은 800~900만 톤으로 세계의 주요 곡물 수출국의 지위가 위협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밀짚, 목재 쓰레기 등 지금까지 폐기물로 취급한 자원을 원료로 하는 방안도 있어서 식량과 에탄올 생산의 양립으로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캐나다, 정권교체와 DDA 협상동향

김 태 곤*

캐나다 하원은 2005년 11월 말 최대 야당인 보수당이 제출한 내각불신임안 가결로 총선에 돌입했다. 쟌 크레티엥 정권 시대의 부정의혹이 발단이 되어지난 1월 23일 치러진 이번 총선은 12년 간의 자유당 정권에 마침표를 찍고,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다당제 정치체제, 강한 지역성, 인접 미국의 존재, 프랑스계 주민의 발언력 등 캐나다의 정치풍토에서 이번 총선 결과가 캐나다 농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자유당이 낙농과 가금류 등 국내용 농산물의 주산지인 동부(퀘벡주, 온타리오주)를 지지기반으로 프랑스계 주민으로부터 일정한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 새롭게 집권당이 된 보수당은 전통적으로는 자유당과 마찬가지로 동부를 지지기반으로 하지만, 지난번 선거에서 정권 탈락 이후 다른 정당과 합종연횡을 반복하여 서부에서 세력을 확대해 왔다. 이 지역은 축산, 소맥 등 유력한 수출품목을 보유한 알바타주, 사스카추완주, 매니토바주 등이며, 이렇게 구분되는 정치와 농업의 동서 분포는 DDA 농업협상에서 캐나다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크레티 엥 정권 때부터 이라크 문제나 군사정책 등에서 미국과 거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aegon@krei.re.kr 02-3299-4241

를 둔 자유당 정책에 대해 보수당은 친미적 정권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통 상면에서는 자유당 정권은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광우병, 캐나 다산 소맥의 보조금에 관한 통상문제로 미국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에 보수당 정권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했다. 이 협정은 보수당 정권 하에서 합의·서명에 이르렀으나, 그 후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3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대패하여 자유당 정권 하에서 1994년 협정이발효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캐나다 총선이후 국내정세 변화가DDA 농업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1. 농업협상에 있어서 입장차이의 배경

캐나다는 2004년 실적으로 돼지고기 세계 3위, 소고기 5위, 소맥 3위의 수출국이다. 이들 수출물품 생산지역은 돼지고기가 퀘백주와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서부에서 대략 7대 5 정도의 분포로 생산되는 한편, 돼지고기와 소맥은 서부의 알바타주, 사스카추완주, 매니토바주에서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산물 수출대국으로서의 측면이 있는 한편, 캐나다는 국내용 물품에 대해서는 생산할당에 따라 출하 및 판매규제를 하는 공급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공급관리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CAIS와 같은 소득안정대책으로 농가소득 확보를 강구하는 것이 공급관리제도의 기본적인 틀이다.

현재 실시되는 공급관리제도의 대상은 낙농, 가금, 계란 등 5개 품목이며, 이들 'SM5'(Supply Management 5개 품목) 생산의 대부분은 국내용 물품이기도 하여 대소비지에 가깝고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퀘백주, 온타리오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공급관리품목에 대한 쿼터초과 관세율

유제품	닭고기·계란
299%	238%

주:최고 세율

또한 이 제도는 당해 물품의 국경조치 없이는 성립할 수 없고, UR 협정을 근거로 수입할당제도에서 관세할당제도로 이행한 이들 품목에는 현재 수입금 지적인 고율의 쿼터초과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인 캐나다소맥협회(Canadian Wheat Board, 매나토바주 위니펙에 본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맥의 독점적 판매기관으로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집하·판매를 전담하고 있고, 국외 수출에 대해 수출국영무역기업의 역할을 하고있다.

2. 총선에서의 농정을 둘러싼 쟁점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자유당이 단독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것에 의해, 초 반부터 정권교체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번 총선에서는 자유당 반대 표를 노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론을 논할 수 있는 당으로서 선 거전을 끌고 나가고자 하는 보수당의 의도와 농업을 쟁점의 하나로 내세우고 싶은 농업단체의 의도 등에 의해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환경대책과 식품 안전성 규제의 부담, 수송비와 세금 등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농가경영의 수익성 악화가 문제가되는 한편,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이 농가수익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고, DDA 협상과 NAFTA, 새로운 양자간 협정에 대한 정부의 리더십에 농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2005년 1월 13일 농업부 장관 및 주요 정당의 농업정책 책임자가 참가한

공개토론회가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개최되었고, 이것이 TV에 중계되었다. 자유당에서 현직 장관인 앤디 미첼씨, 보수당의 농업정책담당 다이안 펜레씨 외 2명(신민주당, 퀘백당)이 참가한 이 토론회 발언을 비교하면 자유당과 보 수당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토론회 가운데 DDA 협상과 관련한 부분을 모아 보면, 시장접근에 주목하 는 보수당과 공급관리제도를 내세워 타협점을 찾으려 하는 캐나다 정부의 전 략이 드러난다.

표 2 농업정책에 대한 자유당과 보수당의 견해 !	미╨
-----------------------------	----

	자유당	보수당
공급관리 시스템	○국내시장을 지향하는 농민에게 공급관리제도와 소맥위원회 등 을 통한 보호를 향후에도 유지 ○소맥위원회 운영 등은 위원회 자 주성 중시	○소맥위원회는 생산자 참가를 선 택제로 하고, 판매에 생산자의
농가 소득대책	○현행 CAIS 정책 확충과 지역 실 정에 맞는 유연성 확보	○농가소득대책과 재해대책 분리, 재해대책 지불의 신속화 등 CAI S 정책의 근본적 개혁 ○통상분쟁에 기인하는 농가 손해 를 재해대책으로 보상 ○농산물가격 하락에 따른 5억 달 러의 지원대책 강구
WTO 대책 등	○국외시장을 노리는 농민에게 시 장접근 확대, 국내보조 감축, 수 출보조금 철폐를 통한 평등한 경 쟁기회 확보 ○한편, 자국 내 시장시스템(공급 관리제도, 소맥위원회)을 선택할 권리	시장접근개선의 적극적 추구 ○협상의 발언력 확대를 위한 주장 에 탄력 부여 ○수치목표를 포함한 에탄올 바이

<표 2>에서와 같이 자유당의 미첼 장관은 주요협상 3분야에서의 주장과 '캐나다 농민이 국내시장 시스템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함께 들며 두 가지 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당은 '캐나다의 국제적 발언력 저하는 간과할 수 없다', '우선 시장접근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미국 등 협

상 주요 상대국과의 관계를 구축해 캐나다의 협상력 증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민주당은 국내시장의 관리체제도 중요하고 외국에 대한 접근개선도 중요하지만 '협상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다수파 공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퀘백당은 '정부는 수출품목의 시장접근을 위해 공급관리품목 국경조치에서 타협하려고 하고 있다',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타협 일보 직전까지 갔다'며 정부 전략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3. 종합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캐나다 협상의 발언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널리 공유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수당은 미국과의 연대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신민주당은 뉴질랜드와의 연대에 시사적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한 미첼 장관의 답변은 '최종합의를 위해 민감품목이 관건이다. 이를 위한 연대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흥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지난 홍콩 각료회의에서 CFA(캐나다농민연맹)은 민감품목에 대한 쿼터초과 세율 인하 및 구간 방식에 의한 관세 감축과 민감품목 대우와의 연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6년 4월 말 세부원칙 확립을 위해 시장접근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감품목은 전체 관세품목의 14%가필요'(CFA)하다는 캐나다의 사정 등이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료: http://www.zenchu-ja.org.jp

캐나다, 수출 확대하는 돈육산업(하)

허 덕*

5. 도축· 식육 가공 부문

5.1. 2대 패커에 의한 과점화

캐나다의 도축·식육 가공 부문은 메이플 리프사와 오리멜사 2개 회사가 각 자 도축시장점유율의 4할 정도를 차지하여, 이 2개 회사에 의해 과점상태에 있다.

캐나다 돼지고기 협의회(Canadian Pork Council, 이하 CPC)의 라이스씨는 '최근 몇 년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과점화가 진행되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25년 전에는 생산자가 생산한 돼지의 판매처로 5개사 정도 중에서선택할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2개 회사 이외에는 생체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캐나다의 양돈부문 중도축 및 식육가공분야에서 2개 회사의 도축시장 점유율 확대는 급속히 진행되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육돈의 생산은 곡물에 지원되는 수출보조금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uhduk@krei.re.kr 02-3299-4261

서부곡물수송법(Western Grain Transportation Act, 이하 WGTA)의 폐지보다도 단기간에 급속히 확대되었다. 캐나다 국내 도축능력은 확대되고 있지만, 2개 회사에 의한 마켓·시장점유율의 확대와 더불어 과점화는 급속히 진행되었던 것이다.

메이플 리프사는 사스카츄원주에 단독으로 도축두수 수 천두 규모의 생산공 장을 신설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오리멜사도 마니토바주에 빅 스카이 펌사 등과 공동 출자로 1일 도축두수 수 천두 규모의 돼지고기 생산 공장 신설 계획을 이미 발표하였다. 두 군데 모두 지금까지 비육돈 생산 두수에 적당한 도축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국용 생체 수출이 많은 플레이리 지역에서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캐나다 국내에서 도축·가공의 증가와 2개 회사에 의한 과점화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진전된 비육돈 생산에서 도축· 식육 가공까지의 수직통합 형태의 경영은 캐나다에서도 볼 수 있다. 한 관계자에 의하면, 메이플 리프사는 전체 도축두수 중 90% 정도의 돼지를 계약농가로부터 확보하고 있으며, 동 회사에 의한 수직적인 통합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오리멜사는 퀘벡주를 거점으로 하는 캐나다 최대의 농업협동조합의 식육부문으로, 경영의 의사결정 기관에는 비육돈 생산자도 참가하고 있다. 이 회사 또한 협동조합을 통한 생산자 측에서의 수직적인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식육관계 미국자본은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로 유명하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캐나다에 미국 자본에 의한 패커는 존재하지 않는다. 캐나다 포크 인터네셔널(Canada Pork International, 이하 CPI)의 포 멜로우 씨에 의하면 '캐나다는 메이플 리프사와 오리멜사 2대 패커에 의한 과점화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자본이 캐나다에 진출하기 위한 장점은적은 편이다. 또한, 캐나다는 노동조합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자본이 캐나다에 진출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주저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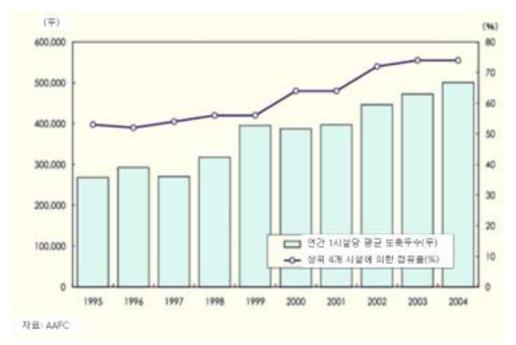


그림 8 도축능력의 추이

5.2. 지육의 등급화

이전에는 지육 등급화를 연방정부 직원이 하고 있었지만, 1996년에 민영화된 이후 현재는 각주의 마케팅 보드의 감시 하에 민간 패커가 실시하고 있다.

등급화는 지육 중량, 배지방 두께 등에 의해 결정된 등급에 근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생산자에 대한 지불은 평균적인 지육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적인 지육의 살코기율을 상회한 비율이 단가에 추가된다. 가령, 기준치를 100으로 하고 수율이 높은 지육으로 등급화가 106 포인트일 경우, 평균지불가격에 6%를 추가한 것이 지불단가가 되며, 역으로 수율이 100 포인트를 밑도는 경우에는 지불단가는, 평균 지불단가를 밑돌게 된다. 한편, 지육등급화 기준은 각주 마케팅 보드마다 결정되며, 등급 기준은 주에 따라 다르다.

6. 주요 패커의 개요

6.1. 메이플 리프사 레스 브리지 공장

이 회사는 돼지고기 외에도 닭고기 생산 가공 판매와 제빵을 생산하는 종합적인 식품회사이다. 돼지고기 생산은 비육돈 생산에서 도축·식육 가공, 식육 가공품을 포함한 수직적 조정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서쪽 알버타주에서 동쪽 노바스코시아주까지 전국에 8개소의 도축장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알버타주 캘거리에서 235 킬로미터 남쪽으로 내려온 노스 브리지 공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일 도축두수
 · 1,300두/일, 1회전(shift)

 · 생체 114kg, 냉도체 73kg(머리, 다리 없는 것)

 종업원수
 · 260명

 가동일수
 · 5일/주

 집하
 · 산하 계약농가로부터 집하

 컷트 규격 등
 · 박피 방식
· 일본식 부분육 컷트

 · 생체에 문신에 의한 식별번호를 통조림단계까지 바코드로
관리(그 동안 정보는 온라인으로 데이터 베이스화)

·수송용 상자 라벨에서 생산자까지 거의 추적 가능

표 8 메이플리프사 레스 브리지 공장의 개요

이 공장의 특징은 비육돈 생산 단계부터 일본을 위한 전용 수출을 염두에 두고 비육돈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과 박피 방식에 한 도축, 일본식 부분육 컷트가 기본이라는 점이다. 박피방식은 북미에서는 드물지만, 이 회사의 8개 공장 중 레스 브리지 공장과 퀘벡주에 소재한 루시 포크 공장 2 개소는 대일수출을 전제로 하여 박피 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일본 이외의 수출국은 대만, 싱가폴, 한국 등이며, 내장의 일부도 일본, 대만, 한국 등에 수출되고 있다. 이 공장에서의 1일당 도축두수는 1,300마리이며, 렌더링이나 메인터넌스를 포함

해 260명을 고용하고 있다.

1일 1회전(shift: 작업원의 대개 8시간 노동의 노동 단위가 1회전, 작업원 교체 합계 16시간 조업하는 경우는 2회전이 됨) 조업이며, 이 회사의 공장장인 우드씨에게 2회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2회전으로 하는 경우는 냉장 보관창고의 확충 등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고, 트리밍 등의 컷트 작업이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

등급화는 도축, 내장 처리 직후인 온도체로 행해지며, 전용 기구에 의해 배지방 계측 등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문신에 의한 생체의 개체 식별 정보는 박피 때문에 지육에 첨부된 바코드에 근거해 관리되고 있으며, 부분육, 컷트, 포장 등 상자포장까지의 정보는 필요에 따라 집적된다. 등급을 포함한 지육에 관한 정보는 모두 온라인으로 데이터 입력되고 있었다.

평균적인 중량은 생체 114 kg, 냉도체로 73 kg 정도이며, 이는 일본과 흡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장에서 도축 가공되는 비육돈에 관해서는 모두 관련 회사와의 계약생산에 의한 것으로 번식단계부터 일본시장을 의식한 것이며, 보리를 중심으로 한 사료도 관련 회사에 의해 배합되고 있다. 부분육 컷트 방법도 복심이 남은 세트 정형 등 일본의 부분육에 따른 사양이다.

이 공장에서는 교차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라인에 많은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오히려 1라인에 소수의 인원이 보다 많은 작업을 담당하도록 작업원을 배치하고 있었다. 이 회사의 공장장 우드씨는 앞으로도 위생면에서 충실을 꾀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등 위생관리는 철저하였다.

6.2. 오리멜사 레드 디어 공장

오리멜사는 퀘벡주를 거점으로 하는 캐나다 최대의 농업협동조합인 코프

퀘벡에 의해 설립되, 돼지와 닭 가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회사는 거점 인 퀘벡주에 3개 소, 알버타주에 1개소 합계 4개소의 도축장을 가지고 있다.

레드 디어 공장은 알버타주 캘거리에서 북쪽으로 145 km 정도인 중부 레드디어에 소재하고 있다.

1일 도축두수	·1만두/일, 1.5회전(현재 확장 중, 최종적으로 2회전으로 1만 8,000두 처리 예정) ·생체 117kg
종업원수	ㆍ1,500명
가동일수	·5일/주
집하	・알버타주(80%), 사스카츄원주(20%)에서 집하 ・계약농가로부터 약 30%, 마케팅보드로부터 70%를 집하
컷트 규격 등	·탕박 방식 ·북미식 부분육 컷트가 기본
품질관리 등	·생체에 문신에 의한 식별번호를 통조림단계까지 관리 ·수송용 상자 라벨에서 생산자까지 거의 추적 가능

표 9 오리멜사 레드 디어 공장의 개요

레드 디어 공장의 도축능력은 1시간당 1,250두로 1일 1만두 규모이며, 캐나다에서도 최대 규모의 도축시설이다. 종업원수는 렌더링부문을 포함해 1,500명이다. 2005년 11월 현재 냉장보관 창고 등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

공장의 1일당 조업체제는 1회전에 추가적으로, 확장한 후의 직원 연수도 겸하여 0.5 쉬프트 정도의 조업을 하고 있다. 확장공사 뒤는 완전한 2회전 체제로 이행할 예정이며, 탕박 방식에 의한 도축능력은 1일 1만 8천두 규모이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두수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일본 수출을 위한 전용 제품은 부분육 컷트 라인에서 3단계로 선별된 다음, 포장 라인에서 최종 체크되어 육질을 중심으로 엄선되고 있다. 일본 수출전 용 외에 미국이나 호주 등에도 수출되고 있다. 생체는 알버타주와 사스카츄 원주에서 집하하고 있으며, 가장 원거리 수송에 8시간 정도, 평균은 2시간 정 도의 거리에서 집하하고 있다. 농가에 대해서는 비용증가 때문에 사료나 품 종의 지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료에 관해서는 당연히 가장 싼 보리의 배합 비율이 높고, 육질에 대해서 일본 시장에서의 평가도 높다. 부분육 컷트는 북 미식이 기본이지만 일본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수율을 높인 제품 등도 만들 어진다.

부분육 컷트 라인에서는 일반생균수를 극력 억제하기 위해 나이프 세정 등 에 의한 물 사용은 철저하게 제한되는 등 위생 측면은 북미에서도 높은 수준 으로 관리되고 있다.

문신에 의한 식별번호는 털을 태운 뒤에도 확인가능하다. 지육은 지육 현수 걸이의 식별 표와 연동하여 지육에서 부분육 가공까지 개체가 관리 된다.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해서는 전술의 메이풀 리프사 레스 브리지 공 장과 같이 상자라벨(가공일시) 표시로 어느 정도 농가까지 특정 가능하다 고 한다.

7. 돼지고기 수출 동향

7.1. 10년간 3배 확대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출(내장, 가공품 포함)은 1990년대의 전반까지 연간 30만톤 대였으며, 생산에 대한 수출 비율은 25% 전후에 지나지 않았다. 그 러나 최근 10년간 수출이 연율 12%의 기세로 증가하고, 2004년에는 1994년 의 3배에 해당하는 92만 8천 톤으로 늘어, 생산량의 48%가 수출되었다. 2004년 생체 수출과 도축을 합한 수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이며, 생 체수출을 합치면 2004년 캐나다 국내에서 생산된 돼지의 약 5분의 3이 수출 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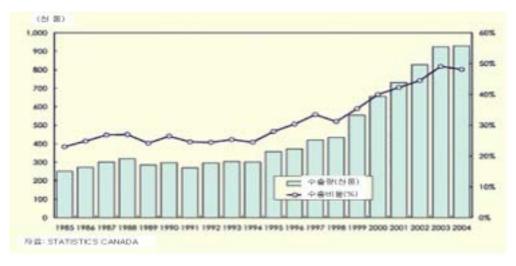


그림 9 돼지고기 수출양의 추이(지육 중량)

2004년도 통계 중 수출국별 비율을 보면, 미국용이 63%로 최대이며, 그 다음으로 일본용이 32%로, 양국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에는 미국용이 76%, 일본용이 1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서서히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일본 수출을 증가시켜 왔다. 미국, 일본 이외로는 호주, 멕시코 등이비교적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CPI의 포 멜로우씨는 '최근, 미국이나 멕시코를 위한 전용은 감소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대만, 중국, 필리핀 등을 잠재적인 시장으로 의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시아시장 확대를 감안하고 있었다. 러시아, 동구는 가공용 원료인트리밍의 수출시장이지만, 이들 국가로 수출하는 데는 다소간의 장애가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위생식물검역 조치에 관한 협정(SPS)에 따른 문제가 있다. 동구에 대해서는 동구의 여러 국가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라 관세 할당 제도가 장애가 된다고 한다. 결국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은 생각하는 것처럼 수출확대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차기 WTO 교섭에 관해서는 동구의 EU 가입에 의해 돼지고기 수출에 관한 대상 조치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최근, 러시아가 캐나다에 돼지고기에 대한 구입 청구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공 원료용 돼지고기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곤란을 겪었다. 경제 성장이 계속되는 러시아, 동구의 돼지고기 수요의 동향은 향후 돼지고기의 국제 시장에도 적지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7.2. 대일 수출 동향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은 과거 15년간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대일 수출량은 20만 4,000톤이며, 대일 수출액은 7억 7,600만 캐나다 달러(7,990억원, 1캐나다 달러=1,030원)이나 된다. 수량은 15년 전의 8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CPI의 포 멜로우씨는 향후 냉동품보다도 냉장의 양을 증가시킬 것으로 본다고 한다. 업계 전체로서도 보다 부가 가치의 높은 제품의 수출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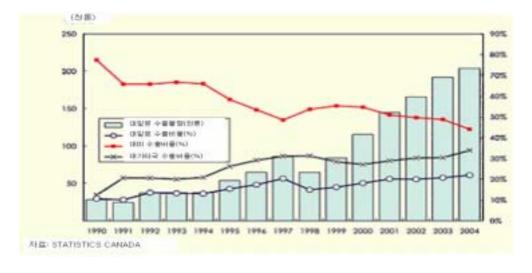


그림 10 일본을 위한 전용 수출의 추이(지육 중량)

현재, 일본으로의 수출은 돼지고기 구이용으로 실을 감은 돼지고기 제품이나, 표면 지방을 깎아 로스 수율을 높이는 등 부가가치를 높인 제품 개발이 진전되고 있다.

캐나다에서 일본까지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1일(해상 11~14일)정

도에 도착한다. 알버타주에서 선적항구인 밴쿠버까지 육로 수송시간은 17시간으로, 알버타 주에서 온다면 1~2일로 본선 적재가 가능해지지만, 퀘벡주에서 오는 경우는 육로에서 5~7일이 필요하다.

8. 국내 소비

캐나다 국내 축산물 중 쇠고기는 최근 20년간 감소 경향에 있으며, 닭고기는 증가 경향에 있다. 돼지고기 소비는 쇠고기나 닭고기에 비해 1인당 지육중량 베이스로 25~30 kg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 캐나다 양돈관련업자들은 돼지고기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최근 몇 년간 미디어나 소매판매 업계 등을 통해 살코기율 비율, 레시피 등을 통한 건강 측면에서의 이점을소비자에 대해 직접 호소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정육과 가공품의 발송비율은 일반적으로는 햄, 소세지 등 가공품 7 에 대해 정육 3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공품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캐나다 농무 농산식품성(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이하 AAFC)의 마그레이브씨에 의하면, 소비자의 구매량으로 보면 정육과 가공품의 비율은 1대 1로 보는 데 이터도 있지만, 가공품은 외식부문에서 소비가 많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한다.

돼지고기 소비의 계절성도 나타나고 있다. 바베큐 수요 등에 의한 로인과 스페어 리브(돼지갈비) 수요가 여름철에 피크를 맞아 가격도 상승하며, 후지 는 봄의 부활절, 크리스마스가 큰 수요기이다.

스페어 리브(백 리브)는 캐나다 국내를 비롯하여 미국으로도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수요가 높은 안심에 대해서는 스페어 리브를 빼낸 뒤 안심이 없는 시트 리브(sheet lib)로 불리는 부분육이 주로 일본에 수출되고, 일본 수출을 위한 전용으로는 필요한 두께가 부족하여, 일본에서의 통상 캐나다식 컷트에 의한 안심의 평가는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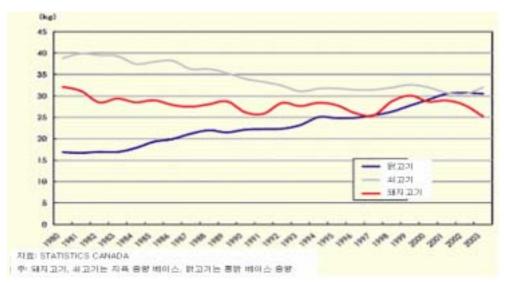


그림 11 캐나다의 1인당 식육 소비의 추이

실제로 캐나다의 소매점(8개 점포)에서 판매가격을 조사한 바, 스페어 리브가 kg 당 평균 11.85 캐나다 달러(12,210원), 안심은 kg 당 평균 11.57 캐나다 달러(11,920원), 필레는 kg 당 평균 15.94 캐나다 달러(16,420원)이었다. 스페어리브에서 뼈의 비율을 30%로 본다면, 가식 부분의 고기 양의 단가로는 거의 필레 정도에 해당하는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셈이다.

소매점에 판매되는 정육은 안심을 두께 2 cm 전후로 컷트 한 '로인 춥'(loin chop)이 정상이며, 후지 정육은 8개 점포에서 불과 4개 아이템(item)으로 적은 편으로, 대부분이 햄 등의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일본에서 캐나다산의 평가

일본의 돼지고기 유통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대한 일 반적인 평가는 미국산과 비교해 육질은 육결과 마무리가 좋고, 지방은 흰색 상급, 로스심은 약간 적은 정도로 결점이 적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산은 로스심이 큰 것이 섞이거나(트레이 중 볼품이 없음), 마무리가 없고 드립이약간 많은 등의 결점이 있다고 한다(주: 미국산이라고 해도 개별로 보면 수직통합 등에 의해 비육돈의 생산 공정에서 일본을 위한 전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예도 있으며, 이 평가는 어디까지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미국산돼지고기와의 비교임).

표 10 일본 시장에서의 캐나다출산 돼지고기에 대한 평가

장 점	단 점
 1. 육질 등 ◇ 보리의 사료배합 비율이 높아, 고기의 마무리가 좋고 지방이 백색 상급임. ◇ 미국산보다 크기가 작아 양판의 트레이 상 볼품이 있으며, 가공도 쉬움. ◇ 후지의 PSE(물퇘지)가 적음. 	1. 육질 등 ◇ 맛은 단맛이 있는 미국산에 비해 담백 (옥수수를 주로 사용하는 미국산은 단 맛이 강함)
2. 규격 등◇ 수율이 좋음(정형의 제일성이 높음)◇ 이물질 혼입이 거의 없음.	2. 규격 등 ◇ 특히 없음.
 3. 기타 ◇ 수출지향으로 적극적으로 고객의 요 망에 대응함. ◇ 일본인의 캐나다에 대한 이미지가 좋음. 	3. 기타

한편, 거래 상대국으로 본 경우, 수출이 생산량의 10%정도에 그쳐, 자국 소비에 기본을 두는 미국과 중요한 수출산업으로서 위치를 부여하는 캐나다에서는 컷트 규격이나 육질 등 일본시장의 요망에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점은 캐나다측도 업계 전체로서 전략적으로 위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단지자국 소비용을 수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수출시장의 요망에 따른 커스텀메이드(custom made) 돼지고기 생산에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는 국내 마켓의 규모가 한정되어 갑작스런 대량 발주 등 수량적인 융통에 이점이 없는 것이 결점 중 한가지 이다 미국은 수출을 크게 상회하 는 국내소비를 생산의 베이스로 하고 있어 수량에 관해서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캐나다산 냉동 돼지고기는 할인점뿐만 아니라, 외식, 중식 등의 외식부문에 서도 수요가 신장되고 있으며, 캐나다산을 명시해 팔기 시작하고 있는 외식 체인도 볼 수 있다.

캐나다는 수입시장의 요망을 수용함에 따라 일본 수요자와의 정시·정량 거래를 착실하게 증가 시키고 있다.

10. 종합

일본 수요자의 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대한 평가 중에서 특필하여야 할 점은 육질, 규격 면에서 결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에서도 유명한 일본 소비자의 사소하고도 엄격한 요구에 일본 측도 포함한 업계 관계자가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식육제품의 유통을 위해서는 반드시와 도축가공 처리가 필요하며,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분야를 초월한 관계자의 의사소통을 빼놓을 수 없다. 캐나다에서는 2003년부터 행정의 보조를 받아 비육돈생산자, 도축·가공 관계자, 유통 관계자 등이 한 곳에 모인 전국 돼지고기 벨류·체인 원탁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식품안전, 품질 향상 등에 관계하여 업계 관계자 전체가 모여 '캐나다 브랜드'의 향상을 위한 전략이 검토 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로 수출경합국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앞으로도 생산하여야 한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번 국내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취 조사에서 인상에 남은 것은 '국산을 뛰어 넘는 어떠한 좋은 돼지고기를 해외에서 만들어 일본에 가져온

다 하더라도, 수입품인 한, 지육 베이스로 50엔에서 100엔의 일본산과의 격차가 있다(수입품이 싸다)'라고 하는 코멘트였다. 현재 상태로서는 눈에 보이고 있지 않은 가치이며, 단지 '국산'이라는 브랜드 지지라고도 할 수 있다.

캐나다의 저비용 돼지고기 생산, 높은 품질 규격 수준, 이와 더불어 업계추전 등 적극적인 수출에 대한 대처에 의해서, 앞으로도 대일 수출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본은 생산 현장뿐만 아니라 도축 식육가공 부문의 효율성이나 위생 측면 등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격차를 향후는 근거가 있는 눈에 보이는 형태를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국산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느낌이었다.

자료: http://alic.lin.go.jp에서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2006년 2월 농업협상 동향 DDA 홍콩 각료선언에 대한 각국 평가 미국, EU의 시장접근분야 제안에 대한 평가

DDA 2006년 2월 농업협상 동향

임 소 영*

WTO 회원국들은 지난 2월 13일부터 17일 사이에 회의를 가지고 각 분야별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여전히 수출입국간, 선진·개도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델리티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4월 말까지 불과 한 달여를 남겨 놓은 지금까지도 각 그룹들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정된 일정 내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하다.

1. 쟁점별 논의 동향

WTO 농업위 특별회의 팰코너 의장은 농업주간 전 각 국에 각 분야별 쟁점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농업 주간 중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 세 분야에 대한 Room F회의(주요국 회의)를 가지고 의장 질문서를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1.1. 시장접근 분야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민감품목의 대우와 특별수입구 제조치(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의 대상 범위, 구제조치, 발동기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lsyjr@krei.re.kr 02-3299-4250

미국은 Room F 회의에서 민감품목의 대우에 관한 제안서를 배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모든 민감품목에 대해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최소 TRQ 증량폭을 설정하고, 일반 관세 감축 폭으로 부터의 일탈 정도에 따라 TRQ 증량폭이 커지도록 하였으며 TRQ 증량 한도를 설정하는 등 기존의 제안을 보다 구체화, 공식화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EU는 TRQ 증량 기준으로서 국내 소비량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G-10은 미국의 제안에 따를 경우 관세가 높을수록 TRQ를 많이 증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EU, G-10 등의 수입국들의 반발로 인해 미국은 민감 품목의 TRQ 증량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TRQ 증량 기준으로서 국내 소비량을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제안서를 제시하였는데 이 또한 수입국들의 반발로 논의의 기초가 되지 못하였다.

한편 SSM에 대한 논의에서는 특별품목(SP), 특별수입구제조치(SSM)의 주 창그룹인 G-33이 지난 10월에 제시한 제안서가 논의의 바탕이 되었는데, 미국은 SSM에 대해, 품목범위, 발동기준, 구체조치, 기간(SSM 발동기간 및 SSM 존속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관세 감축폭, 특별품목과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호주, 캐나다 등이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EU는 G-33의 제안서를 기초로 향후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SSM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1.2. 국내보조 분야

국내보조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의제들은 국내보조 감축 구간 경계, 블루박스의 추가 규제 설정 여부, 품목 특정 AMS의 상한 설정 기준, 그린박 스 규정의 재검토 여부 등이었다.

팰코너 의장은 질문서에서 AMS 및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 구간 경계를 홍콩 각료선언문에 나와 나온 대로 정해도 될지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캐나다,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홍콩각료선언문에서 보조금 감축을 위한 구간별 국가 배치가 결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국내보조 분야의 핵심 쟁점인 블루박스에 대해서는 G-20과 EU가 블루박스의 추가 규제 마련을 주장하며 미국을 압박하였으나 미국은 신규 블루박스와 관련하여 국내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며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기때문에 기존 제안(상한 5%→2.5% 축소)에서 추가적으로 양보(concession)할 수 없다고 대응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품목 간 보조 전이를 막기 위해서 품목 특정 AMS의 상한 설정 기준에 대해 '99-'01 3개년 평균치를 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G-20, EU, G-10은 미국의 주장에 반대하며 UR 이행기간의 평균 또는 올림픽 평균을 상한 설정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기본 골격 합의시 품목 특정 AMS는 과거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린박스에 대해서는 G-20과 캐나다의 제안을 토대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린박스에 개도국 우대조항을 부여하는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그 밖의 규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수출경쟁 분야

수출경쟁 분야에서는 식량원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규율 대상이 아닌 긴급구호 성격의 식량원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와 일반 식량원조의 규제 방식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반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 safe box의 요건인 긴급상황 (emergency situation)을 어떻게 결정할 지에 대해서 그룹간 의견이 엇갈렸는데 미국은 WTO 차원의 정의를 마련하자는 의견인 반면 다른 국가들은 다른 국제기구의 요청이나 정의에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일반 식량원조에 대해서는 식량원조의 현금화(monetization) 및 재수출에 대한 규율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2. 향후 협상일정

이처럼 그룹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종료하자 남은 기간 동안의 타협 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 등 주요 6개국(G-6)들은 각 그룹이 제시한 농업과 비농업 분야의 제안서들을 바탕으로 실질적 관세감축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업주간 중에도 여러 차례 실무급 회의를 가졌다.

주요국들의 분석 결과는 2월 말 경에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위급 회의와 각료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WTO가 다자협상체제이기는 하지만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들 국가들이 3월 회의 이전에 시장접근분야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조율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따라 3월 협상의 진전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3월 농업주간은 3월 20일부터 2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3월 회의 이전에 시장접근 분야에 있어 주요국들의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국내보조 분야와 수출경쟁 분야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4월 말에는 모델리티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DDA 홍콩 각료선언에 대한 각국 평가

김 태 곤*

2005년 12월 13~18일에 제6차 WTO 각료회의가 홍콩에서 개최되어 2004년 여름에 합의된 '기본골격'과 완전한 '세부원칙'과의 중간적 합의와 세부원칙 '합립시한' 등을 명기한 각료선언이 채택됐다. 협상의 종착지점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것으로 이번 DDA 협상은 최종국면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나아 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1년에 시작한 이번 DDA 협상을 뒤돌아보면, 농업분야는 서비스 분야와함께 그 전년인 2000년부터 개시되었으나 협상은 난항을 거듭, 당초 2003년 3월이라는 세부원칙 합의시한이 연기되었다. 또한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는 싱가포르 이슈라고 불리는 새로운 협상과제를 둘러싼 개도국과 선진국의의견대립으로 결렬되었다.

이렇게 국제무역협상의 조류가 WTO를 축으로 한 다자간 협상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또는 지역간 협상으로 급속히 이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2004년 여름 기본골격 합의를 통해 작년 홍콩 각료회의로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고할 수 있다. 홍콩 각료선언의 개요와 이에 대한 각국 정부와 농업단체의 평가를 소개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aegon@krei.re.kr 02-3299-4241

1. 홍콩 각료회의까지의 농업협상 경과

2005년 가을 WTO 사무총장과 농업협상의장에 각각 라미씨와 팔코너씨가 임명되었다. 이후, 특히 시장접근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 협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결국 협상은 기대했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각료회의가 임박한 작년 11월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마련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 대신, 11월 초에 농업협상의장이 협상현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말에 라미 사무총장이 농업협상의장 보고서를 부속서 A로 첨부한 각료 선언안을 제시했다. 이들 문서는 협상 현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쳤지만, 세계의 관심은 각료회의를통해 어떤 기술이 각료선언에 포함될 지에 모아졌다.

2. 홍콩 각료선언 개요 및 각국 반응

각료회의 마지막날 채택된 각료선언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해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의 2013년까지 철폐, 국내보조에 관한 AMS(감축대상보조) 및 무 역왜곡적 국내보조의 3개 구간의 구간 공식에 의한 감축, 그리고 관세 감축에 관한 4개 구간방식 채택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각료회의에 대한 각국 정부와 농업단체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2.1. 미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홍콩 각료회의 결과에 대해 "각료선언은 향후 협상을 위한 확고한 토대가 되는 것이나, 아직 많은 작업이 남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농업의 시장접근분야에 대해 "민감품목의 대우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 등 다른 과제의 협의에 시간을 빼앗겨 충분한 진전을 보지못했다"며 협상의 진전에 불만을 드러냈다.

표 1 홍콩각료선언 농업분야 개요

분야	주요 내용
국내보조	○총 AMS 및 무역왜곡적 국내보조 전체의 감축에 대해 3개 구간으로 나눠서 높은 구간일수록 큰 폭으로 감축 ○보조 수준이 가장 높은 회원국이 최상위 구간, 2,3번째로 높은 회원국이 차상위 구간, 다른 회원국이 최하위층
수출경쟁	○2013년까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의 병행적 철폐 및 동등한 효과가 있는 모든 수출조치에 대한 규율 확보 ○실질적인 부분이 실시기간 초반에 실현되도록 향후 세부원칙에서 구체화되는 형태로 점진적이고 병행적으로 달성 ○수출신용, 수출국가무역, 식량원조에 관한 규율은 2006년 4월 30일까지 세부원칙 일부로서 완성. 세부원칙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 철폐기한이 점진성 및 병행주의의 내용과함께 확정
시장접근	○관세감축은 개도국에 적용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구간 범위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4개 구간을 채택 ○관련된 모든 요소를 감안하여 중요품목의 대우에 합의할 필요성인식 ○개도국은 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개발의 요건에 따라 정해진 지표를 이용해 적정 수의 관세품목을 SP(특별품목)로 스스로 지정할수 있는 신축성과 수입량, 발동 가격(Trigger Price)에 따른 SSM(특별긴급수업제한조치)을 발동할 권리 확보
기 타	○세부원칙을 늦어도 2006년 4월 30일까지 확정하고, 이에 따라 늦어도 2006년 7월 31일까지 포괄적 양허표안을 제출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 쌍방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향상을 통해 이번 라운드의 목표인 개발을 진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시장접근 분야의 야심이 같은 수준으로 높아질 것을 확보

또한 각료선언안 단계에서는 기술돼 있던 '일반품목 관세감축률과의 괴리에 따른 관세할당 확대'라는 항목이 최종 문서에서는 삭제된 데 대해 "하나의 과제를 선언에 포함시키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 괴리에 따른 관세할당 확대는 작년 기본골격 합의에 들어가 있고, 각료선언은 기본골격 합의를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반품목 관세감축과의 괴리에 따라 관세할당 확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시장접근협상에 대한 의욕을 피력했다.

한편 수출경쟁분야에 관해서는 수출보조금의 구체적인 철폐시한이 정해진 점과 식량원조에 관한 규율을 높이 평가한 반면, "식량원조와 수출신용은 무 역왜곡적인 것이 없어질 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해 향후 미국의 주장이 주목된다.

미국의 대부분의 농업단체는 시장접근분야에서 토론이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미국 최대의 농민단체인 Farm Bureau는 "최소 한의 진전밖에 보지 못한 데 실망", "시장개방 없이 진정한 무역자유화는 있 을 수 없고, 앞으로도 시장접근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한다"고 표명하였고, NCGA(전국옥수수생산자협회)는 "새 농업법 토론에 매우 중요한 시장접근분 야가 진전을 보지 못해 실망했다"고 논평했다.

또한 ASA(전국대두협회)는 "개도국 시장에 대한 실질적 접근 확대 없이 우리는 어떠한 최종합의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NCBA(전국우육생산자·우육협회), NPPC(전국돈육생산자협의회) 등축산단체는 각료회의 폐막 후 공식적으로는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회담 기간 중 간부의 발언을 통해 "보조금을 일체 받지 않는 우리들의 미래의가능성은 수출 확대에 달려 있다", "향후 시장접근의 실질적 확대를 통해 경쟁기회 평준화를 추구한다"고 표명했다.

단, 한편으로 홍콩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NMPF(전국생유생산자협회)는 "DDA 협상의 의의를 살려 몇 가지 논점에서 진전을 가져와협상의 추진력을 유지했다"는 인식을 표명했고, NAWG(전국소맥생산자협회)는 "수출신용과 식량원조, STE(국영무역기관)에 대해 더욱 논의가 심화됐지만, 세계 수출보조금의 95%를 차지하는 EU가 철폐시한에 합의한 것은 일정의 성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상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모든 단체들이 포트만 무역대표, 조한즈 농업부 장관 등 미국 협상팀의 활동에 격려를 보내 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이렇다 할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농업개혁에 소극적인 EU 및 다른 국가들이 협상을 늦춰실망", "EU는 (수출보조금 철폐시한문제와 개발패키지를 전면에 내세워) 스스로 회원국의 설득에 실패한 시장접근분야에서 눈을 돌리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협상 진전을 저해한 책임을 EU측에 돌리고 있다.

2.2. 호주

케언즈 그룹의 대표격이며 미국 이상으로 수출지향적인 호주의 반응을 살펴보자. 마크 베일 무역부 장관은 "농산물 시장접근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할시한이 설정됨으로써 협상은 바른 방향으로 중요한 한 발을 내디뎠다", "모든수출보조를 2013년까지 철폐하는 데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호주가 수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광공업제품과 서비스분야 무역자유화에 진전이 있었던 점은 환영할 만 하다"고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호주의 수출업체에 대한 새로운 상업기회 확보를 위해 높은 수준의 야심을 유지하기 위해 싸운다", "EU 뿐 아니라 모든 그룹에서 높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특히 시장접근분야에서 수입국 측의 양보를 더 끌어낼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한편, 호주 농업에 유일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중요한 현안인 국영무역기업에 대해서는 "AWB(호주소맥협회)를 포함한 호주 국영무역기업에 대해 협상 중에 양보를 강요당하지 않고, 이들이 무역왜곡적이지 않다는 우리의 의견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EU가 요구하는 병행주의의구체화가 향후 협상에 맡겨지게 된 것을 내심 다행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지도 모른다.

호주농민연맹(NFF)의 피터 리스 회장도 호주 정부와 마찬가지로 각료선언에 구체적인 수출보조금 철폐시한이 포함된 점과 농업세부원칙 합의 시한이설정된 것을 환영했다. 단, 베일 장관을 비롯한 협상관들의 최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U와 G10은 시장접근 개선이라는 근본적 과제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시장접근의 진전에 대해 직접 거명을 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모든 WTO 회원국이 설정된 시한에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EU와 다른 보호주의 국가들이 각각의 농업개혁에 필요한 야심과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 강력히 요청된다고 언급했다.

2.3. EU

이번 각료선언 작성에서 수출보조금 철폐시한을 둘러싼 격렬한 공방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2013년이라는 철폐 시한이 포함되게 되었다. 피터 만델슨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수출보조금 철폐에 합의함으로써 EU는 농업협상과 DDA의 개발목표를 진정한 의미에서 진전시켰다고 말하고, 효과적인 개혁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 철폐를 의미하며, 다른 회원국에게도 동등한 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이 철폐될 때까지 다른 회원국들에게 우리와 함께 서서히 감축해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수출보조금 철폐에 대해 어디까지나 '병행주의'가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보엘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수출보조금 철폐시한에 대해 "(당초계획인 2010년까지가 아니라) CAP 개혁이 완전히 실행되는 2013년으로 조정된 점만 좋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병행주의에 대해 기술된 것을 높이평가하고, 특히 "다음에는 미국이 악명 높은 가격보전 직접지불(CCP)과 같은제도에 대해 중요한 농업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최대의 농민단체인 COPA/COGECA는 이번 합의는 불완전하고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수출보조금 철폐에 대해 다른 회원국의 수출지원조치에 대한 완전히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조건임을 경고한다고 하고, 혹시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대해 동등한 규율이 의무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개도국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라며 수출보조금 철폐는 어디까지나 병행주의가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특별 세이프가드 조항을 포함해 2005년 10월 28일에 EU가 내놓은 제안대로시장접근에 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야 한다며, EU의 제안이 시장접근에

관한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했다.

2.4. 개도국

주요 개도국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인도의 나토 상공부 장관은 "이번 각료선언으로 개발라운드 실현을 위한 골격과 적절한 방향이 제시되었다", "LDC(최빈 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접근은 (97%라도) 커다란 진전"이며, "무엇보다 과거 각료회의와는 달리 이번 회의를 통해 WTO 회원국의 사고가 질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 성과"라고 말하고, 홍콩 각료회의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G20은 관심사가 다른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홍콩 각료 회의에서는 각국의 의견차를 메우고 자국 사정만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선 진국의 인위적 경쟁력(즉, 수출보조금과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은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말하고, G20이 단결해 향후 선진국에게 보호 감축을 더욱 요구해갈 뜻을 표명했다.

브라질의 아모린 외무부 장관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이번 각료회의는 타당한 타협안이며, LDC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면화 등에서 결과를 얻은 점은 커다란 성과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개도국 그룹에게는 홍콩 각료회의가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는 알 수 있다.

G33의 리더격인 인도네시아의 말리 상업부 장관은 "SP(특별품목), SSM(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특히 SP를 스스로 선택할수 있게 한 점이 좋았던 점"이라고 평가했으며, 안톤 농업부 장관도 "매우 중요한 일보", "인도네시아에 유익"하다고 평가했다.

단, 이번 성공은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몇 개월 후에 다시 찾아올 DDA 협상의 고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런 점에 대해 인도네시아 농민연맹(HKTI)도 "향후 농업보조금 감축이 합의되고, 개도

국이 요구한 적절한 수의 품목에 대해 완전한 자유화에서는 제외될 것이 받아들여졌다"며 기존의 그들의 주장이 선언에 포함된 점을 환영했다.

2.5. 캐나다

캐나다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케언즈 그룹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다른 회원 국과는 약간 입장이 다르다. 소맥, 식육 등의 거대 수출국인 동시에 몇몇 품 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공급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은 캐나다에게 수 입 민감품목이다.

캐나다는 홍콩 각료회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미첼 농업부 장관은 수출보조금 철폐시기가 명기된 점은 환영할 만하다고 하면서도, STE(국영무역기업)의 규율에 대해서는 STE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STE의 행위에 대한 규율이 된 점은 바람직하다며, 호주와 같이 자국의 국영무역기업(CWB, 캐나다소맥협회)의 존속 가능성을 남겨둔 데 안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접근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민감품목의 대우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수출경쟁분야와 마찬가지의 복잡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최대의 농민단체이자 산하에 수출품목단체와 공급관리품목단체를 둔 캐나다농민연맹은 "시장접근분야의 문구는 캐나다가 적극적으로 관세감축에 대해 협상하는 것과 공급관리를 하기 위한 민감품목에 대하여 신축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수출경쟁분야의 문구는 캐나다소맥협회와 같은 국영무역기업을 유지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계속하는데 충분한 신축성이 있다"며 정부와 똑같은 평가를 했다.

수출경쟁분야에서 EU의 수출보조금은 철폐시키고 싶지만 병행주의를 근거로 자국의 국영무역기업에 메스가 가해지는 것은 피하고 싶고, 수출품목을 위해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싶지만 국내 공급관리품목에 메스가 가해지는 것

은 싫다는 복잡한 사정 때문에 캐나다가 "수출업체와 국내 민감품목 생산자 쌍방에게 유익한 형태로 이번 DDA 협상을 마치고, 모든 캐나다 농민에게 좋은 협정으로 일보 진전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본심인 것으로 보인다.

3. 종합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처음부터 주목을 모았던 농업과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협상과 함께,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각각 LDC 개발지원을 제안하는 등 이번 DDA 본래의 취지인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도국의 발언력이 날로 강해지는 가운데, 각료선언 24번째 문단에 기술된 "농업과 NAMA 쌍방에 잇어서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향상을 통해 DDA의 개발이라는 목표를 진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협상담당관에게 농업과 NAMA의 시장접근분야의 야심적인 수준이 같은 정도로 높아질 것을 확보하도록 지시한다. 이 야심은 S&D(개도국을 위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의 원칙과 부합되며, 균형 있고 비례적인 방법으로 달성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국가도 명확한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문단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선진국과 개도국, 혹은 쌍방의 협상에서 줄다리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각료선언에 기술되어 있듯이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농업 세부원칙을 늦어도 금년 4월말까지 마련하고, 이 세부원칙에 따른 포괄적인 양허표안 (CS안)을 7월 말까지 제출한다"는 분명한 시간적 틀 안에서 드디어 전체 분야의 DDA 협상이 대단원을 맞이하고 있다

자료: www.zenchu-ja.or.jp

미국, EU의 시장접근분야 제안에 대한 평가

김 상 현*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랍 포트만(Rob Portman) 대표는 EU의 시장접 근분야의 제안이 실질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개선하는데 미흡하며, 당초 도하라운드의 협상목표 수준을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USTR은 "EU의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 제안의 의미"에 관한 개황보고서를 통해서 EU의 시장접근 분야의 제안이 가지는 효과를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EU 제안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의 평가와 이에 대한 EU의 반응을 살펴본다.

1. EU 시장접근분야 제안에 미국의 평가

1.1. 관세감축방식

EU의 관세감축방식은 EU의 관세를 평균 39% 감축하게 되며, 이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평균 감축률인 36%보다 사실상 높은 목표수준이라고 할 수없다. 민감품목 142개, 평균 감축률 39%인 EU의 시장접근 제안은 미국 제안(민감품목 18개, 평균 감축률 66%)이나 G-20(민감품목 18개, 선진국에 대한평균 감축률 54%)의 제안에 비해 목표수준이 매우 미흡하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sh3615@krei.re.kr 02-3299-4369

또한 EU는 주요 수출대상 품목이 분포되어 있는 30% 이하인 관세라인 (tariff line)의 80%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허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률은 20%에 불과하다. 이 관세감축률을 가정할 때, 22%인 스낵류(snack foods)는 17.6%로, 12.5%인 스위트콘(sweet corn)은 10%로, 25.9%인 네이블오렌지(navel orange)는 20.7%로 소폭 감축된다.

EU 농산물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관세감축이 요구된다. 주요 보호 품목에 대한 EU의 기본관세는 관세화 전환시 과다 산출된 양허관세, 최근 부풀려진 종가세상당치(Ad Valorem Equivalent, AVE), EU의 시장지지 가격을 낮춘 국내정책의 최근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과장되어 있다.

EU의 관세감축 수준은 회원국들의 양허세율에 대한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다. <표 1>과 같이 일부 회원국 일부 품목에 대한 현행 실행세율과 EU의 관세감축률을 적용한 양허세율간의 차이가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표 1 EU 제안의 관세감축 효과(사례)

국별	품목	양허세율(%)	실행세율(%)	EU 제안 적용 후 양허세율(%)
	돼지고기	40.0	30.0	28.0
필리핀	옥수수	50.0	35.0	35.0
	오렌지	45.0	10.0	31.5
인 도	밀	100.0	50.0	65.0
	면화	100.0	10.0	65.0
H 기기	밀	55.0	10.0	38.5
브라질	사과	30.0	10.0	27.0
	유장/무지방 분유	30.0	30.0	24.0
일 본	가공치즈	40.0	40.0	22.0
	사과	17.0	17.0	13.6

EU의 관세감축은 자신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하는데 조차 미약한 수준이다. EU가 세계 수출시장의 75%를 차지하는 올리브유의 경우, EU 제안에 따라 인도의 45% 양허세율은 31%로, 브라질의 35% 양허세율은 24.5%로, 한국의 27% 양허세율은 24.3%로 감축된다. EU가 세계 최대수출국인 포도주의 경우, 13%인 일본의 발포성포도주(sparkling wine) 양허세율은 10.5%로 약 3% 미만 감축되며, 50%인 기타 포도주의 양허세율은 27.5%로 감축된다. EU가 세계 수출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치즈의 경우, EU 제안에 따라 30%인 일본의 블록치즈(block cheese) 양허세율은 24%로, 246%인 캐나다의 블록치즈 양허세율은 98%로 감축되며, 85%인 미국의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 양허세율은 42.5%로 감축된다.

1.2. 민감품목

위에서 언급한 품목들의 관세감축 사례는 주로 일반품목에 대한 EU의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품목들이 이런 일반품목의 관세감축공식을 벗어나 민감품목으로 취급됨으로써 이들 품목의 시장개방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DDA 농업협상의 야심적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시장접근물량(TRQ)을 설정하여 보호한 특정 부문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허용할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민감품목에 대한 EU의 제안은 수입 농산물과의 공정경쟁을 차단하는 폐쇄 경제에서나 효과적이다. 이는 EU의 민감품목에 대한 TRQ 설정방식이 미흡하 고,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제안에 따르면, TRQ 증량수준은 현행 관세 크기와 현행시장접근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현재 높은 관세와 낮은 TRQ를 유지하여 시장을 보호하는 회원국들은 보상을 받게 된다. 즉, 현행 수입수준이 낮기 때문에 민감품목에 대한 TRQ 증량폭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의 민감품목에 대한 제안을 따를 경우,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및 TRQ 증량 사례는 <표 2>와 같다. AVE가 53%인 EU의 닭 사등분 통다리(chicken leg quarter)가 민감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관세는 15% 감축된 45%가 된다. 이때 TRQ 증량은 단지 10,000톤에 머물게 된다. 이 물량은 EU의 일인당 0.02kg으로 일년에 한 사람이 한 마리조차 소비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AVE가 90%인 EU의 버터 관세는 17% 감축된 75%에 머물고 TRQ 물량은 15,000톤 증량되며, 이 물량은 연간 EU 소비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AVE가 296%인 캐나다 가금육은 20% 감축된 237%, 7,000톤의 TRQ 물량이 증량될 것이다. 이 물량은 캐나다 소비량의 0.7%에 불과하다. AVE가 700% 이상인 일본의 쌀은 20% 감축된 550% 이상 달하며, 26,000톤의 TRQ 물량이 증량될 것이다. 이 물량은 단지 일본의 연간 소비량의 0.3%, 현행 TRQ의 4% 증량에 불과하다. AVE가 176%인 한국의 무지방 분유의 관세는 20% 감축된 141%에 머물며, TRQ 물량은 500톤 증량될 것이다. 이 물량은 한국의 국내소비량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표 2 EU 제안을 적용할 경우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및 TRQ 증량(사례)

국별	민감품목	종가세상당	TDO スポ(E)	
4 달	[신성품축	감축 전	감축 후	TRQ 증량(톤)
EU	닭고기	53	45	10,000
EU	EU 버터		75	15,000
일본	쌀	700이상	550이상	26,000
캐나다	가금육	296	237	7,000
한국	무지방 분유	176	141	500

EU는 민감품목의 개수를 관세라인의 8%까지 요구함으로써, 무역비중이 매우 높은 주요 품목이 큰 폭의 관세감축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관세라인 가운데 단지 2%만이라도 새로운 시장접근기회를 벗어나게 된다면, DDA 협상을 통한 발생될 잠재 이득 가운데 75%를 상실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많은 회원국들은 민감품목의 TRQ 증량은 소비량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관세화(tariffication)를 통해 고율관세가 부과된 민감한 품목을 대상으로 연간 국내소비량의 5%까지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도록한 우루과이라운드(UR)의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처럼 실질적 시장접근을 위한 기준으로써 소비량을 이용하는 것은 과거 WTO 협상경험을 반영할때 현실적이며, 공정한 방법이다.

한편 EU는 일부 특정품목의 소비량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EU가 민감품목으로 선정할 대다수 품목들은 이미 TRQ 대상품목이며, 이들 품목에 대한 소비량 데이터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립적산출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TRQ 증량을 소비량의 10% 이하로 확대하더라도 보호받는 대다수 품목들의 관세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다.

1.3. 특별세이프가드 규정

EU는 UR 이후 존속된 특별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 SSG)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SG는 UR 당시 관세라인의 품목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이런 SSG는 당시 새롭게 설정된 관세가 너무 낮아 저가의 수입품목이 급증할 우려에 대비하여 고안된 보호장치였다.

지난 10년간의 UR 이행기간에 관세상당치가 너무 높아 쿼터밖(out-of-quota) 수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SSG의 발동회수도 극히 드물 만큼 SSG의 필요성이 사라졌다. EU의 주장처럼 SSG를 존속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무역증대를 저해함으로써 장기 무역장벽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1.4. 기타 협상부문의 영향

농산물 무역개혁은 DDA 농업협상의 핵심골자이다. 이것은 농산물 관세가 매우 높고, 농업부문의 수출 및 국내보조가 무역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 노동인구의 비중이 50% 이상인 개도국들이 특히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원국들은 농산물 수출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농산물 교역 비중이 10% 미만일지라도, DDA의 기타 협상부문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관세장벽과 보조금 정책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많은 개도국들은 농업협상의 타결 없이는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공산품 관세를 감축하거나 서비스의 무역장벽을 제거할 의향이 없다. 또한 시장접근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감축대상보조 (AMS)를 60% 감축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은 EU의 양보 없이 지속될 수 없다.

EU가 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실질적 개선을 달성하는데 동조하지 않기때문에, 무역왜곡보조 감축, NAMA 확대, 서비스 장벽 제거, 개발지원, 무역활성화 등을 포함한 전체 DDA 협상의 부문별 목표수준이 하향조정 될 위기에 있다. 한편 EU의 농업부문 제안은 과감한 NAMA 부문의 제안과 매우 상충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EU의 입장은 협상을 타결하는데 장애가되고 있으며, 협상 전반의 개혁의 목표수준을 낮추도록 위협하고 있다. 이에따라 세계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며,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가져올 DDA 협상의무한한 잠재력이 손상될 위험에 처해있다.

2. 미국 평가에 대한 EU의 반응

EU는 최근 USTR이 발표한 "EU의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 제안의 의미"라는 개황보고서가 EU의 시장접근에 대한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반박 보고서를 배포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USTR이 EU의 관세감축공식을 따를 경우 평균 감축률은 39%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 평균 감축률이 36%인 UR의 목표 수준보다 미흡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EU가 제시한 감축률은 UR에서 합의된

평균 감축률보다 훨씬 높다. UR 공식이 회원국에게 평균 개념을 통해서 고율 관세를 보호하도록 허용한 반면, EU의 제안은 고율 관세를 가장 많이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EU의 고율관세의 감축률은 60%에 달한다. 전체 관세수준은 현재 미국의 평균 농산물 관세 수준과 비슷한 12%로 감축된다. USTR이 수긍하지 않을지라도, EU는 민감품목의 관세를 대폭 감축하는 동시에 TRQ를 증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둘째, USTR이 관세가 30% 이하의 품목 중에서 80% 정도가 EU의 주요 수출품목이며, 이들 품목의 관세 감축은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EU는 최하위 구간의 관세 감축 시 신축성을 부여한 반면, 이 구간의 평균 감축률이 35%가 되도록 확실한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USTR이 EU의 기준 관세가 관세화 전환 시 과장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최대 관세를 부과할지라도 EU로의 농산물 수입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즉, EU의 관세가 물타기(water)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이며, EU는 양허된 수준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실질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일부 가금육의 경우 EU 시장으로의 추가적인 시장접근물량이 일인당 0.02kg으로 일년에 한 사람이 한 마리조차 소비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주장 또한 오해다. USTR은 단지 닭 사등분 통다리 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만을 산출하고 있다. 닭고기에는 80개 이상의 관세라인이 존재한다. EU는 보조금 감축뿐만 아니라 관세 감축에 의해서 가금육 수출이 약 25% 감소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이 관세라인에 포함된 품목의 여타 수출국에게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대 경쟁국인 브라질을 포함해서 여타 가금육 수출 국들이 충분한 관세를 물고 EU 시장에 이미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감축률이 적용될지라도, 실질적인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다섯째, USTR은 EU의 제안이 기타 회원국에게 실질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며, EU가 제시한 관세 감축률이 양허세율과 실행세율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USTR이 인용한 사례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 수출업자들에게 개도국 시장의 실질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EU의 제안이 선진국보다 덜 감축한다는 개도국 우대원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개도국의 관세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서는 EU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 EU가 제안한 개도국의 관세 감축률은 G-20의 제안과 동일하다.

여섯째, EU의 제안과 같은 방식으로 관세라인의 2%만이라도 새로운 시장접 근 기회를 벗어날 경우, DDA 협상의 전체 이득 중에서 75%를 상실하게 된다는 세계은행의 분석은 USTR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 사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관세라인의 2% 이상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잠재 이득을 75%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감축률이 15%, TRQ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한정할 경우이다. EU는 일반 관세감축으로부터 벗어날 경우 TRQ를 더욱 확대하며, 40%만큼이나 민감품목을 감축하도록 제안함으로써 민감품목에 대해서조차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곱째, 개도국들이 농업에 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USTR의 주장에 대해 EU도 공감한다. EU는 개도국의 수출 농산물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이다. EU 시장은 개도국특혜조치에 따라 남미와 아프리카 농산물 수출의 각각 45%, 85%를 차지한다. EU는 이 조치에 따라 거의 모든 개도국의 농산물 수출품목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며, 최빈개도국(LDCs)에게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한다. 반면, 미국은 개도국들의 비교우위 부문의 무역이 증대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홍콩 각료회의에서 방글라데시의 섬유에 대한 무관세 접근을 거부했으며, LDCs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대상 품목 가운데 일부(3%)를 제외하고 있다.

여덟째, EU가 농업부문에서 제안하는 것 이상으로 NAMA에서 보다 많이 요구한다는 USTR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다. 50년의 역사를 갖는 GATT는

미국과 EU의 평균 공산품 관세를 3~4%대로 끌어내리는 등 공산품의 관세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감축하는데 기여했다. 반면, 농산물에 대한 관세감축이 이뤄진 것은 UR이 최초다. 따라서 공산품의 현행 관세수준을 달성하는데 40 여년이 걸린 점을 감안할 때, 단일 라운드에서 농산물 관세를 공산품 관세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EU의 제안이 실질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USTR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EU의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 EU의 제안에 따라 민감품목으로 지정될지라도 매년 80만 톤의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 가운데 하나인 아르헨티나의 연간 수출량에 육박하는 물량이다. EU의 쇠고기 수입량은 1999~2004년 동안 37~51만 톤으로 증가했다. 가금육은 24.8~51만 톤으로 증가했다. 이 두 품목의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은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쉽게 이용하고 있다. 경쟁력이 매우 높은 농산물 수출국들은 EU의 제안이 새로운 추가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

자료: http://www.insidetrade.com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6. 2)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6. 2)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6. 2)

김 혜 영*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2월 9일 발표한 세계곡물 수급전망(2월 1일 현재)에 의하면, 2005/06년도 세계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2.6% 감소한 19억 8,375만 톤, 소비량은 0.8% 증가한 20억 1,001만 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6.6% 감소한 3억 7,394만 톤, 기말재고율은 1.5% 포인트 감소한 18.6%로 전망하고 있다.

1. 전체 곡물

2005/06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19억 8,37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5,341만 톤 정도 감소한 수준이다. 주요 곡물인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5/06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20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 억 8,395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0.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06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20억 1,001만 톤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00년도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ykim@krei.re.kr 3299-4269

고 2000/01년도부터 2001/02년도까지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였다. 2005/06년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였으나 2005/06년도는 다시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보다 1.6% 감소한 2억 3,56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2,626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5/06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6.6% 감소한 3억 7,394만 톤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4/05년도 20.1%에서 18.6%로 1.5%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7 H 2000/04	2004/05	2005/06(전망)		변동률(%)		
구 분	2003/04	(추정)	2006.1	2006.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58.85	2,037.16	1,981.77	1,983.75	△2.6	0.1
공 급 량	2,304.03	2,394.71	2,382.10	2,383.95	△0.4	0.1
소 비 량	1,946.48	1,994.51	2,006.40	2,010.01	0.8	0.2
교 역 량	240.28	239.51	235.83	235.67	△1.6	△0.1
기말재고량	357.54	400.20	375.70	373.94	△6.6	△0.5
기말재고율	18.4	20.1	18.7	18.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31, February 9, 2006.

2. 쌀

2005/06년도 쌀 생산량은 2004/05년 보다 1.7% 증가한 4억 899만 톤 수준 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쌀 생산국인 태국, 중국, 베트남 등의 생산량이 증

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의 생산량이 전월보다 20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2005/06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0.01% 감소한 4억 1,524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3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06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대비 3.8% 감소한 2,669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월대비 베트남은 수출량이 증가될 전망이고,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등은 수입량이 증가될 전망이다.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전망된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8.6% 감소한 6,664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월전망치 보다 0.8% 높기는 하나 여전히 1982/83년 이후 최저치이다. 중국과 미국의 재고량이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2005/06년도 기말재고율은 16.0%로 2004/05년도의 17.6%보다 약 1.6%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フ 日 2002/04		2004/05	2005/06(전망)		변동률(%)	
구 분	2003/04	(추정)	2006.1	2006.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391.38	402.15	406.88	408.99	1.7	0.5
공 급 량	501.70	488.16	479.95	481.89	△1.3	0.4
소 비 량	415.68	415.27	413.84	415.24	△0.01	0.3
교 역 량	27.41	27.73	26.19	26.69	△3.8	1.9
기말재고량	86.01	72.90	66.10	66.64	△8.6	0.8
기말재고율	20.7	17.6	16.0	16.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31, February 9, 2006.

3. 소맥

2005/06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6억 1,617만 톤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5/06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4/05년 6억 925만 톤보다 약 1,456만 톤 증가한 6억 2,381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1999/00년 1억 1,413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5/06년 에는 1억 1,036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대비 수출 증가 국가는 브라질과 세르비아이다.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은 17.9%로 전년보다 2%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2005/06년 기말재고량은 1억 4,470만 톤으로 전년보다 5.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과 유럽의 재고량이 각각 전년대비 9.0%와 14.1% 감소할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전년의 24.6에서 22.8%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3/04	2004/05	2005/06(전망)		변동률(%)		
丁 正	2003/04	(추정)	2006.1	2006.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54.59	626.74	616.43	616.17	△1.7	0.0
공 급 량	720.70	758.85	766.55	765.77	0.9	△0.1
소 비 량	588.59	609.25	621.84	623.81	2.4	0.3
교 역 량	109.38	110.83	110.29	110.36	△0.4	0.1
기말재고량	132.11	149.60	144.70	141.96	△5.1	△1.9
기말재고율	22.5	24.6	23.3	22.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31, February 9, 2006.

4. 옥수수

2005/06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8,376만 톤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EU25,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주요 옥수수 생산국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06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0.9% 증가한 6억 8,70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이후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였으나 2004/05년은 생산량이 소비량을 2,694만 톤 정도 초과하였고 2005/06년도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327만 톤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06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5.9% 감소한 7,273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4.6%, 13.7%로 이들 두 국가가 78.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06년 옥수수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말재고량은 전년 보다 2.5% 감소한 1억 2,81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327 만 톤 정도 감소한 수준이다. 2005/06년도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0.5% 포인 트 감소한 18.7%가 될 전망이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3/04	2004/05	2005/00	5(전망)	변동률(%)		
	2003/04	(추정)	2006.1	2006.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23.04	708.38	683.51	683.76	△3.5	0.0	
공 급 량	748.12	812.07	814.47	815.19	0.4	0.1	
소 비 량	644.43	680.64	686.21	687.03	0.9	0.1	
교 역 량	77.34	77.30	73.54	72.73	△5.9	△1.1	
기말재고량	103.69	131.43	128.26	128.16	△2.5	△0.1	
기말재고율	16.1	19.3	18.7	18.7			

5. 대두 및 대두박

2005/06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2,276만 톤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생산량은 전년대비 10.4%인 약 550만 톤이 증가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141만 톤 감소될 전망이어서 브라질의 생산량 증가분이 미국과 중국의 생산량 감소분을 상쇄시켰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6,63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29.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37.3%, 브라질이 39.3%, 아르헨티나가 15.1%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91.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5,383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4,487만 톤과 비교하여 20.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약 3.4% 포인트 높은 25.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3/04	2004/05	2005/06	6(전망)	변동률(%)	
1 1	2003/04	(추정)	2006.1	2006.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6.75	215.34	223.02	222.76	3.4	△0.1
공 급 량	227.25	251.02	267.92	267.63	6.6	△0.1
소 비 량	189.96	205.65	214.75	213.73	3.9	△0.5
교 역 량	55.86	65.15	66.82	66.35	1.8	△0.7
기말재고량	35.68	44.87	53.15	53.83	20.0	1.3
기말재고율	18.8	21.8	24.7	25.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31, February 9, 2006.

2005/06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4,449만 톤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소비량은 전년보다 4.6% 늘어난 1억 4,377만 톤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72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3.8% 증가한 4,78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3.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브라질이 39.6%, 아르헨티나가 45.2%의 비중을 차지, 이들 2국의 수출비중이 7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의 기말 재고량은 517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509만 톤과 비교하여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3.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 н	2002/04	2004/05	2005/00	5(전망)	변동률(%)	
구 분 2003/04		(추정)	2006.1	2006.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28.31	138.35	145.18	144.49	4.4	△0.5
공 급 량	133.62	143.05	150.27	149.58	4.6	△0.5
소 비 량	128.31	137.41	144.84	143.77	4.6	△0.7
교 역 량	45.41	46.15	48.02	47.89	3.8	△0.3
기말재고량	4.70	5.09	5.17	5.17	1.6	0.0
기말재고율	3.7	3.7	3.6	3.6		

표 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		2004/05	2005/00	6(정마)	변동률(%)		
구 분	2003/04	(추정)	2006.1	2006.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501.70	488.16	479.95	481.89	△1.3	0.4	
기초재고량	110.32	86.01	73.07	72.90	△15.2	△0.2	
생산량	391.38	402.15	406.88	408.99	1.7	0.5	
경건·중 미국	6.42	7.46	7.09	7.09	△5.0	0.5	
태국	18.01	17.07	17.90	17.90	4.9	0.0	
베트남	22.08	22.63	22.50	22.50	△0.6	0.0	
인도네시아	35.02	34.25	34.90	34.90	1.9	0.0	
중국	112.46	125.36	127.40	127.40	1.6	0.0	
일본	7.09	7.94	8.00	8.00	0.8	0.0	
수입량	24.86	26.17	25.58	25.94	△0.9	1.4	
인도네시아	0.65	0.50	0.80	1.00	100.0	25.0	
중국	1.12	0.61	0.60	0.60	△1.6	0.0	
일본	0.70	0.78	0.70	0.70	△10.3	0.0	
소비량	415.68	415.27	413.84	415.24	0.0	0.3	
미국	3.66	3.89	4.05	4.04	3.9	△0.2	
태국	9.47	9.48	9.49	9.49	0.1	0.0	
베트남	18.00	18.50	19.00	19.00	2.7	0.0	
인도네시아	36.00	35.85	35.60	35.60	△0.7	0.0	
중국	135.00	135.10	135.20	135.20	0.1	0.0	
일본	8.36	8.30	8.25	8.25	△0.6	0.0	
수출량	27.41	27.73	26.19	26.69	△3.8	1.9	
미국	3.31	3.54	3.84	3.84	8.5	0.0	
태국	10.14	7.27	7.00	7.00	△3.7	0.0	
베트남	4.30	5.17	4.50	5.00	△3.3	11.1	
기말재고량	86.01	72.90	66.10	66.64	△8.6	0.8	
미국	0.76	1.21	0.84	0.84	△30.6	0.0	
태국	1.71	2.02	3.46	3.43	69.8	△0.9	
인도네시아	4.02	2.87	3.02	3.17	10.5	5.0	
중국	44.93	35.14	27.19	27.24	△22.5	0.2	
일본	1.70	1.92	2.17	2.17	13.0	0.0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 (-1 -1)	변동률(%)	
구 분	2003/04	2004/05	2005/00			1
		(추정)	2006.1	2006.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20.70	758.85	766.55	765.77	0.9	△0.1
기초재고량	166.11	132.11	150.12	149.60	13.2	△0.3
생산량	554.59	626.74	616.43	616.17	△1.7	0.0
미국	63.81	58.74	57.28	57.28	△2.5	0.0
호주	26.13	22.60	24.00	24.00	6.2	0.0
캐나다	23.55	25.86	26.80	26.80	3.6	0.0
EU25	106.88	136.77	122.84	122.94	△10.1	0.1
중국	86.49	91.95	97.00	97.00	5.5	0.0
러시아	34.10	45.40	47.60	47.60	4.8	0.0
수입량	102.14	109.82	107.50	106.60	△2.9	△0.8
EU25	5.91	7.39	7.20	7.50	1.5	4.2
브라질	5.18	5.21	5.70	5.70	9.4	0.0
북아프리카	15.48	18.41	18.60	18.60	1.0	0.0
파키스탄	0.05	1.42	0.80	0.80	△43.7	0.0
인도	0.01	0.01	1.00	0.50	4900.0	△50.0
러시아	1.03	1.20	1.00	0.80	△33.3	△20.0
소비량	588.59	609.25	621.84	623.81	2.4	0.3
미국	32.51	31.91	32.33	32.33	1.3	0.0
EU25	107.90	115.20	119.50	119.50	3.7	0.0
중국	104.50	102.00	101.00	101.00	△1.0	0.0
파키스탄	18.90	19.50	20.30	20.30	4.1	0.0
러시아	35.50	37.40	38.40	38.40	2.7	0.0
수출량	109.38	110.83	110.29	110.36	△0.4	0.1
미국	31.52	28.92	27.22	27.22	△5.9	0.0
캐나다	15.79	14.97	16.50	16.50	10.2	0.0
EU25	10.93	14.37	14.50	14.50	0.9	0.0
기말재고량	132.11	149.60	144.70	141.96	△5.1	△1.9
미국	14.87	14.70	14.74	14.74	0.3	0.0
EU25	10.60	25.20	21.25	21.65	△14.1	1.9
중국	43.29	38.82	35.82	35.32	△9.0	△1.4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ਜਦ ਦ
구 분	2003/04	2004/05	2005/06	5(전망)	변동	률(%)
丁世	2003/04	(추정)	2006.1	2006.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48.12	812.07	814.47	815.19	0.4	0.1
기초재고량	125.08	103.69	130.96	131.43	26.8	0.4
생산량	623.04	708.38	683.51	683.76	△3.5	0.0
미국	256.28	299.91	282.26	282.26	△5.9	0.0
아르헨티나	15.00	19.50	16.80	15.50	△20.5	△7.7
EU25	39.88	53.35	47.47	47.79	△10.4	0.7
멕시코	21.80	22.63	20.50	20.50	△9.4	0.0
동남아시아	15.42	15.62	16.32	16.42	5.1	0.6
중국	115.83	130.29	134.00	134.00	2.8	0.0
수입량	76.51	75.58	74.03	73.28	△3.0	△1.0
EU25	5.75	2.95	3.00	3.00	1.7	0.0
일본	16.78	16.48	16.50	16.50	0.1	0.0
멕시코	5.74	5.92	6.70	6.70	13.2	0.0
동남아시아	3.89	3.07	3.25	3.15	2.6	$\triangle 3.1$
한국	8.78	8.64	8.40	8.40	△2.8	0.0
소비량	644.43	680.64	686.21	687.03	0.9	0.1
미국	211.64	224.75	227.60	228.23	1.5	0.3
EU25	46.81	52.50	50.60	50.60	△3.6	0.0
일본	16.90	16.70	16.60	16.60	△0.6	0.0
멕시코	26.40	27.90	28.40	28.40	1.8	0.0
동남아시아	17.90	18.40	19.15	19.25	4.6	0.5
한국	8.72	8.62	8.45	8.45	△2.0	0.0
중국	128.40	131.50	134.00	134.00	1.9	0.0
수출량	77.34	77.30	73.54	72.73	△5.9	△1.1
미국	48.26	46.08	46.99	46.99	2.0	0.0
아르헨티나	10.94	14.00	11.50	10.00	△28.6	$\triangle 13.0$
중국	7.55	7.59	6.00	6.00	△20.9	0.0
기말재고량	103.69	131.43	128.26	128.16	△2.5	△0.1
미국	24.34	53.70	61.62	60.99	13.6	$\triangle 1.0$
아르헨티나	0.22	0.53	0.43	0.43	△18.9	0.0
EU25	3.18	6.82	5.62	6.41	△6.0	14.1
중국	44.85	36.06	30.26	30.16	△16.4	△0.3

표 10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	2002/04	2004/05	2005/06	5(전망)	변동	률(%)
구 분	2003/04	(추정)	2006.1	2006.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27.25	251.02	267.92	267.63	6.6	△0.1
기초재고량	40.50	35.68	44.90	44.87	25.8	△0.1
생산량	186.75	215.34	223.02	222.76	3.4	△0.1
미국	66.78	85.01	84.00	84.00	△1.2	0.0
아르헨티나	33.00	39.00	40.50	40.50	3.8	0.0
브라질	51.00	53.00	58.50	58.50	10.4	0.0
중국	15.39	17.40	17.00	17.00	△2.3	0.0
수입량	54.25	64.65	66.81	66.28	2.5	△0.8
EU25	14.64	15.40	15.00	14.80	△3.9	△1.3
일본	4.69	4.30	4.30	4.30	0.0	0.0
중국	16.93	25.80	27.50	27.50	6.6	0.0
소비량	189.96	205.65	214.75	213.73	3.9	△0.5
미국	44.60	51.25	51.47	51.21	△0.1	△0.5
아르헨티나	26.62	28.93	30.20	30.20	4.4	0.0
브라질	32.15	31.91	32.31	32.31	1.3	0.0
EU25	15.46	16.13	15.81	15.61	△3.2	△1.3
일본	4.93	4.50	4.49	4.49	△0.2	0.0
중국	34.38	40.21	44.75	44.73	11.2	0.0
수출량	55.86	65.15	66.82	66.35	1.8	△0.7
미국	24.13	30.01	25.86	24.77	△17.5	△4.2
아르헨티나	6.71	9.51	10.00	10.00	5.2	0.0
브라질	19.82	20.54	25.42	26.07	26.9	2.6
기말재고량	35.68	44.87	53.15	53.83	20.0	1.3
미국	3.06	6.96	13.74	15.09	116.8	9.8
아르헨티나	12.68	13.92	14.87	14.87	6.8	0.0
브라질	15.39	16.48	17.68	17.02	3.3	△3.7

표 11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٠, ٦	· 92 E
구 분	2003/04	2004/05	2005/06	5(전망)	변동	률(%)
। ਦ	2003/04	(추정)	2006.1	2006.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33.62	143.05	150.27	149.58	4.6	△0.5
기초재고량	5.31	4.70	5.09	5.09	8.3	0.0
생산량	128.31	138.35	145.18	144.49	4.4	△0.5
미국	32.95	36.94	37.03	36.84	△0.3	△0.5
아르헨티나	19.76	21.34	22.33	22.33	4.6	0.0
브라질	22.36	22.42	23.17	23.17	3.3	0.0
EU25	11.10	11.58	11.33	11.15	△3.7	△1.6
중국	20.19	24.03	27.50	27.47	14.3	△0.1
수입량	44.80	45.61	47.76	47.25	3.6	△1.1
미국	0.26	0.13	0.15	0.15	15.4	0.0
브라질	0.23	0.19	0.28	0.28	47.4	0.0
EU25	21.91	22.00	22.75	22.20	0.9	△2.4
소비량	128.31	137.41	144.84	143.77	4.6	△0.7
미국	28.53	30.45	31.12	30.94	1.6	△0.6
브라질	7.70	8.81	9.04	9.04	2.6	0.0
인도	1.12	1.40	1.57	1.57	12.1	0.0
EU25	32.64	33.21	33.68	32.95	△0.8	△2.2
중국	19.54	23.43	26.95	27.00	15.2	0.2
수출량	45.41	46.15	48.02	47.89	3.8	△0.3
미국	4.69	6.66	5.99	5.99	△10.1	0.0
아르헨티나	18.95	19.88	21.65	21.65	8.9	0.0
브라질	14.76	14.24	14.19	14.19	△0.4	0.0
기말재고량	4.70	5.09	5.17	5.17	1.6	0.0
미국	0.19	0.16	0.23	0.23	43.8	0.0
아르헨티나	0.54	1.15	0.93	0.93	△19.1	0.0
브라질	1.78	1.33	1.55	1.55	16.5	0.0
EU25	0.85	0.86	0.86	0.86	0.0	0.0

표 12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백만 톤, %

구 분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80/81	1,446.90	1,642.30	1,463.20	215.20	190.90	13.0
1981/82	1,496.10	1,687.00	1,462.80	209.70	229.00	15.7
1982/83	1,547.70	1,776.70	1,499.90	200.60	354.70	23.6
1983/84	1,485.30	1,840.00	1,537.80	207.80	302.40	19.7
1984/85	1,646.60	1,949.00	1,585.80	218.70	364.30	23.0
1985/86	1,664.10	2,028.40	1,596.00	180.60	433.30	27.1
1986/87	1,663.20	2,096.50	1,633.00	186.50	465.20	28.5
1987/88	1,594.70	2,059.90	1,652.10	211.60	410.60	24.9
1988/89	1,546.10	1,956.70	1,637.00	211.80	319.40	19.5
1989/90	1,670.80	1,990.20	1,688.60	220.10	296.60	17.6
1990/91	1,768.90	2,065.50	1,726.50	202.10	338.90	19.6
1991/92	1,708.00	2,046.90	1,722.00	221.10	325.00	18.9
1992/93	1,789.60	2,114.60	1,751.60	220.10	362.80	20.7
1993/94	1,712.40	2,075.20	1,753.30	204.40	473.10	27.0
1994/95	1,758.90	2,232.00	1,772.00	220.60	459.80	25.9
1995/96	1,712.20	2,172.00	1,761.60	206.70	410.60	23.3
1996/97	1,870.90	2,281.50	1,827.80	213.20	450.60	24.7
1997/98	1,880.80	2,331.40	1,835.90	217.50	495.30	27.0
1998/99	1,872.70	2,368.00	1,839.70	223.40	528.40	28.7
1999/00	1,871.60	2,400.00	1,869.70	240.10	530.40	28.4
2000/01	1,839.80	2,370.20	1,868.30	231.60	501.90	26.9
2001/02	1,870.11	2,414.04	1,899.90	238.82	514.15	27.1
2002/03	1,817.65	2,353.60	1,910.40	241.21	443.21	23.2
2003/04	1,858.85	2,304.03	1,946.48	240.28	357.54	18.4
2004/05	2,037.16	2,394.71	1,994.51	239.51	400.20	20.1
2005/06	1,983.75	2,383.95	2,010.01	235.67	373.94	18.6

주: 2004/05년은 추정치, 2005/06년은 전망치임.

자료: http://ers.usda.gov(미국 농업부)

자료: USDA, Agricultural Outlook, 1985~2003(1980/81~2001/02).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2003/04\sim2005/06).$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6. 2)

김 혜 영*

미국 농업부(USDA)가 2월 10일 발표한 쌀 가격전망에 의하면, 2월 현재 세계 쌀 가격은 태국산 장립종이 전년대비 10.1% 상승한 톤당 306달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이 전년대비 17.3% 상승한 톤당 474달러이다.

또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06년 3월물 2월(13일 현재) 소맥가격은 전년대비 21.1% 상승한 톤당 152달러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06년 3월물 2월(13일 현재) 옥수수 가격은 전년대비 4.2% 상승한 톤당 87달러, 2006년 3월물 2월(13일 현재) 대두 가격은 전년대비 1.8% 하락한 톤당 215달러이다.

1. 쌀

장립종 쌀 가격은 2006년 2월(14일 현재) 톤당 231 달러로 전년대비 10.3% 상승하였다. 중립종 쌀 가격은 전년대비 20.5% 상승한 톤당 228달러이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전년대비 10.1% 상승한 톤당 306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월보다 3.4% 상승한 수준이며, 2005년 4월보다 톤당 1.3% 높은 수준이다. 최근 가격 상승은 태국 정부의 물량구입과 태국 바트화의 강세가 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ykim@krei.re.kr 02-3299-4269

인이다. 1999년 1월 톤당 308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2년 연말까지 가격은 하락하였다. 2003년 상반기부터 다시 상승한 가격은 2005년 4월 톤당 302달러로 1999년 1월 이후 최고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은 전년대비 17.3%, 전년 동월대비 19.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점차 하락한 가격은 2004년 11월 톤당 397달러로 하락한 이후 2005년 4월까지 지속되었다. 5월에서 8월까지 약 하락하던 가격은 9월부터 상승하여 2005년 11월 톤당 474달러로 상승한 후 2006년 2월에도 유지할 전망이다. 가격 강세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2005년 캘리포니아의 쌀 생산량 감소와 국제 쌀 공급 부족이다. 2006년 봄, 오스트레일리아의 수확이 시작되기 전까지 중립종 쌀의 가격 강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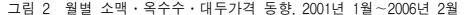
그림 1 월별 쌀 가격 동향, 2001년 1월~2006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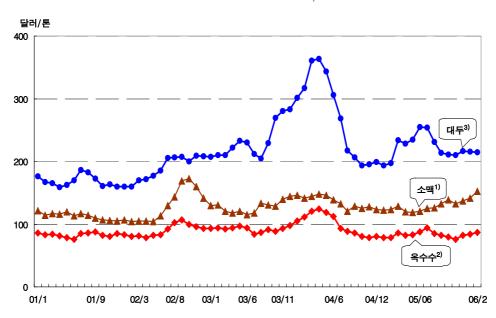
자료: USDA, Rice Outlook.

주 : (1) 중립종은 미국 캘리포니아 1등품 (2) 장립종은 태국 100% grade B

2. 소맥

2004/05년 국제 소맥가격은 톤당 126달러로 전년보다 약 7.4%하락하였다. 2004년 상반기 상승하던 가격은 국제 소맥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을 보이면서 하반기에는 하락하였다. 2005년 3월까지 약 상승하던 가격은 4월에서 6월까지 톤당 120달러를 유지하였다. 7월부터 서서히 증가하던 소맥 가격은 10월에 톤당 13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6년 2월(13일 현재) 톤당 152달러로 전년대비 21.1% 상승하고 전년 동월대비 23.9% 상승한 수준이다. 소맥 생산량과 기말재고량은 감소하는 반면 소비량이 증가할 전망이어서 소맥가격은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주:(1) 소맥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 (3) 대두는 Chicago 1등급

3. 옥수수

2004/05년 옥수수 가격은 톤당 83달러로 전년보다 약 20.0% 하락하였다. 2004년 4월은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옥수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고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상승했다. 2004/05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여 2004년 11월 톤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을 보이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8월부터 생산량이 다소 증가할 전망을 보여서 11월 톤당 76달러까지 하락했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한 옥수수 가격은 2006년 2월(13일 현재) 톤당 87달러로 전년대비 4.2%, 전월대비 3.5% 상승하였다. USDA의 2005/06년 2월 옥수수 수급전망에서 생산량과 기말재고량이 감소할 전망을 보이면서 가격은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전망된다.

4. 대두

2004/05년 대두 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전년보다 25.8% 하락하였다. 2004/05년 대두 소비량이 생산량을 상회하고,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2004년 4월 톤당 36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4/05년 대두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을 보이면서 5월부터 하락하여 11월에는 톤당 196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6년 2월(13일 현재) 대두 가격은 톤당 215달러로 전년대비 1.8% 하락하였다. 대두의 2005/06년도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곡물가격 동향, 2006년 2월

단위: 달러/톤, FOB

						2	증감률(%)	
품 목	2003/04	2004/05	2005.2	2006.1	2006.2	전년	전년	전월
						대비	동월	대비
	116	209	222	218	231	10.3	3.9	5.5
, 중립종 ¹	156	189	201	215	228	20.5	13.7	6.0
쌀 태국 ²	220	278	296	296	306	10.1	3.4	3.4
캘리포니아 ²	533	404	397	474	474	17.3	19.4	0.0
소 맥 ³	136	126	123	141	152	21.1	23.9	8.0
옥 수 수4	104	83	79	84	87	4.2	10.2	3.5
대 두4	295	219	198	216	215	△1.8	8.6	△0.5

- 주 : (1) USDA Farm Service Agency, Prevaliling World Market Prices and Loan Deficiency Panyment Rates for Rice. 2006년 2월 가격은 14일 현재가격임. 쌀 곡물연도 8~7월.
 - (2) USDA, Rice Outlook. 태국 100% grade B, California Medium Grain 1등품.
 - (3) 소맥(HRW) 2등급(KCBOT). 소맥 곡물연도 6~5월. 2006년 2월 가격은 13일 현재 가격임. USDA AMS and ERS.
 - (4)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옥수수·대두 곡물 연도 9~8월. 2006년 2월 가격은 13일 현재 가격임. USDA AMS and ERS.

자료: http://www.usda.gov(미국 농업부)



국별 돼지고기 통계

표 1 호주 돼지고기 통계

		#			5 계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1	107	0	108	0	107	1
1961	1	114	0	115	2	111	2
1962	2	122	0	124	2	121	1
1963	1	111	0	112	1	110	1
1964	1	118	0	119	1	117	2
1965	2	130	0	132	2	128	2
1966	2	139	0	141	2	138	1
1967	1	145	0	146	2	143	1
1968	1	156	0	157	2	154	1
1969	1	170	0	171	6	163	2
1970	2	177	0	179	5	173	1
1971	1	185	0	186	5	179	2
1972	2	213	0	215	17	195	3
1973	3	238	0	241	22	217	2
1974		186	0	188	5	181	
1975	2 2	172	0	174	7	165	2 2 2 3
1976	2	179	0	181	8	171	2
1977	2	192	0	194	5	186	3
1978	3	199	0	202	5	195	2
1979	2	206	0	208	6	198	4
1980	4	232	0	236	5	228	
1981	3	231	0	234	4	228	3 2
1982	2	230	0	232	3	226	3
1983	3	247	0	250	5	243	2
1984		256	0	258	2	254	2
1985	2	263	0	265	2	261	2
1986	2 2 2	270	0	272	3	269	0
1987	0	283	0	283	7	276	0
1988	0	298	0	298	10	288	0
1989	0	302	0	302	7	295	0
1990	0	319	0	319	7	312	0
1991	0	312	2	314	5	309	0
1992	0	336	3	339	6	333	0
1993	0	328	2	330	8	322	0
1994	0	344	3	347	7	340	0
1995	0	351	6	357	6	351	0
1996	0	330	8	338	8	330	0
1997	0	339	12	351	12	339	0
1998	0	369	10	379	17	362	0
1999	0	362	28	390	38	352	0
2000	0	365	43	408	49	348	11
2001	11	379	38	428	67	360	1
2002	1	407	55	463	78	375	10
2003	10	419	67	496	74	410	12
2004	12	394	77	483	59	414	10
2005	10	385	90	485	55	420	10
2006(P)	10	395	95	500	58	430	12
2000(1)	10	373),	500	- 50	750	12

표 2 브라질 돼지고기 통계

연호			<u> </u>		71/1/1/	0/11		
1960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1	1960				368			
1962						0		
1963						i e		
1964		1						
1965								
1966								
1967						1		
1968								
1969								
1970								
1971								
1972 0 645 0 645 1 645 0 1973 0 701 0 701 3 698 0 1974 0 723 0 723 1 722 0 1975 0 760 0 760 6 754 0 1976 0 785 0 785 12 773 0 1977 0 834 0 834 12 822 0 1978 0 850 0 850 5 845 0 1979 0 900 0 900 0 900 0 1980 0 850 0 850 2 848 0 1981 0 902 0 902 2 900 0 1982 0 933 0 933 3 930 0 1983 0						1		
1973 0 701 0 701 3 698 0 1974 0 723 0 723 1 722 0 1975 0 760 0 760 6 754 0 1976 0 785 0 785 12 773 0 1977 0 834 0 834 12 822 0 1978 0 850 0 850 5 845 0 1979 0 900 0 900 0 900 0 1980 0 850 0 850 2 848 0 1981 0 902 0 902 2 900 0 1981 0 902 0 902 2 900 0 1982 0 933 0 933 3 930 0 1983 0						1		
1974 0 723 0 723 1 722 0 1975 0 760 0 760 6 754 0 1976 0 785 0 785 12 773 0 1977 0 834 0 834 122 822 0 1978 0 850 0 850 5 845 0 1979 0 900 0 900 0 900 0 1980 0 850 0 850 2 848 0 1981 0 902 0 902 2 900 0 1982 0 933 0 933 3 930 0 1983 0 950 0 950 3 947 0 1984 0 1,000 0 1,020 10 1,010 0 1986 0								
1975 0 760 0 760 6 754 0 1976 0 785 0 785 12 773 0 1977 0 834 0 834 12 822 0 1978 0 850 0 850 5 845 0 1979 0 900 0 900 0 900 0 1980 0 850 0 850 2 848 0 1981 0 902 0 902 2 900 0 1982 0 933 0 933 3 393 0 1983 0 950 0 950 3 947 0 1984 0 1,000 0 1,000 3 997 0 1985 0 1,020 0 1,020 10 1,010 0 1987 10						1		
1976 0 785 0 785 12 773 0 1977 0 834 0 834 12 822 0 1978 0 850 0 850 5 845 0 1979 0 900 0 900 0 900 0 1980 0 850 0 850 2 848 0 1981 0 902 0 902 2 900 0 1982 0 933 0 933 3 930 0 1983 0 950 0 950 3 947 0 1984 0 1,000 0 1,000 3 997 0 1985 0 1,020 0 1,150 40 1,100 0 1987 10 1,200 0 1,210 20 1,170 20 1988 <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1977 0 834 0 834 12 822 0 1978 0 850 0 850 5 845 0 1979 0 900 0 900 0 900 0 1980 0 850 0 850 2 848 0 1981 0 902 0 902 2 900 0 1981 0 902 0 902 2 900 0 1982 0 933 0 933 3 930 0 1983 0 950 0 950 3 947 0 1984 0 1,000 0 1,000 3 997 0 1985 0 1,020 0 1,020 10 1,100 0 1986 0 1,080 70 1,150 40 1,170 20 1988								
1978 0 850 0 850 5 845 0 1979 0 900 0 900 0 900 0 1980 0 850 0 850 2 848 0 1981 0 902 0 902 2 900 0 1982 0 933 0 933 3 30 0 1983 0 950 0 950 3 947 0 1984 0 1,000 0 1,000 3 997 0 1985 0 1,020 0 1,020 10 1,010 0 1986 0 1,080 70 1,150 40 1,100 10 1987 10 1,200 0 1,210 20 1,170 20 1988 20 1,100 0 1,210 20 1,095 5 1998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1979 0 900 0 900 0 900 0 1980 0 850 0 850 2 848 0 1981 0 902 0 902 2 900 0 1982 0 933 0 933 3 930 0 1983 0 950 0 950 3 947 0 1984 0 1,000 0 1,000 3 997 0 1985 0 1,020 0 1,020 10 1,010 0 1986 0 1,080 70 1,150 40 1,100 10 1987 10 1,200 0 1,210 20 1,170 20 1988 20 1,100 0 1,120 20 1,095 5 1989 5 1,020 60 1,085 14 1,066 5 <t<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								
1980 0 850 0 850 2 848 0 1981 0 902 0 902 2 900 0 1982 0 933 0 933 3 930 0 1983 0 950 0 950 3 947 0 1984 0 1,000 0 1,000 3 997 0 1985 0 1,020 0 1,020 10 1,010 0 1986 0 1,080 70 1,150 40 1,100 10 1987 10 1,200 0 1,210 20 1,170 20 1988 20 1,100 0 1,120 20 1,095 5 1989 5 1,020 60 1,085 14 1,066 5 1990 5 1,050 2 1,057 19 1,033 5		1		Y .				
1981 0 902 0 902 2 900 0 1982 0 933 0 933 3 930 0 1983 0 950 0 950 3 947 0 1984 0 1,000 0 1,000 3 997 0 1985 0 1,020 0 1,020 10 1,010 0 1986 0 1,080 70 1,150 40 1,100 10 1987 10 1,200 0 1,210 20 1,170 20 1988 20 1,100 0 1,120 20 1,095 5 1989 5 1,020 60 1,085 14 1,066 5 1990 5 1,050 2 1,057 19 1,033 5 1991 5 1,150 2 1,157 17 1,140 0 <								
1982 0 933 0 933 3 930 0 1983 0 950 0 950 3 947 0 1984 0 1,000 0 1,000 3 997 0 1985 0 1,020 0 1,020 10 1,010 0 1986 0 1,080 70 1,150 40 1,100 10 1987 10 1,200 0 1,210 20 1,170 20 1988 20 1,100 0 1,120 20 1,095 5 1989 5 1,020 60 1,085 14 1,066 5 1990 5 1,050 2 1,057 19 1,033 5 1991 5 1,150 2 1,157 17 1,140 0 1992 0 1,200 1 1,201 36 1,165 0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1983 0 950 0 950 3 947 0 1984 0 1,000 0 1,000 3 997 0 1985 0 1,020 0 1,020 10 1,010 0 1986 0 1,080 70 1,150 40 1,100 10 1987 10 1,200 0 1,210 20 1,170 20 1988 20 1,100 0 1,120 20 1,095 5 1989 5 1,020 60 1,085 14 1,066 5 1990 5 1,050 2 1,057 19 1,033 5 1991 5 1,150 2 1,157 17 1,140 0 1992 0 1,200 1 1,201 36 1,165 0 1993 0 1,250 1 1,251 33 1,218 0								
1984 0 1,000 0 1,000 3 997 0 1985 0 1,020 0 1,020 10 1,010 0 1986 0 1,080 70 1,150 40 1,100 10 1987 10 1,200 0 1,210 20 1,170 20 1988 20 1,100 0 1,120 20 1,095 5 1989 5 1,020 60 1,085 14 1,066 5 1990 5 1,050 2 1,057 19 1,033 5 1991 5 1,150 2 1,157 17 1,140 0 1992 0 1,200 1 1,251 33 1,218 0 1993 0 1,250 1 1,251 33 1,218 0 1994 0 1,300 2 1,302 34 1,268 0								
1985 0 1,020 0 1,020 10 1,010 0 1986 0 1,080 70 1,150 40 1,100 10 1987 10 1,200 0 1,210 20 1,170 20 1988 20 1,100 0 1,120 20 1,095 5 1989 5 1,020 60 1,085 14 1,066 5 1990 5 1,050 2 1,057 19 1,033 5 1991 5 1,150 2 1,157 17 1,140 0 1992 0 1,200 1 1,201 36 1,165 0 1993 0 1,250 1 1,251 33 1,218 0 1994 0 1,300 2 1,302 34 1,268 0 1995 0 1,450 10 1,460 46 1,400 <								
1986 0 1,080 70 1,150 40 1,100 10 1987 10 1,200 0 1,210 20 1,170 20 1988 20 1,100 0 1,120 20 1,095 5 1989 5 1,020 60 1,085 14 1,066 5 1990 5 1,050 2 1,057 19 1,033 5 1991 5 1,150 2 1,157 17 1,140 0 1992 0 1,200 1 1,201 36 1,165 0 1993 0 1,250 1 1,251 33 1,218 0 1994 0 1,300 2 1,302 34 1,268 0 1995 0 1,450 10 1,460 46 1,400 14 1996 14 1,600 1 1,615 80 1,530								
1987 10 1,200 0 1,210 20 1,170 20 1988 20 1,100 0 1,120 20 1,095 5 1989 5 1,020 60 1,085 14 1,066 5 1990 5 1,050 2 1,057 19 1,033 5 1991 5 1,150 2 1,157 17 1,140 0 1992 0 1,200 1 1,201 36 1,165 0 1993 0 1,250 1 1,251 33 1,218 0 1994 0 1,300 2 1,302 34 1,268 0 1995 0 1,450 10 1,460 46 1,400 14 1996 14 1,600 1 1,615 80 1,530 5 1997 5 1,540 6 1,551 82 1,469 <								
1988 20 1,100 0 1,120 20 1,095 5 1989 5 1,020 60 1,085 14 1,066 5 1990 5 1,050 2 1,057 19 1,033 5 1991 5 1,150 2 1,157 17 1,140 0 1992 0 1,200 1 1,201 36 1,165 0 1993 0 1,250 1 1,251 33 1,218 0 1994 0 1,300 2 1,302 34 1,268 0 1995 0 1,450 10 1,460 46 1,400 14 1996 14 1,600 1 1,615 80 1,530 5 1997 5 1,540 6 1,551 82 1,469 0 1998 0 1,690 2 1,692 105 1,582 <t<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								
1990 5 1,050 2 1,057 19 1,033 5 1991 5 1,150 2 1,157 17 1,140 0 1992 0 1,200 1 1,201 36 1,165 0 1993 0 1,250 1 1,251 33 1,218 0 1994 0 1,300 2 1,302 34 1,268 0 1995 0 1,450 10 1,460 46 1,400 14 1996 14 1,600 1 1,615 80 1,530 5 1997 5 1,540 6 1,551 82 1,469 0 1998 0 1,690 2 1,692 105 1,582 5 1999 5 1,835 1 1,841 109 1,727 5 2000 5 2,010 0 2,015 162 1,827 <t<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								
1990 5 1,050 2 1,057 19 1,033 5 1991 5 1,150 2 1,157 17 1,140 0 1992 0 1,200 1 1,201 36 1,165 0 1993 0 1,250 1 1,251 33 1,218 0 1994 0 1,300 2 1,302 34 1,268 0 1995 0 1,450 10 1,460 46 1,400 14 1996 14 1,600 1 1,615 80 1,530 5 1997 5 1,540 6 1,551 82 1,469 0 1998 0 1,690 2 1,692 105 1,582 5 1999 5 1,835 1 1,841 109 1,727 5 2000 5 2,010 0 2,015 162 1,827 <t<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5</td></t<>								5
1991 5 1,150 2 1,157 17 1,140 0 1992 0 1,200 1 1,201 36 1,165 0 1993 0 1,250 1 1,251 33 1,218 0 1994 0 1,300 2 1,302 34 1,268 0 1995 0 1,450 10 1,460 46 1,400 14 1996 14 1,600 1 1,615 80 1,530 5 1997 5 1,540 6 1,551 82 1,469 0 1998 0 1,690 2 1,692 105 1,582 5 1999 5 1,835 1 1,841 109 1,727 5 2000 5 2,010 0 2,015 162 1,827 26 2001 26 2,230 0 2,256 337 1,919		5			1,085		1,066	5
1992 0 1,200 1 1,201 36 1,165 0 1993 0 1,250 1 1,251 33 1,218 0 1994 0 1,300 2 1,302 34 1,268 0 1995 0 1,450 10 1,460 46 1,400 14 1996 14 1,600 1 1,615 80 1,530 5 1997 5 1,540 6 1,551 82 1,469 0 1998 0 1,690 2 1,692 105 1,582 5 1999 5 1,835 1 1,841 109 1,727 5 2000 5 2,010 0 2,015 162 1,827 26 2001 26 2,230 0 2,256 337 1,919 0 2002 0 2,565 0 2,565 590 1,975					1,057		1,033	
1993 0 1,250 1 1,251 33 1,218 0 1994 0 1,300 2 1,302 34 1,268 0 1995 0 1,450 10 1,460 46 1,400 14 1996 14 1,600 1 1,615 80 1,530 5 1997 5 1,540 6 1,551 82 1,469 0 1998 0 1,690 2 1,692 105 1,582 5 1999 5 1,835 1 1,841 109 1,727 5 2000 5 2,010 0 2,015 162 1,827 26 2001 26 2,230 0 2,256 337 1,919 0 2002 0 2,565 0 2,565 590 1,975 0 2003 0 2,560 0 2,560 603 1,957				2	1,157	17	1,140	0
1994 0 1,300 2 1,302 34 1,268 0 1995 0 1,450 10 1,460 46 1,400 14 1996 14 1,600 1 1,615 80 1,530 5 1997 5 1,540 6 1,551 82 1,469 0 1998 0 1,690 2 1,692 105 1,582 5 1999 5 1,835 1 1,841 109 1,727 5 2000 5 2,010 0 2,015 162 1,827 26 2001 26 2,230 0 2,256 337 1,919 0 2002 0 2,565 0 2,565 590 1,975 0 2003 0 2,560 0 2,560 603 1,957 0 2004 0 2,600 0 2,600 621 1,979	1992	0	1,200	1		36	1,165	0
1995 0 1,450 10 1,460 46 1,400 14 1996 14 1,600 1 1,615 80 1,530 5 1997 5 1,540 6 1,551 82 1,469 0 1998 0 1,690 2 1,692 105 1,582 5 1999 5 1,835 1 1,841 109 1,727 5 2000 5 2,010 0 2,015 162 1,827 26 2001 26 2,230 0 2,256 337 1,919 0 2002 0 2,565 0 2,565 590 1,975 0 2003 0 2,560 0 2,560 603 1,957 0 2004 0 2,600 0 2,600 621 1,979 0 2005 0 2,730 0 2,730 745 1,985	1993	0	1,250		1,251	33	1,218	0
1996 14 1,600 1 1,615 80 1,530 5 1997 5 1,540 6 1,551 82 1,469 0 1998 0 1,690 2 1,692 105 1,582 5 1999 5 1,835 1 1,841 109 1,727 5 2000 5 2,010 0 2,015 162 1,827 26 2001 26 2,230 0 2,256 337 1,919 0 2002 0 2,565 0 2,565 590 1,975 0 2003 0 2,560 0 2,560 603 1,957 0 2004 0 2,600 0 2,600 621 1,979 0 2005 0 2,730 0 2,730 745 1,985 0	1994	0	1,300	2	1,302	34	1,268	0
1997 5 1,540 6 1,551 82 1,469 0 1998 0 1,690 2 1,692 105 1,582 5 1999 5 1,835 1 1,841 109 1,727 5 2000 5 2,010 0 2,015 162 1,827 26 2001 26 2,230 0 2,256 337 1,919 0 2002 0 2,565 0 2,565 590 1,975 0 2003 0 2,560 0 2,560 603 1,957 0 2004 0 2,600 0 2,600 621 1,979 0 2005 0 2,730 0 2,730 745 1,985 0	1995	0	1,450	10	1,460	46	1,400	14
1997 5 1,540 6 1,551 82 1,469 0 1998 0 1,690 2 1,692 105 1,582 5 1999 5 1,835 1 1,841 109 1,727 5 2000 5 2,010 0 2,015 162 1,827 26 2001 26 2,230 0 2,256 337 1,919 0 2002 0 2,565 0 2,565 590 1,975 0 2003 0 2,560 0 2,560 603 1,957 0 2004 0 2,600 0 2,600 621 1,979 0 2005 0 2,730 0 2,730 745 1,985 0	1996	14	1,600	1	1,615	80	1,530	5
1998 0 1,690 2 1,692 105 1,582 5 1999 5 1,835 1 1,841 109 1,727 5 2000 5 2,010 0 2,015 162 1,827 26 2001 26 2,230 0 2,256 337 1,919 0 2002 0 2,565 0 2,565 590 1,975 0 2003 0 2,560 0 2,560 603 1,957 0 2004 0 2,600 0 2,600 621 1,979 0 2005 0 2,730 0 2,730 745 1,985 0			1,540	6				
1999 5 1,835 1 1,841 109 1,727 5 2000 5 2,010 0 2,015 162 1,827 26 2001 26 2,230 0 2,256 337 1,919 0 2002 0 2,565 0 2,565 590 1,975 0 2003 0 2,560 0 2,560 603 1,957 0 2004 0 2,600 0 2,600 621 1,979 0 2005 0 2,730 0 2,730 745 1,985 0	1998	0	1,690	2	1,692	105	1,582	5
2000 5 2,010 0 2,015 162 1,827 26 2001 26 2,230 0 2,256 337 1,919 0 2002 0 2,565 0 2,565 590 1,975 0 2003 0 2,560 0 2,560 603 1,957 0 2004 0 2,600 0 2,600 621 1,979 0 2005 0 2,730 0 2,730 745 1,985 0								
2001 26 2,230 0 2,256 337 1,919 0 2002 0 2,565 0 2,565 590 1,975 0 2003 0 2,560 0 2,560 603 1,957 0 2004 0 2,600 0 2,600 621 1,979 0 2005 0 2,730 0 2,730 745 1,985 0		5						
2002 0 2,565 0 2,565 590 1,975 0 2003 0 2,560 0 2,560 603 1,957 0 2004 0 2,600 0 2,600 621 1,979 0 2005 0 2,730 0 2,730 745 1,985 0								
2003 0 2,560 0 2,560 603 1,957 0 2004 0 2,600 0 2,600 621 1,979 0 2005 0 2,730 0 2,730 745 1,985 0								
2004 0 2,600 0 2,600 621 1,979 0 2005 0 2,730 0 2,730 745 1,985 0								•
2005 0 2,730 0 2,730 745 1,985 0		1						
								l
			,					•

표 3 캐나다 돼지고기 통계

	_	<u> </u>	7 - -	기시포기	0/11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26	541	8	575	31	534	10
1961	10	534	19	563	24	528	11
1962	11	539	16	566	21	537	8
1963	8	537	41	586	22	553	11
1964	11	580	25	616	24	580	12
1965	12	551	17	580	26	544	10
1966	10	556	13	579	22	544	13
1967	13	654	13	680	27	639	14
1968	14	644	17	675	28	636	11
1969	11	615	32	658	26	621	11
1970	11	746	12	769	32	725	12
1971	12	813	12	837	45	779	13
1972	13	787	20	820	52	759	9
1973	9	763	25	797	57	725	15
1974	15	767	32	814	42	762	10
1975	10	655	44	709	41	660	8
1976	8	643	111	762	51	699	12
1977	12	648	118	778	59	709	10
1978	10	741	70	821	72	737	12
1979	12	889	43	944	102	830	12
1980	12	1,034	22	1,068	149	905	14
1981	14	1,015	25	1,054	164	878	12
1982	12	1,006	19	1,037	208	820	9
1983	9	1,030	24	1,063	201	852	10
1984	10	1,044	18	1,072	224	837	11
1985	11	1,088	21	1,120	251	860	9
1986	9	1,097	18	1,124	272	844	8
1987	8	1,131	22	1,161	301	852	8
1988	8	1,188	15	1,211	319	879	13
1989	13	1,184	12	1,209	305	892	12
1990	12	1,133	12	1,157	314	832	11
1991	11	1,096	15	1,122	270	838	14
1992	14	1,208	16	1,238	296	929	13
1993	13	1,194	22	1,229	303	915	11
1994	11	1,229	27	1,267	301	951	15
1995	15	1,276	31	1,322	366	941	15
1996	15	1,228	42	1,285	384	888	13
1997	13	1,257	59	1,329	420	889	20
1998	20	1,394	64	1,478	433	1,011	34
1999	34	1,564	65	1,663	554	1,077	32
2000	32	1,640	68	1,740	660	1,077	33
2001	33	1,731	91	1,855	728	1,047	45
2001	45	1,751	91	1,990	864	1,082	54
2002	54	1,882	91	2,027	975	1,072	48
2003	48	1,936	105	2,027	973	1,067	50
2004	50	1,960	135	2,089	1,075	1,007	58
2005 2006(P)	58	1,900	155	2,143	1,073	1,012	55
2000(F)		1,9/3	133	۷,100	1,100	1,033	<u> </u>

표 4 중국 돼지고기 통계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	-	-	-	-	-	-
1961	_	-	_	-	-	-	-
1962	_	_	_	-	-	_	_
1963	_	_	_	-	-	_	-
1964	_	_	_	_	_	_	-
1965	_	_	_	_	_	_	_
1966	_	_	_	_	_	_	_
1967	_	_	_	_	_	_	_
1968	_	_	_	_	_	_	_
1969	_	_	_	_	_	_	_
1970	_	_	_	_	_	_	_
1971	_	_	_	_	_	_	_
1972	_	_	_	_	_	_	_
1973	_	_	_	_	_	_	_
1974	_	_	_	_	_	_	_
1975	_	7,094	0	7,094	94	7,000	_
1976	_	7,122	0	7,122	94	7,028	_
1977	_	7,137	0	7,137	68	7,069	_
1978	_	7,137	0	7,137	102	7,788	_
1979	_	10,010	0	10,010	119	9,891	_
1980	_	11,341	0	11,341	160	11,181	_
1981		11,884	0	11,884	166	11,718	_
1982	_	12,718	0	12,718	230	12,488	_
1982	-	13,161	0	13,161	248	12,466	-
1983	-	14,447	0	14,447	273	14,174	-
1985	-	16,547	0	16,547	263	16,284	-
1985	-	17,960	0	17,960	193	17,767	_
1987	-	18,349	0	18,349	200	18,149	_
1987	-	20,176	0	20,176	170	20,006	-
1989	-	20,176	0	20,176	203	20,000	-
1989	-	22,808	0	22,808	203	21,023	-
1990	-	24,523	0		268	24,255	-
1991	-	26,353	0	24,523			-
1992	-		0	26,353	117 150	26,236	-
	-	28,544	0	28,544	181	28,394	-
1994	-	32,048		32,048		31,867	_
1995	-	36,484	3	36,487 31,582	105	36,382	_
1996	-	31,580	2 3	,	135	31,447	-
1997	-	35,963		35,966	140	35,826	-
1998	-	38,837	24	38,861	143	38,718	-
1999	-	40,056	76 177	40,132	75 72	40,057	-
2000	-	40,314	177	40,491	73	40,418	-
2001	-	41,845	123	41,968	139	41,829	-
2002	-	43,266	188	43,454	216	43,238	-
2003	-	45,186	194	45,380	282	45,098	-
2004	-	47,016	92	47,108	383	46,725	-
2005	-	48,900	70	48,970	400	48,570	-
2006(P)	-	50,900	50	50,950	415	50,535	-

표 5 유럽25 돼지고기 통계

		<u> </u>		기시포기	0/11		
<u>연</u> 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	-	-	-	-	-	-
1961	_	_	_	_	_	_	_
1962	_	_	_	_	_	_	_
1963	_	_	_	_	_	_	_
1964	_	_	_	_	_	_	_
1965	_	_	_	_	_	_	_
1966	_	_	_	_	_	_	_
1967	_	_	_	_	_	_	_
1968	_	_	_	_	_	_	_
1969	_	-	_	_	_	_	_
1909	_	_	-	_	_	_	_
1970	_	_	-	_	_	_	_
1971	_	-	-	-	-	-	_
1972	_	-	-	-	-	-	-
	-	-	-	-	-	-	-
1974 1975	_	-	-	-	-	-	-
	-	-	-	-	-	-	-
1976	_	-	-	-	-	-	-
1977	_	-	-	-	-	-	-
1978	-	-	=	-	-	-	=
1979	-	-	=	-	-	-	-
1980	-	-	=	-	-	-	-
1981	=	-	-	-	-	-	=
1982	-	-	-	-	-	-	-
1983	_	-	-	-	-	-	-
1984	_	-	-	-	-	-	-
1985	_	-	-	-	-	-	-
1986	-	-	-	-	-	-	-
1987	-	-	-	-	-	-	-
1988	-	-	-	-	-	-	-
1989	-	-	-	-	-	-	-
1990	-	-	-	-	-	-	-
1991	-	-	-	-	-	-	-
1992	-	-	-	-	-	-	-
1993	-	-	-	-	-	-	-
1994	-	-	-	-	-	-	-
1995	-	-	-	-	-	-	-
1996	-	-	_	-	-	-	-
1997	-	-	-	-	-	-	-
1998	-	-	-	-	-	-	-
1999	86	21,406	20	21,512	1,756	19,655	101
2000	101	20,717	19	20,837	1,522	19,242	73
2001	73	20,427	22	20,522	1,135	19,317	70
2002	70	20,938	17	21,025	1,158	19,746	121
2003	121	21,150	30	21,301	1,234	20,043	24
2004	24	20,851	20	20,895	1,436	19,459	0
2005	0	20,720	20	20,740	1,430	19,310	0
2006(P)	0	20,900	20	20,920	1,450	19,470	0

표 6 홍콩 돼지고기 통계

	_		0 00 -		5 / 11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	-	-	-	-	-	-
1961	_	-	-	-	-	_	_
1962	_	-	-	-	-	_	_
1963	_	_	_	-	-	_	_
1964	_	_	_	_	_	_	_
1965	_	_	_	_	_	_	_
1966	_	_	_	_	_	_	_
1967	_	_	_	_	_	_	_
1968	_	_	_	_	_	_	_
1969	_	_	_	_	_	_	_
1970	_	_	_	_	_	_	_
1971	_	_	_	_	_	_	_
1972	_	_	_	_	_	_	_
1973	_	_	_	_	_	_	_
1974		_	_	_	_	_	_
1975	0	32	10	42	0	42	0
1975	0	33	10	43	0	43	0
1977	6	14	168	188	0	183	5
1978	5	23	155	183	0	178	5
1978	5	25	156	186	0	180	6
1979	6	23	180	208	0	202	6
1981	6	21	188	215	0	202	7
1981	7	19	207	233	0	208	8
1982	8	19	207	233	0	233	8
1983	8	27	206	241	0	233	8
1984		27	206	254		233	
	8				0		8
1986	8	29	221 202	258	0	250	8
1987	8	30		240	0	232	8
1988	8	34	223	265	0	256	9
1989	9	30	217	256	3	245	8
1990	8	20	230	258	1	249	8
1991	8	15	226	249	1	248	0
1992	0	223	198	421	1	420	0
1993	0	214	208	422	1	421	0
1994	0	199	224	423	0	423	0
1995	0	187	151	338	0	338	0
1996	0	183	136	319	0	319	0
1997	0	175	171	346	0	346	0
1998	0	161	207	368	0	368	0
1999	0	161	217	378	0	378	0
2000	0	161	247	408	0	408	0
2001	0	165	260	425	0	425	0
2002	0	147	275	422	0	422	0
2003	0	145	302	447	0	447	0
2004	0	161	332	493	0	493	0
2005	0	150	250	400	0	400	0
2006(P)	0	150	270	420	0	420	0

표 7 일본 돼지고기 통계

		<u> </u>	<i>,</i> 2 -		5 / 11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0	147	8	155	0	156	0
1961	0	206	1	207	0	208	0
1962	0	324	0	324	0	324	Ö
1963	0	279	9	288	0	289	0
1964	0	298	6	304	0	304	0
1965	0	407	0	407	0	407	0
1966	0	565	0	565	0	565	0
1967	0	603	0	603	0	603	0
1967	0	590	15	605	0	604	0
	0	588	61	649	0	648	0
1969 1970							
	0	734	24	758	0	759	0
1971	0	843	39	882	0	882	0
1972	0	885	97	982	0	982	0
1973	0	971	180	1,151	0	1,150	0
1974	41	958	60	1,059	0	1,038	20
1975	20	1,039	178	1,237	0	1,171	66
1976	66	1,056	204	1,326	0	1,239	88
1977	88	1,169	152	1,409	0	1,373	36
1978	36	1,284	148	1,468	0	1,426	42
1979	42	1,430	188	1,660	0	1,584	76
1980	76	1,475	155	1,706	0	1,676	30
1981	30	1,396	262	1,688	0	1,628	60
1982	60	1,427	202	1,689	0	1,654	35
1983	35	1,429	238	1,702	0	1,660	42
1984	42	1,424	279	1,745	0	1,700	45
1985	45	1,531	272	1,848	0	1,750	98
1986	98	1,552	297	1,947	0	1,860	87
1987	87	1,581	401	2,069	0	1,982	87
1988	87	1,578	461	2,126	0	2,040	86
1989	86	1,594	491	2,171	0	2,057	114
1990	114	1,555	488	2,157	0	2,069	88
1991	88	1,483	590	2,161	0	2,083	78
1992	78	1,432	684	2,194	0	2,087	107
1993	107	1,433	653	2,193	0	2,074	119
1994	119	1,390	728	2,237	0	2,120	117
1995	117	1,322	869	2,308	0	2,133	175
1996	175	1,266	1,010	2,451	0	2,196	255
1997	255	1,283	786	2,324	0	2,134	190
1998	190	1,285	777	2,252	0	2,146	106
1999	106	1,277	919	2,302	0	2,212	90
2000	90	1,269	995	2,354	0	2,212	126
2001	126	1,245	1,068	2,439	1	2,268	170
2001	170	1,245	1,162	2,568	0	2,377	170
2002	191	1,260	1,102	2,584	0	2,377	211
2003	211	1,200	1,133	2,384	0	2,561	223
2004	223						
		1,260	1,243	2,726	0	2,531	195
2006(P)	195	1,240	1,235	2,670	0	2,485	185

표 8 한국 돼지고기 통계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0	58	0	58	0	58	0
1961	0	60	0	60	0	60	0
1962	0	38	0	38	0	38	0
1963	0	55	0	55	0	55	0
1964	0	63	0	63	0	63	0
1965	0	56	0	56	0	56	0
1966	0	96	0	96	0	96	0
1967	0	72	0	72	0	72	0
1968	0	62	0	62	0	62	0
1969	0	76	0	76	1	75	0
1970	0	83	0	83	0	83	Ö
1971	0	81	0	81	0	81	Ö
1972	0	93	1	94	4	89	0
1973	0	90	1	91	3	88	0
1974	0	95	0	95	4	91	0
1975	0	98	0	98	8	89	Ö
1976	0	98	0	98	8	89	Ö
1977	0	146	0	146	5	142	0
1978	0	172	9	181	1	177	2
1979	2	223	11	236	0	229	7
1980	7	235	0	242	ő	241	1
1981	1	209	0	210	0	210	0
1982	0	298	0	298	0	298	0
1983	0	369	0	369	0	368	1
1984	1	424	0	425	0	425	0
1985	0	434	0	434	0	434	Ö
1986	0	402	0	402	1	401	0
1987	0	470	0	470	4	466	0
1988	0	541	0	541	10	531	0
1989	0	680	0	680	15	665	0
1990	0	634	3	637	7	630	0
1991	0	623	25	648	4	644	0
1992	0	752	4	756	11	731	14
1993	14	773	2	789	11	767	11
1994	11	786	26	823	11	798	14
1995	14	799	45	858	18	830	10
1996	10	865	50	925	47	871	7
1997	7	873	77	957	68	869	20
1998	20	992	66	1,078	116	940	22
1999	22	950	156	1,128	113	984	31
2000	31	1,004	174	1,209	31	1,058	120
2001	120	1,077	123	1,320	42	1,158	120
2002	120	1,153	155	1,428	16	1,199	213
2003	213	1,149	153	1,515	17	1,294	204
2004	204	1,100	220	1,524	10	1,331	183
2005	183	1,050	300	1,533	5	1,328	200
2006(P)	200	1,010	351	1,561	10	1,351	200

표 9 멕시코 돼지고기 통계

				'' '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선근, 도세궁)	(선근, 도세당) 170	(선근, 도세당) 0	(선근, 도세당) 170	(선근, 도세궁) 0	(선근, 도세궁) 170	[(선근, 도세궁 <u>)</u>
1961	_	166	0	166	0	166	_
1962	_	188	0	188	0	188	_
1963	_	197	0	197	0	197	_
1964	-	197	0	197	0	197	_
1965	-	222	0	222	0	222	_
1966	-	232	0	232	0	232	_
1967	_	232	0	232	0	271	_
1968	_	275	0	275	0	275	_
1969	_	290	0	290	0	273	_
1909	_	317	0	317	0	317	_
1970	_	351	0	351	0	351	_
1971	_	573	0	573	0	573	_
1972	-	641	11	652	1	651	_
1973	-	719	12	731	0	731	-
1974	-	810	12	811	0	811	-
1975	-	735	2	737	2	735	_
1970	-	650	5	655	2	653	-
1977	-	773	9	782	1	781	-
1978	-	828	11	839		838	-
1979	-	910	11	921	1 0	921	-
1980	-	836	16	852	0	852	-
1981	-	998	11	1,009	0	1,009	-
1982	-		ŀ		1		-
1983	-	1,136 942	1	1,137 943		1,136 942	-
1984	-	865	1 1	943 866	1 1	865	-
1985	-	910	1	911	0	911	-
1980	-	950	0	950	0	950	_
1987	-	950	16	980	0	980	_
1989	-	910	27	937	0	937	_
1989	-	792	17	809	0	809	_
1990	-	820	40	860	1	859	_
1991	-	830	55	885	4	881	_
1992	-	870	50	920	3	917	_
1993 1994	_	900	100	1,000	5	917	_
1994	_	954	54	1,000	25	983	_
1995	_	895	59	954	26	928	_
1990	_	940	82	1,022	39	983	_
1997	_	950	144	1,022	49	1,045	_
1998	_	930	190	1,094	53	1,043	_
2000	_	1,035	276	1,164	59 59	1,131	_
2000	_	1,055	276	1,311	61	1,232	_
2001	_	1,003	325	1,339	61	1,349	_
2002	_	1,100	323	1,410	48	1,349	_
2003	_	1,100	458	1,471	52	1,423	_
2004	_	1,130	438	1,670	55	1,615	_
	_	1,173	505	1,705	65	1,613	_
2006(P)	_	1,200	JUJ	1,/03	UJ	1,040	

표 10 필리핀 돼지고기 통계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0 199 0 199 0 199 0 1961 0 206 0 206 0 206 0 1962 0 234 0 234 0 234 0 1963 0 244 0 244 0 244 0
1960 0 199 0 199 0 199 0 1961 0 206 0 206 0 206 0 1962 0 234 0 234 0 234 0
1961 0 206 0 206 0 206 0 1962 0 234 0 234 0 234 0
1962 0 234 0 234 0 234 0
- 1702 U 244 U 244 U 244 U
1964 0 258 1 259 0 259 0
1965 0 290 1 291 0 291 0
1966 0 317 1 318 0 318 0
1967 0 338 1 339 0 339 0
1968 0 360 2 362 0 362 0
1969 0 383 1 384 0 384 0
1970 0 369 0 369 0 369 0
1971 0 374 1 375 0 375 0
1972 0 318 1 319 0 319 0
1973 0 358 1 359 0 352 7
1974 7 372 1 380 0 373 7
1975 7 323 0 330 0 318 12
1976 12 325 1 338 0 330 8
1977 8 289 1 298 1 293 4
1978 4 318 0 322 1 317 4
1979 4 377 3 384 0 373 11
1980 11 412 1 424 0 410 14
1981
1982
1983 7 452 1 460 0 450 10
1984
1985 11 430 0 441 0 435 6
1986 6 478 0 484 0 477 7
1987 7 490 1 498 0 496 2
1988 2 540 2 544 0 540 4
1989 4 615 3 622 0 610 12
1990 12 665 1 678 0 670 8
1991 8 690 1 699 0 695 4
1992 4 710 1 715 0 710 5
1993 5 690 0 695 0 687 8
1994 8 715 0 723 0 715 8
1995 8 754 2 764 0 760 4
1996 4 860 8 872 0 867 5
1997 5 901 15 921 0 912 9
1998 9 933 14 956 0 946 10
1999 10 973 36 1,019 0 1,010 9
2000 9 1,008 28 1,045 0 1,038 7
2001 7 1,064 25 1,096 0 1,085 11
2002 11 1,095 31 1,137 0 1,137 0
2003 0 1,145 22 1,167 0 1,167 0
2004 0 1,145 25 1,170 0 1,170 0
2005 0 1,100 30 1,130 0 1,130 0
2006(P) 0 1,122 30 1,152 0 1,152 0

표 11 루마니아 돼지고기 통계

		<u> </u>	1 -1-10	-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	-	-	-	-	-	_
1961	_	_	_	-	-	-	_
1962	_	_	_	_	_	_	_
1963	_	_	_	_	_	_	_
1964	_	_	_	_	_	_	_
1965	_	_	_	_	_	_	_
1966	_	_	_	_	_	_	_
1967	_	_	_	_	_	_	_
1968	_	_	_	_	_	_	_
1969	0	455	0	455	0	455	0
1970	0	468	0	468	0	468	0
1970	0	493	0	493	0	493	0
1971	0	615	0	615	0	615	0
1972	0	701	0	701	0	701	0
1973	0	7779	0	701	0	7779	0
1974	0	754	0	779 754	82	672	0
1973	0	754	0	754 754	65	689	0
1976			l e				0
	0	829 850	0	829 850	63	766	
1978	0		0		31	819	0
1979	0	925	0	925	63	862	0
1980	0	894	0	894	60	834	0
1981	0	923	0	923	90	833	0
1982	0	816	0	816	50	751	15
1983	15	821	5	841	85	741	15
1984	15	715	5	735	75 125	645	15
1985	15	875	0	890	125	745 700	20
1986	20	840	0	860	135	700	25
1987	25	900	0	925	150	750 7 10	25
1988	25	840	0	865	140	710	15
1989	15	600	0	615	180	410	25
1990	25	620	70	715	0	685	30
1991	30	650	10	690	26	639	25
1992	25	491	0	516	33	459	24
1993	24	373	1	398	55	318	25
1994	25	565	0	590	50	500	40
1995	40	421	12	473	37	406	30
1996	30	425	4	459	35	399	25
1997	25	400	5	430	55	350	25
1998	25	350	53	428	6	392	30
1999	30	375	27	432	5	392	35
2000	35	360	32	427	1	411	15
2001	15	406	63	484	0	469	15
2002	15	414	106	535	0	535	0
2003	0	420	133	553	0	553	0
2004	0	470	179	649	5	644	0
2005	0	455	185	640	2	638	0
2006(P)	0	460	180	640	3	637	0

표 12 러시아 돼지고기 통계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	-	-	-	-	-	-
1961	_	_	_	_	_	_	-
1962	_	_	_	_	_	_	-
1963	_	_	_	_	_	_	_
1964	_	_	_	_	_	_	-
1965	_	_	_	_	_	_	_
1966	_	_	_	_	_	_	_
1967	_	_	_	_	_	_	_
1968	_	_	_	_	_	_	_
1969	_	_	_	_	_	_	_
1970	_	_	_	_	_	_	_
1971	_	_	_	_	_	_	_
1972	_	_	_	_	_	_	_
1973	_	_	_	_	_	_	_
1974	_	_	_	-	_	_	-
1975	_	_	_	_	_	_	_
1976	_	_	_	_	_	_	_
1977	_	_	_	_	_	_	-
1978	_	_	_	_	_	_	-
1979	_	_	_	_	_	_	_
1980	_	-	_	-	-	_	-
1981	_	_	_	_	_	_	-
1982	_	_	_	_	_	_	-
1983	_	_	_	_	_	_	-
1984	_	_	_	_	_	_	-
1985	_	-	_	_	_	_	-
1986	_	-	_	_	_	_	-
1987	_	_	_	_	_	_	-
1988	0	3,399	249	3,648	0	3,648	0
1989	0	3,499	376	3,875	0	3,875	0
1990	0	3,480	440	3,920	0	3,502	418
1991	418	3,190	262	3,870	0	3,487	383
1992	383	2,784	141	3,308	0	2,974	334
1993	334	2,432	220	2,986	0	2,694	292
1994	292	2,103	324	2,719	1	2,466	252
1995	252	1,865	550	2,667	1	2,666	0
1996	0	1,700	690	2,390	1	2,389	0
1997	0	1,570	866	2,436	22	2,414	0
1998	0	1,510	682	2,192	9	2,183	0
1999	0	1,490	608	2,098	5	2,093	0
2000	0	1,500	315	1,815	13	1,802	0
2001	0	1,560	528	2,088	12	2,076	0
2002	0	1,630	834	2,464	11	2,453	0
2003	0	1,710	725	2,435	15	2,420	0
2004	0	1,725	629	2,354	17	2,337	0
2005	0	1,785	650	2,435	1	2,434	0
2006(P)	0	1,900	675	2,575	1	2,574	0

표 13 대만 돼지고기 통계

		丑 1		돼시 <i>고</i> 기 ·	농계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0	160	0	160	0	160	0
1961	0	181	0	181	0	181	0
1962	0	191	0	191	0	191	0
1963	0	186	0	186	0	186	0
1964	0	199	0	199	0	199	0
1965	0	214	0	214	0	214	0
1966	0	242	0	242	0	242	0
1967	0	280	0	280	0	280	0
1968	0	287	0	287	1	286	0
1969	0	312	0	312	6	306	0
1970	0	320	0	320	5	315	0
1971	0	326	0	326	2	324	0
1972	0	349	0	349	13	336	0
1973	0	426	0	426	36	390	0
1974	0	377	0	377	14	363	0
1975	0	322	0	322	11	311	0
1976	0	425	0	425	54	371	0
1977	0	472	0	472	27	445	0
1978	0	472	0	472	26	446	0
1979	0	566	0	566	24	542	0
1980	0	537	0	537	23	514	0
1981	0	537	0	537	29	508	0
1982	0	525	0	525	29	496	0
1983	0	539	0	539	47	492	0
1984	0	732	0	732	73	659	0
1985	0	831	0	831	96	735	0
1986	0	868	0	868	123	745	0
1987	0	938	0	938	194	744	0
1988	0	911	0	911	178	733	0
1989	0	917	0	917	160	757	0
1990	0	1,009	0	1,009	225	784	0
1991	0	1,126	0	1,126	324	802	0
1992	0	1,113	0	1,113	303	810	0
1993	0	1,135	0	1,135	283	852	0
1994	0	1,204	0	1,204	331	873	0
1995	0	1,233	5	1,238	381	857	0
1996	0	1,269	16	1,285	388	897	0
1997	0	1,030	0	1,030	70	860	100
1998	100	892	22	1,014	2	972	40
1999	40	822	86	948	0	948	0
2000	0	921	54	975	0	975	0
2001	0	962	15	977	0	977	0
2001	0	935	32	967	0	967	0
2002	0	893	54	947	0	947	0
2004	0	898	61	959	0	959	0
2005	0	910	40	950	0	950	0
2006(P)	0	935	30	965	0	965	0
2000(1)	1 0	755	50	303	U	303	<u> </u>

표 14 우크라이나 돼지고기 통계

					· · · ·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	-	-	-	-	-	-
1961	_	_	_	_	-	_	-
1962	_	_	_	_	-	_	-
1963	_	_	_	_	-	_	-
1964	_	_	_	_	_	_	_
1965	_	_	_	_	_	_	_
1966	_	_	_	_	_	_	_
1967	_	_	_	_	_	_	_
1968	_	_	_	_	_	_	_
1969	_	_	_	_	_	_	_
1970	_	_	_	_	_	_	_
1971	_	_	_	_	_	_	_
1972	_	_	_	_	_	_	-
1973	_	_	_	_	_	_	_
1974	_	_	_	_	_	_	-
1975	_	_	_	_	_	_	_
1976	_	_	_	_	_	_	_
1977	_	_	_	_	-	_	-
1978	_	_	_	_	-	_	-
1979	_	_	_	_	-	_	-
1980	_	_	_	_	-	-	-
1981	_	_	_	_	-	-	-
1982	_	_	_	_	-	_	-
1983	_	_	_	_	-	_	-
1984	_	_	_	_	-	-	-
1985	_	-	_	_	-	_	-
1986	_	-	-	_	-	-	-
1987	_	_	-	_	-	-	-
1988	0	1,576	0	1,576	0	1,576	0
1989	0	1,595	0	1,595	0	1,595	0
1990	0	1,576	0	1,576	0	1,466	110
1991	110	1,421	5	1,536	12	1,425	99
1992	99	1,180	1	1,280	13	1,184	83
1993	83	1,013	2	1,098	6	1,021	71
1994	71	916	3	990	2	924	64
1995	64	807	1	872	5	810	57
1996	57	790	25	872	22	720	130
1997	130	710	20	860	30	700	130
1998	130	668	3	801	1	673	127
1999	127	656	3	786	5	721	60
2000	60	676	1	737	10	690	37
2001	37	591	2	630	2	606	22
2002	22	599	2	623	1	600	22
2003	22	630	10	662	12	628	22
2004	22	558	52	632	8	602	22
2005	22	475	75	572	6	544	22
2006(P)	22	490	60	572	10	540	22

표 15 미국 돼지고기 통계

				돼지고기 ·	통계		
연도	이월량	생산량	수입량	공급량	수출량	소비량	재고량
	(천톤, 도체중)		(천톤, 도체중)	(천톤, 도체중)	(천톤, 도체중)		(천톤, 도체중)
1960	120	6,307	101	6,528	34	6,416	77
1961	77	6,191	102	6,370	33	6,246	91
1962	91	6,329	116	6,536	30	6,401	104
1963	104	6,574	119	6,797	64	6,607	126
1964	126	6,622	142	6,890	63	6,698	129
1965	129	5,797	173	6,099	25	6,005	69
1966	69	5,805	195	6,069	26	5,937	106
1967	106	6,410	200	6,716	26	6,560	130
1968	130	6,584	210	6,924	42	6,766	116
1969	116	6,461	204	6,781	70	6,615	96
1970	96	6,667	223	6,986	31	6,803	152
1971	152	7,260	225	7,637	33	7,454	150
1972	150	6,542	244	6,936	48	6,791	97
1973	97	5,998	242	6,337	78	6,129	130
1974	130	6,500	221	6,851	47	6,665	139
1975	139	5,343	199	5,681	96	5,472	113
1976	113	5,755	213	6,081	143	5,842	96
1977	96	6,009	199	6,304	133	6,087	84
1978	84	6,075	225	6,384	130	6,105	149
1979	149	7,008	227	7,384	132	7,087	165
1980	165	7,537	249	7,951	114	7,641	196
1981	196	7,200	246	7,642	139	7,358	145
1982	145	6,454	278	6,877	97	6,661	119
1983	119	6,894	317	7,330	99	7,067	164
1984	164	6,719	433	7,316	74	7,084	158
1985	158	6,716	512	7,386	58	7,197	131
1986	131	6,379	509	7,019	39	6,865	115
1987	115	6,519	542	7,176	49	6,964	163
1988	163	7,114	515	7,792	88	7,506	198
1989	198	7,173	406	7,777	119	7,516	142
1990	142	6,965	407	7,514	108	7,272	134
1991	134	7,257	351	7,742	128	7,438	176
1992	176	7,817	293	8,286	185	7,926	175
1993	175	7,751	336	8,262	202	7,897	163
1994	163	8,027	337	8,527	249	8,079	199
1995	199	8,096	301	8,596	357	8,059	180
1996	180	7,764	281	8,225	440	7,619	166
1997	166	7,835	288	8,289	473	7,631	185
1998	185	8,623	320	9,128	558	8,305	265
1999	265	8,758	375	9,398	582	8,594	222
2000	222	8,596	438	9,256	584	8,455	217
2001	217	8,691	431	9,339	707	8,389	243
2002	243	8,929	486	9,658	731	8,685	242
2003	242	9,056	538	9,836	779	8,816	241
2004	241	9,312	499	10,052	989	8,817	246
2005	246	9,402	447	10,095	1,229	8,619	247
2006(P)	247	9,591	435	10,273	1,263	8,763	247

자료: http://www.fas.usda.gov/psd에서

M45-66 세계농업뉴스 제66호 (2006. 2)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6년 2월

발 행 2006년 2월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p@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